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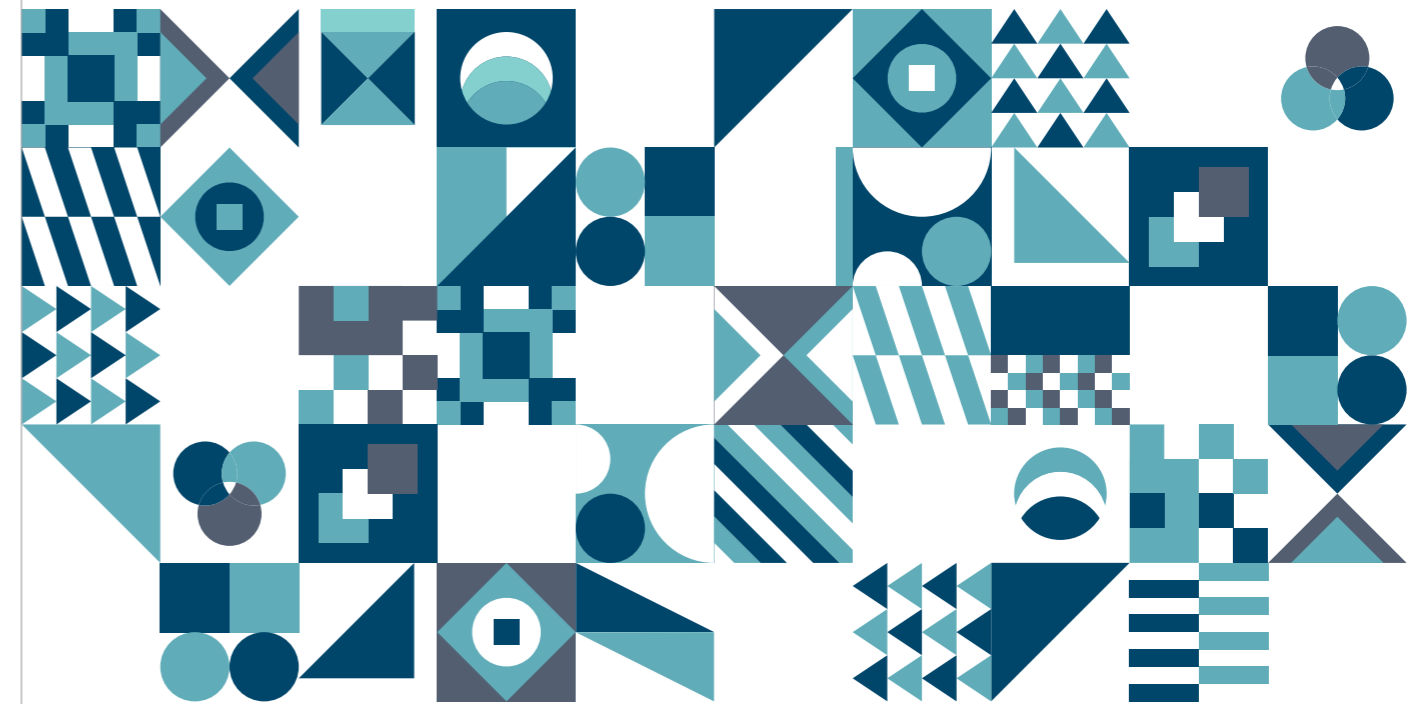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 공향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 공향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

공향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8층 (우)03740  
TEL 02-6200-1853 FAX 02-6200-0811 E-MAIL duroo@jipyong.com

비매품/무료



9 791196 900151

ISBN 979-11-969001-5-1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공항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

**집필:** 김연주, 김진, 송윤정, 이상현,  
이일, 이택건, 이한재, 전수연,  
최초록

**역음:** 사단법인 두루

**발간:** 사단법인 두루



# CONTENTS

<b>제1장 들어가며</b> .....	<b>1</b>
제1절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본 사업의 의미 .....	2
제3절 본 사업의 범위, 일정, 방법 .....	5
I. 본 사업의 범위 .....	5
II. 본 사업의 일정 .....	5
III. 본 사업의 방법 .....	6
<b>제2장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 개관</b> .....	<b>11</b>
제1절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의 도입 취지 .....	11
제2절 난민법의 규정과 출입국향 난민심사의 절차 .....	13
제3절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관 .....	15
<b>제3장 실태조사 결과</b> .....	<b>19</b>
제1절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	19
I. 난민신청절차 .....	19
1. 권리고지 .....	19
2. 신청서 교부 및 작성 시 조력 .....	21
3. 외부 조력의 요청 .....	24
4. 소결 .....	25
II. 심사 절차 .....	26
1. 심사기준(법령상 불회부처분 사유)의 문제 .....	26
2. 통역시스템 .....	30
3. 면접조사관의 고압적이고 불신하는 듯한 태도, 충분한 발언기회 미보장, 부족한 면접조사 시간 등 .....	31
4. 영장 없는 사실상의 강제조사 .....	33
5. 인터뷰 내용 확인 및 수정 .....	36
6. 불회부 결정 통지방법 및 이유고지 여부 .....	37
7. 결과 통계 .....	40

# CONTENTS

8. 소결 .....	42
<b>제2절 공항 구금상황 및 송환과정에서의 인권침해 .....</b>	<b>44</b>
I. 공항난민의 구금상황 개관 .....	44
II. 구금장소별 공항난민의 처우 일반 .....	47
1. 송환대기실 .....	47
2. 난민심사대기실 .....	55
3. 환송구역 .....	58
4. 구금 시설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 외의 요건 .....	64
5. 소결 .....	66
III. 의료, 안전 .....	68
1. 공항난민의 건강권 .....	68
2.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	69
3. 진료의 어려움 .....	72
4. 정신건강 문제 .....	72
5. 응급상황 발생시의 조치 .....	72
6. 소결 .....	73
IV. 아동 등 더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 .....	74
V. 송환과정 .....	76
1.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공항난민의 송환 .....	76
2. 송환 과정에서의 물리적 행사 등 수단의 적정성 .....	81
3. 여권 압수 .....	87
4. 소결 .....	89
<b>제3절 권리구제절차 .....</b>	<b>91</b>
I. 절차 및 쟁점 개관 .....	91
1. 절차 개관 .....	91
2. 쟁점 개관 .....	92

# CONTENTS

II. 권리구제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절차적 보장 .....	94
1. 변호인 접견 .....	94
2. 심사자료의 공개 .....	96
3. 소결 .....	97
III.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절차 .....	98
1. 소송구조 .....	98
2.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이에 따른 장기 구금 .....	101
3. 당사자의 재판 출석의 어려움과 방어권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	102
4. 공항난민의 특수성에 기한 증거 조사의 한계 .....	103
5. 지나치게 낮은 승소율과 변호사 조력 가능성 .....	105
6. 소결 .....	106
IV. 가구제수단 .....	107
1. 인신구제청구 .....	107
2. 조건부 입국허가(제13조)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제20조)의 활용 .....	108
3. 기타 가구제 수단의 가능성-집행정지 .....	109
4. 소결 .....	110
<b>제4장 결론 .....</b>	<b>111</b>
<b>부록 .....</b>	<b>113</b>
부록1. 공항난민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 설문지(국문) .....	113
부록2. 공항난민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 설문지(프랑스어) .....	126



### 제1절

####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013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제정된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신청절차를 이원화하여, ‘대한민국 안’에서의 신청절차(‘체류지에서의 난민신청절차’)<sup>1)</sup>와 출입국항에서의 신청절차(‘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sup>2)</sup>를 구별하고 있다. 이중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는 난민법 제정 시 새롭게 도입된 절차이다. 난민법 제정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하거나 입국하여야만 난민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난민법은 이들이 출입국항에서 바로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를 도입하였다.<sup>3)</sup>

난민법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sup>4)</sup>의 충실한 이행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지만 입법 당시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sup>5)</sup> 난민법 제정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약 7년의 기간 동안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최근에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sup>6)</sup>을 소송으로 다루며 287일 동안 공항에서 머물러야 했던 난민가족의 사례,<sup>7)</sup> 정부의 방관 속에 무법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송환대기실의 실태<sup>8)</sup> 등이 언론을 통해서 외부로 알려지면서,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공항 내 난민의 처우에 관한 문제점이 재조명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여러 차례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와 공항 내 난민의 처우에 관한 인권침해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1) 난민법 제5조.

2) 난민법 제6조.

3) 최계영,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행정법연구 제55호 (2018. 11.), 154.

4) 1993. 3. 3. 조약 제1166호로 발효된 것.

5) 대표적으로, UNHCR’s Comments on the Draft Presidential Decree and Regulation to the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6-18.

6) 행정청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난민법 제6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체류지에서의 난민신청절차에 따라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반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내려지면 비호신청자는 위 결정을 재판 등을 통해서 다루지 않는 이상 난민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제2장에서 후술한다.

7) 한겨레, “공항감옥 287일 … 마침내 문이 열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90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908.html) (2019. 10. 11.).

8) 오마이뉴스, “직원은 땀 맞고 승객은 발작 … 전쟁터나 다름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0031&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0031&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2020. 10. 5.).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sup>9)</sup>

현재까지 지적되었던 문제를 살펴보면 ▲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의 도입 취지가 비호신청자의 폭넓은 난민신청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항에서 실제적 심사까지 이루어져 난민 인정심사로의 회부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 ▲ 난민들에게 출입국항에서 어떻게 난민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외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 ▲ 불회부 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심사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 ▲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재송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실효적인 가구제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 ▲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재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난민들이 입국이 불가능해 공항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는 문제와 이들에 대한 처우가 극히 열악하다는 문제, ▲ 송환과정에서 권한 없이 물리력이 행사되는 문제 등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난민법 및 난민협약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인권의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실태의 확인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모니터링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한 출입국항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모니터링 보고서는 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의 절차적 문제와 해당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의 난민 처우 문제를 점검하였다.<sup>10)</sup> 현재 난민신청자의 대부분이 공항으로 입국하여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모니터링 보고서는 ▲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 공항 구금상황 및 송환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공항에 체류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체류하고 있는 난민(이하 ‘공항난민’)<sup>11)</sup>의 인권실태를 확인하였다.

## 제2절

### 본 사업의 의미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문제와 공항난민의 인권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례보고는 이전에도 이루어진 적이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sup>12)</sup>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는 2016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 2016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이하 ‘2016년도 보고서’)<sup>13)</sup>을

9)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권고” (2016. 8. 25.).

10)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 등을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6호).

11) 본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와 관련해서 공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을 통칭해서 ‘공항난민’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본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i) 공항에 도착하여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 (ii) 출입국항 난민인정심사를 받고 있는 자, (iii)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려고 하거나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자 등 스스로를 난민이라고 말하는 비호신청자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심사를 받기를 희망하지만 자의에 반하여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자를 모두 포괄하여 ‘공항난민’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12) 2016년 당시에는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통해서 난민신청 의사표시 및 접수과정, 난민 심사 과정, 불회부 판정 이후의 열악한 처우, 여성과 아동 난민신청자들의 고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년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이하 ‘2018년도 보고서’)<sup>14)</sup>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및 제주국제공항(이하 ‘제주공항’)의 송환대기실 내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송환대기실에 관한 법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최근에도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 - 2019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이하 ‘2019년도 보고서’)<sup>15)</sup>을 통해서 공항난민의 처우 현황을 점검하고, 공항난민의 권리 침해 사례를 보고하였다.

본 모니터링 보고서는 위 보고서들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되었으며, 위 보고서들이 담지 않은 부분과 위 보고서 작성 이후에 변화한 인권현실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2016년도 보고서는 공항난민의 실태가 ‘송환대기실’<sup>16)</sup>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최근 난민신청자들이 공항 환승구역(이하 ‘환승구역’)<sup>17)</sup>에 방치되는 사례들이 확인된 만큼 본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송환대기실 이외에도 환승구역과 난민심사대기실<sup>18)</sup>에서의 처우도 확인하였다. 위 보고서가 작성된 2016년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이 입국이 불허되어 송환대기실에 구금되는 것이 문제였던 반면, 송환대기실에서의 구금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결<sup>19)</sup> 등을 계기로 최근에는 상당수의 공항난민이 송환대기실에 구금되는 대신 환승구역에 방치됨에 따라 환승구역 내 공항난민의 처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였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2018년도 보고서는 인천공항과 함께 제주공항의 현황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보고서 역시 2016년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송환대기실을 중심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9년도 보고서는 환승구역에서의 인권침해사례도 포함하여 사례보고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본 모니터링 보고서는 2019년 보고서를 더욱 심화하여 환승구역의 전반적인 실태를 담고자 하였다.

본 사업은 난민인권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특히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06년 새로운 난민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토론회를 기점으로 국내 난민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체로,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도입 이후에는 공항난민들을 위해 난민신청의 권리와 외부 단체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한 바 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권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이후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출입국항 실무그

13)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 2016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동광문화사 (2016).

14)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9. 2. 21.).

15) 난민인권네트워크,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 - 2019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동광문화사 (2020).

16) ‘송환대기실’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국외송환에 앞서서 머무르게 되는 공간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탔던 선박, 항공기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도록 하면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 그러한 외국인이 송환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6조). 송환대기실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수업자들이 운영하는(공항의 경우,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송환지시의 대상이 된 외국인이 송환될 때까지 머무르게 되는 장소이다.

17) ‘환승구역’이란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지역부터 항공기 탑승 게이트 입구까지의 구역으로, 면세점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을 말한다.

18) 난민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난민심사대기실’은 위 규정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는 비호신청자가 7일의 범위 내에서 머무르게 되는 장소이다.

19) 인천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인라4 결정, 대법원 2014. 8. 25.자 2014인마5 결정.

를 별도로 구성하여 출입국항 난민의 인권옹호활동을 수행해 왔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 그룹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공향난민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송환의 시도, 변호사 접견권 침해, 여권압수 사례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해왔다. 또한 공향난민들의 생계와 의료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응급한 상황에 함께하기도 하였다. 2020년 10월 현재는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 친구들, 재단법인 동천 등의 단체 소속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sup>20)</sup> 그간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경험과 문제의식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나아가, 본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공향난민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와 출국대기실 운영형태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리는 등 공향난민의 인권실태파악과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인터뷰 섭외에 대한 협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위원회의 공향난민 관련 업무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향난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과 업무경험을 듣기도 하였다. 본 사업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사이의 협업은 향후 공향난민의 인권증진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인권문제에 대한 조명이 있어서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같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인권현황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모니터링, 법률상 조사권한에 근거한 폭넓은 실태조사, 이에 후속한 제도개선의 권고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향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방문조사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기관으로서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향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모니터링 보고서의 의의는 본 사업 과정에서 난민당사자, 난민인권활동가뿐 아니라, 행정당국과 다양한 이해관계기관의 입장과 경험을 청취하였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법무부 및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공항공사, 항공사,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의료단체에 대한 인터뷰를 폭넓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공향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무부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책무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공항공사, 항공사,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의료단체, 난민인권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즉시 실현가능한 공향난민의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았으며, 실제로도 공항공사, 항공사 전 직원,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직원, 의료단체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다만, 법무부 및 출입국항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본 사업에 따른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법무부의 의견의 수렴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모니터링 사업 이후에라도 법무부를 포함한 공향난민 인권문제의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공향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의

20) 난민인권네트워크, 2019년도 보고서, 1-2.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꼭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제3절

### 본 사업의 범위, 일정, 방법

#### I.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은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의 송환 대기실, 환승구역, 난민심사대기실의 현황을 모니터링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 및 심사절차, 구금상황 및 송환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특히 구금상황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및 여성, 아동, 가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본 사업은 주로 최근 3년간 한국에 입국한 공항난민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사례도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최근 현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보고서, 2018년도 보고서, 2019년도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II. 본 사업의 일정

본 사업은 202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진행되었다. 그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정	주요 내용	세부 추진 내용
2020. 5.초	선행연구 검토	과거 실시된 선행 조사의 내용 검토하고, 새롭게 부각된 이슈를 확인
2020. 5.말 ~ 2020. 6.	세부 모니터링 계획 수립, 인터뷰 대상자 물색 및 선정	두 차례 기획회의를 통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물색 및 선정
2020. 7. ~ 2020. 8.초	인터뷰 질문지 작성 및 번역, 인터뷰 섭외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고, 난민당사자에 대한 인터뷰 질문지는 프랑스어 및 아랍어로 번역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법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인터뷰 협조공문을 발송
2020. 8. ~ 2020. 9.초	인터뷰 실시 및 추가 인터뷰 진행	섭외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서 준비된 인터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실시, 기실시된 인터뷰 중에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인터뷰를 실시
2020. 9.말 ~ 2020. 10.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수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집필하고, 해당 내용을 감수
2020. 11. 5.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간담회 개최	모니터링단, 국가인권위원회 관련업무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 Ⅲ. 본 사업의 방법

본 사업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의 구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수행되었다. 모니터링단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순번	단체	성명
1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2	공익법센터 어필	전수연
3	공익사단법인 정	송윤정
4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5	사단법인 두루	김진
6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7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8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9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공항난민에 대한 법적 조력에 있어서 모니터링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은 본 사업에 긴요한 도움이 되었다. 본 모니터링 보고서는 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실시한 인터뷰 외에도 모니터링단의 구성원들이 직접 수행한 소송 사건 등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모니터링단의 구성원들이 수행한 소송 사건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사건 유형	순번	사건 번호	비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723	소취하로 종결(처분철회)
	2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0385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52093	원고 승소(상고기간 도과로 확정)
	3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715	원고 패소(항소기간 도과로 확정)
	4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495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98	원고 패소
		대법원 2016두48188	원고 패소(심리불속행 기각)
	5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617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61704	원고 승소(상고기간 도과로 확정)
	6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662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61964	소취하로 종결(1심 승소 후 입국)
	7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501	원고 패소(항소기간 도과로 확정)
	8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241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48210	원고 승소
		대법원 2016두58215	원고 승소(심리불속행 기각)
	9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234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48227	원고 패소
		대법원 2016두64425	원고 패소(심리불속행 기각)
	10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140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482	원고 승소

사건 유형	순번	사건 번호	비고
		대법원 2016두58260	소 각하(난민인정결정을 받아 소의 이익 소멸)
	11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840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3328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12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857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3335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13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864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3342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14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888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3359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15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895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3366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16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956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3397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17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949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3380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18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932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3373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19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326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369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20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734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383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21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727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376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22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741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390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23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758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406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24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765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413	소취하로 종결

사건 유형	순번	사건 번호	비고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25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772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420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26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789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437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27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796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444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28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802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451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29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819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468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30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826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475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31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833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529	소취하로 종결 (1심 승소 후 입국 전제로 소취하)
	32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638호	소취하로 종결(출국)
	33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669호	소취하로 종결(출국)
	34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621호	소취하로 종결(출국)
	35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614호	소취하로 종결(출국)
	36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003	소취하로 종결(출국)
	37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482	소취하로 종결(출국)
	38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093	소취하로 종결(출국)
	39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062	소취하로 종결(출국)
	40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764	원고 패소(항소장 각하로 확정)
	41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24	원고 패소(항소기간 도과로 확정)
	42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216	원고 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47119	원고 승소
		대법원 2019두55248	원고 승소(심리불속행 기각)
난민인정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소송	1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509	소취하로 종결(처분철회)
	2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536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5348	소송 진행 중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1	인천지방법원 2013인39	각하
		인천지방법원 2014인라4	청구 인용
		대법원 2014인마5	각하(항고심 결정 후 수용해제로 청구의 이익 소멸)
	2	인천지방법원 2020인62	소송 진행 중

사건 유형	순번	사건 번호	비고
난민법 제6조 헌법소송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1	서울고등법원 2019아1414	제청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2019헌바415	각하(당해 사건의 원고 승소 확정으로 재판의 전제성 소멸)
변호인 접견권 침해 헌법소송	1	헌법재판소 2014헌사592	가처분신청 인용
		헌법재판소 2014헌마346	위헌 확인

본 사업에서는 면접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면접조사는 ▲ 공항난민 당사자, ▲ 공항난민 인권옹호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 ▲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공항공사, 항공사 등 이해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공항난민 당사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공항의 인권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하는 동시에, 공항난민 인권옹호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의 활동경험과 이해관계기관의 업무경험을 통해서 공항의 인권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항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그간의 조사경험을 모니터링 결과에 담고자 하였다. 본 사업에서 면접조사를 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분류	면접 대상자	비고
공항난민 당사자	난민신청자 A <sup>21)</sup>	인천공항 환승구역 경험 난민당사자
	난민신청자 B	인천공항 난민심사대기실 경험 난민당사자
	난민신청자 C	제주공항 난민심사대기실 및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경험 난민당사자
	난민신청자 D	인천공항 환승구역 경험 난민당사자
	난민신청자 E	인천공항 환승구역 경험 난민당사자
	난민신청자 F	인천공항 환승구역 경험 난민당사자, 여성
	난민신청자 G	인천공항 환승구역 경험 난민당사자, 아동
공항난민 인권옹호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	최규진	공항 왕진 경험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김은지	공항난민 진료 경험 의사
	정병수	아동인권옹호활동가
이해관계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sup>22)</sup>	
	H 항공사 전 직원 I	법무 담당 직원 (변호사)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직원 J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직원 K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직원 L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M	공항난민 관련 업무 담당자

21) 본 사업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한 공항난민 당사자들의 신상이 특정될 경우, 향후의 난민심사를 포함한 기타 행정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항난민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기재하였고, 신상정보도 최소한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

22)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사업의 면접조사 중 공항난민 당사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 난민신청 접수 절차, ▲ 난민신청 심사 절차, ▲ 난민인정심사 불회불결정 취소소송 등 소송 절차, ▲ 송환대기실, 환승구역 및 난민심사 대기실에서 처우 등에 관한 인터뷰 설문지를 국문으로 작성하고 이를 번역한 후에, 이를 토대로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외의 면접 대상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해당 면접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주제에 관한 질문으로 인터뷰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서면질의서를 작성한 후에 이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본 사업에서는 법무부 및 출입국항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대한 대면 혹은 서면 질의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측에서 본 사업에 따른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 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인천공항 및 제주공항의 송환대기실, 환승구역, 난민심사대기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그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측의 협조 거부로 방문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음으로, 문헌조사는 기존에 실시된 실태조사보고서, 위에 언급한 공항난민 관련 소송 사건, 공항난민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에 실시된 실태조사들은 제2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개관

### 제1절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도입 취지

난민협약은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선언하고 있다.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은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문언상으로는 난민만을 적용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해석상 ‘난민으로서 비호를 구하는 모든 사람(비호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국내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의 비호신청자를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난민인정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협약상 난민 개념을 충족하는 사람이 박해의 위험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난민인정에 관한 국내 절차가 난민에게 설권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형성적 절차’가 아니라, 단지 난민임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sup>23)</sup>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아직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비호신청자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비호신청자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인 난민인정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sup>24)</sup> 나아가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불복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협약상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위법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적절한 절차가 보장되어야만 난민이 박해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5)</sup>

한편, 난민협약 제33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이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즉, 난민협약은 직접적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 자진하여 강제로 퇴거될 수밖에 없게 하는 것과 같은 일체의 행위들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비호신청자에 대해 공정한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23)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2014), 28항.

24) 같은 취지로, 최계영, 앞의 글, 158-159, 이일, “출입국항 난민제도의 개요”, 2019년도 보고서, 10.

25) Hoffmann/Löhr, in: Zimmermann(ed.),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 A Commentary, Oxford, 2011, Introduction to Chapter 5, MN 56-57, 최계영, 앞의 글, 159에서 재인용.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당국이 체류관리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모든 강제송환행위 일체의 금지'를 의미한다.<sup>26)</sup>

이러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설명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의미에 입각하여 보면, 난민에 대한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border)' 역시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경에서의 거부'란 '공정한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리친 입국거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은 ▲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아직 국내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은 비호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 이에 따라 비호신청자에 대해 공정한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강제송환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 난민협약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이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없더라도 입국거부를 통해 난민이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송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마찬가지로 난민협약이 금지하는 강제송환에 해당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난민협약의 유권해석기관인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도 1981년 이래로 일관되게 국경에서의 거부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sup>27)</sup>

○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결정 NO.22(XXXII) 1981 : II.2

A. 입국과 강제송환금지

2. 모든 사례에 있어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 국경에서의 거부를 포함하여 - 은 반드시 면밀하게 지켜져야만 한다.

○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결정 No.82(XLVIII) 1997: (d) (iii)

(iii) 체약국의 국경들에서 난민을 인정할 필요에 주목하는데, 그 내용에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난민인정절차 및 보호책 없는(without fair and effective procedures for determining status and protection needs) 국경에서의 거부를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난민협약에 따르면 '입국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경에 도착한 비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난민인정절차와 보호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난민협약의 체약국은 비호신청자에 대한 입국거부 등 강제송환에 앞서서 '난민인지 여부를 판별할 공정한 난민인정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으며, 체약국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난민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난민법의 제정 시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가 도입되었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는 한국이 난민협약의 체약국으로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난민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난민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난민법에 해당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다.

26) 같은 취지로, 최계영, 앞의 글, 158-159. 이일, 앞의 글, 10.

27)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는 6번에 걸쳐 공정한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경에서의 거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No. 22 (XXXII) - 1981, No. 81 (XLVIII) - 1997, No. 82 (XLVIII) - 1997, No. 85 (XLIX) - 1998, No. 99 (LV) -2004, No. 108 (LIX) - 2008". UNHCR, "A Thematic Compilation of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s", 14-15.

## 제2절

## 난민법의 규정과 출입국향 난민심사의 절차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에 관한 난민법 및 그 하위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출입국향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향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향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향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향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향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민법 시행령 제3조(출입국향에서의 난민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향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향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향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출입국향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탑승 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입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출입국향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출입국향 대기실 설치 등)**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향을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향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출입국향에 대기실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국향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의식주는 개인의 안전과 위생,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출입국향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향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향에 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난민법에 따르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향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sup>28)</sup>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행정당국<sup>29)</sup>은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에 불회부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sup>30)</sup> 난민법 시행령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 7가지의 사유를 불회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sup>31)</sup> 심사부터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는 7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는데,<sup>32)</sup> 행정당국은 그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를 출입국향에 설치한 대기실(난민심사대기실)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sup>33)</sup>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여야 하고, 이후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진행한다.<sup>34)</sup> 이상의 절차를 개요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35)</sup>

28) 난민법 제6조 제1항.

29) 난민법 제6조는 난민인정심사의 회부 여부를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권한은 난민법 제46조 및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입국향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0) 난민법 제6조 제3항,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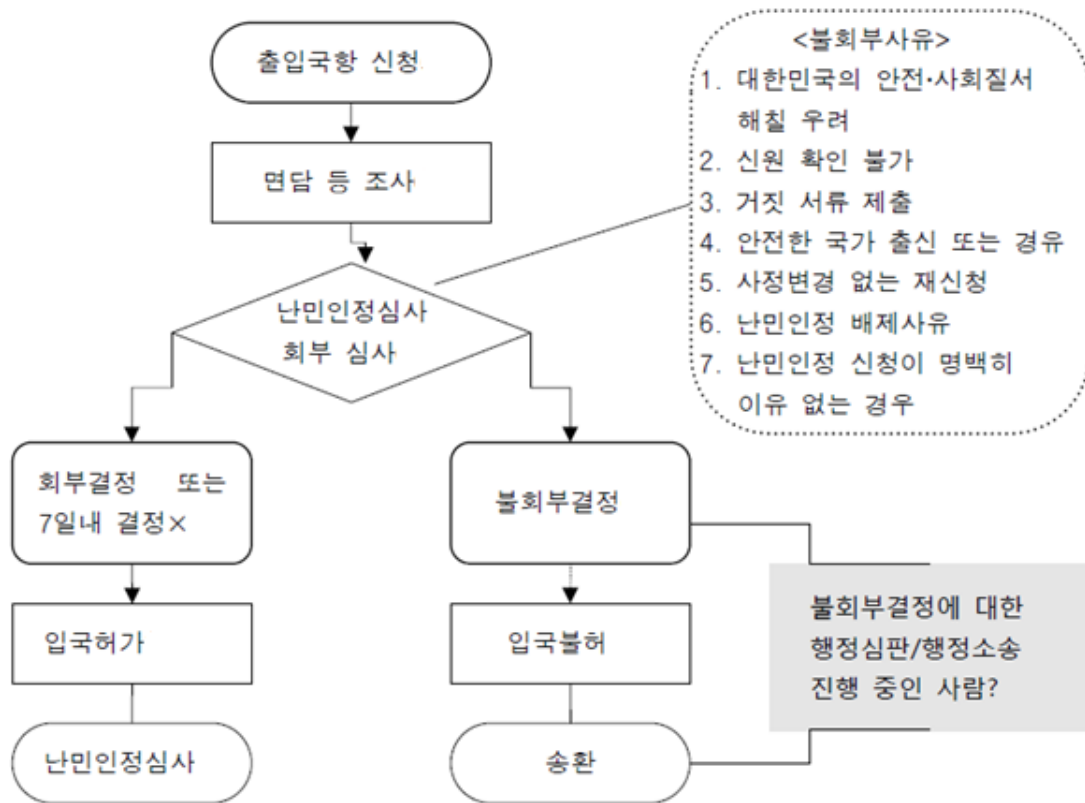
31)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32) 난민법 제6조 제3항.

33) 난민법 제6조 제2항, 제4항, 난민법 시행령 제4조.

34)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6항.

35) 최계영, 앞의 글, 156.



### 제3절

####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관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최근(2020년 6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에 따라 난민신청을 한 비호신청자는 총 1632명이다. 이중 679명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었고, 920명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다. 처분 전 난민신청을 철회한 건수는 총 33건이다.<sup>36)</sup>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된 비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크데, 가장 높은 해(2015년)에는 71%, 가장 낮은 해(2019년)에는 6.9%였고 난민법 시행 이후 평균 회부율은 41.6%이다. 2019년 이후의 최근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과 2020년(상반기)의 회부율은 각각 6.9%와 23.8%로, 최근의 회부율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 수 있다.

약 7년간 운영되어 온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에 관한 판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sup>37)</sup> 및 가이드라인<sup>38)</sup>, 선행 실태조사보고서, 관련 언론 보도 등에서 지적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36) 구체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제3장 제3절에서 후술한다.

37)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권고”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 “공항 터미널 내 장기체류하게 되는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2020. 2. 17.).

38)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2019).

## ○ 난민신청절차의 문제점

- 신청절차에 대한 고지 미흡
- 난민신청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 미흡
-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의 안내 및 조력의 부재
- 난민신청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출국 종용

## ○ 난민심사절차의 문제점

- 난민법상 불회부사유의 문제점
- 지나치게 낮은 회부율
- 미흡한 통역시스템
- 면접절차 및 조사 과정의 문제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통지절차의 문제

## ○ 공항 구금상황에서의 처우 문제

- 법률상 근거가 없는 구금에 해당하는 공항 구금
- 송환대기실 및 환승구역의 기본적인 시설 및 환경 문제
- 공항난민에 대한 건강권 침해
- 아동 등 더 취약한 공항난민을 위한 제도 부재

## ○ 송환과정의 문제

-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하는 송환
- 송환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 송환과정에서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 법률상 근거가 없는 여권 압수

## ○ 권리구제절차의 문제

- 이의신청제도의 부재
- 유효한 가구제 수단의 부재 및 권리구제절차의 지연
- 변호인 접견에 대한 제한
- 심사자료의 비공개

본 사업의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와 같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공항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본 사업은 ▲ 난민신청절차, ▲ 난민심사절차(이상 제3장 제1절), ▲ 공항 구금상황에서의 처우, ▲ 송환과정(이상 제3장 제2절), ▲ 난민인정심사 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제3장 제3절)을 중심으로 공항난민의 인권실태를 모니터링 하였고, 본 보고서의 모니터링 결과도 다음 장에서부터 위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 실태조사 결과

## 제1절

###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 I. 난민신청절차

##### 1. 권리고지

권리의 보장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난민들은 난민신청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관련 절차에 대한 접근이 힘들어 취약한 지위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처음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하고자 하는 난민들에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권리 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항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을 수 있으며, 변호사, 지원단체 등에 접근하여 조력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규칙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뿐만 아니라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신청 절차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sup>39)</sup>

2013년 7월 난민법 제정 이후에도 한동안 출입국항에는 난민신청안내문이 없었고, 난민지원단체들의 이의 제기 후야 2014년 5월 7일부로 탑승동 출구 6곳에 국문과 영문으로 입간판 형태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sup>40)</sup> 그러나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항공사가 이용하는 제1터미널 또는 제2터미널을

39) 난민법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난민법 시행규칙 제4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① 청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청등”이라 한다)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등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게시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
3.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의 일부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및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은 탑승동을 거치지 않으므로, 안내문 입간판을 볼 수 없다.

**대한항공은 나오자마자 바로 입국장이라 통로가 짧아서 안내판을 두기 어려울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문: 공항에서 난민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표지판을 보았나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F

**공항에서 그런 표지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A, E

**아니오, 공항에서 난민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표지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 난민신청자 D

실제로 인터뷰에 응했던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여, 게시된 입간판 안내문도 입국심사대 근처 등 난민신청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41)42)</sup> 제주공항의 경우에도 난민신청 안내에 대한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2018.4. 이후에 제주공항에 입국한 난민신청자 중 면담에 응한 3명은 모두 안내문을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sup>43)</sup>

안내문도 “난민법에 따라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난민 정의와 절차에 대한 안내의 기능이 부실하다.<sup>44)</sup> 안내문이 한국어와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sup>45)</sup> 해당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40)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외2, 2016년도 보고서, 19.

41) 2016년 조사 당시에도 조사대상자 22명 중 단 3명만 난민신청 안내문을 보았다고 답변했다.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외2, 2016년도 보고서, 19.

4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게시물 등 설치 결과 보고’ 공문(입국재심과-852, 2013. 7. 4.)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입국심사장 재심사무실의 4개 지역, 입국심사장 인터뷰대기실의 2개 지역, 난민신청대기실 등 총 7개 지역에만 게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3)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도 보고서, 138.

44) 이는 과거의 관행에 비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2016년도 보고서, 20-21.

“우리는 그 어떤 표지판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항에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려고 찾아 다녔어요. 그때 난민신청에 대해서 안내해줄 수 있는 창구가 없었어요.”

45)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게시물 등 설치 결과 보고’ 공문(입국재심과-852, 2013. 7. 4.)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게시물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만 난민신청절차가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실태조사 인터뷰 대상인 관계자 중에는 ‘사전 안내가 없더라도 심사 단계에서 입국 거부되면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할 것이므로 안내문 게시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경우도 있었다.<sup>46)</sup> 그러나 앞서 본 난민신청자의 효과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 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입국이 거부된 후 비로소 난민신청한 자의 난민 지위에 대해 심사관의 부정적인 예단이 형성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안내 부실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즉, 난민신청자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간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난민의 정의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신청서 교부 및 작성 시 조력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들이 입국심사대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면, 해당 공무원이 이들을 조사실로 안내하여 조사실에서 담당자가 다시 난민신청 의사를 확인한 후에 난민신청신청서를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신청서에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신청서를 교부할 때도 구체적인 작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 서류를 줬습니다. 박해 사유가 무엇인지 써 있었고 절차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A

**난민신청서를 받았지만 따로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 난민신청자 C (제주공항)

---

인터뷰에 응답한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서류가 모국어(아랍어 등)로 작성되어 있었고, 일부 신청자들은 사전에 국내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난민신청절차와 권리에 대한 설명이 없이 조사실로 안내하여 방치하다가 단지 난민신청서를 교부하는 것에 그치는 등, 안내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난민신청절차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여기로 오라는 말을 들으면 따라 하는 것처럼 [무작정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D

**오후 세시에 [조사실로] 데려갔는데 저녁 9시까지 아무 설명도 없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

46)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는 신청의사를 밝힌 후 입국재심실을 거치면서 게시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도 보고서, 160.

---

**안해주고 방에 방치해두기만 해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F**

---

특히 일부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바로 난민신청서를 교부하지 않고 ‘내전을 이유로 난민신청한다고 말하니) 그런 사유는 난민이 아니다’라고 답하거나, 정말로 난민신청할 것인지 몇 번씩 확인하는 등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난민지위 인정 여부를 예상하거나 신청 의사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난민신청에 대한 의지를 위축시키려고 한 사례도 확인된다. 바로 난민인정신청서를 배부하여 작성을 요청하지 않고, 며칠 동안 조사실, 송환대기실 또는 환승구역에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신청서를 배부한 사례들도 있다. 2016년 실태조사 당시에 난민에게 난민신청서를 바로 주지 않고 1~2주가 지난 후에야 신청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난민신청자의 송환대기실 구금 기간을 장기화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sup>47)</sup> 최근에는 입국심사대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외국인들에게 바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고,<sup>48)</sup> 이번 실태조사 인터뷰 대상 중 일부도 바로 난민인정신청서를 교부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일부 인터뷰 대상은 신청서를 교부 받기까지 며칠씩 방치되어 기다려야 했다.

---

**진짜 하겠냐 괜찮겠냐 여러 번 물으면서 신청서를 주지 않았고, 이후에 조사실로 데려가서 난민신청서를 주었습니다. 4일 정도 이후에 신청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 난민신청자 A**

[2018년 12월 28일 입국 후] 비행기 탑승을 거절한 이후에는 출입국에서 우리를 완전히 방치해 두었고, 1월 2일까지 출국장 앞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1월 3일에 처음 서류를 받았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7일 동안 있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F**

[입국심사대에서 난민신청한 후] 출입국 직원이 본인은 난민신청에 대해 모른다고 하고, 송환대기실로 보냈습니다. 송환대기실에서 난민신청하고 싶다고 얘기했으나, 아무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송환대기실에 있는 지 2일 후, 난민신청대기실에 들어가고 나서야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B**

송환대기실에서 2주 정도 있다가 난민신청 접수 장소로 가서 신청서를 쓰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아무 종이를 받지 못하고 2주간 기다렸고, 언제쯤 난민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대기실에서

---

47)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외2, 2016년도 보고서, 22.

48)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도 보고서, 139.

5-6일 이후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난민신청자 C (인천공항)

출입국 당국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신청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안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청서 교부 지연은 난민신청자들을 송환대상인 ‘입국불허자’ 외의 다른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불안한 심리상태로 무작정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난민신청 의사 포기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게 된다. 특히 환승구역에서 난민신청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아예 난민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항공사에 인계한 경우도 있었다.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자] 직원이 “그러니까 당신이 난민신청을 하려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난민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출입국직원이 항공사 직원에게 인계해서 항공사 직원이 제1터미널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난민신청을 [출입국 공무원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을 따라가라는 설명만 받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E

이러한 난민신청서 접수 지연은 결과적으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난민인정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자 하는 난민법 제6조 제3항의 취지를 잠탈한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난민법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일부 신청자들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통역사가 동석하여 관련 내용을 해설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통역사가 대체로 부재했던 과거 실무관행에 비하면<sup>49)</sup> 일정 정도 개선된 제도 운용으로 보인다.

아랍어 통역사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A, C (제주공항), D

다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담자 3명 중 2명은 출입국항 내에 영어나 아랍어가 가능한 공무원이나 통역인이 없어 난민신청 의사 표시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sup>50)</sup> 일괄적으로 통역사가

49)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외2, 2016년도 보고서, 22.

제공되지는 않아, 담당 공무원 재량이나 통역사 가용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에게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신청서 자체가 난민신청자의 모국어로 제공된다면 신청서 상의 내용에 대한 통역보다는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은 출입국 공무원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통역사가 통역하는 절차가 더 적합할 것이다. 난민신청자들은 통역사에게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는데, 통역사가 이러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통역인의 설명 이후에도 난민신청서 상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하였다.

---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들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통역인이 설명을 했는데, 뭐라는 것인지 잘 몰라서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 난민신청자 A**

---

통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통역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일관된 기준도 없어 보인다. 통역을 통해 난민신청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

**전화로 프랑스어 통역을 했는데 입국 못한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상황이 있어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을 하려 했지만 통역인이 전화를 끊어버려서 우리 얘기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F**

---

### 3. 외부 조력의 요청

난민인정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 작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서 외부 조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는데, 입국심사장에는 유엔난민기구 및 외부 단체의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난민심사대기실에는 유엔난민기구, 난민인권센터, 어필 및 피난처 4개 기관의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으나, 기관들의 연락처가 작게 적혀 있는 정도에 그쳐(아예 대기실에서도 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답한 대상자도 있었다), 외부 조력에 대한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입국불허결정 또는 난민인정심사 불허부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비호신청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제한에 대해서는 아래 제3절에서 별도로 살펴보겠다.

---

**3개 정도의 연락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냉장고 옆에 종이로 붙여져 있었고, 작게 써 있어서 사람들이 봐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난민신청자 A**

---

50)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도 보고서, 139.

유엔 연락카드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입국했던 친구가 일요일에 강제출국당할 위기였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C (제주공항)

아니요. 번호 같은 것은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부 번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전화 금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F

연락처 정보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유엔과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송환대기실 가고도 1달 반이 지난 후에 우연히 본 것입니다.

- 난민신청자 C (인천공항)

또한 어떤 기관이 조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자세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1)</sup>

도움 요청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불인정결정 받은 후로 계속 출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엔 사람과 만나고 싶다고 하니, “유엔은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그러니 그냥 돌아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C (인천공항)

#### 4. 소결

난민신청 절차 안내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내문 문구 언어를 추가하여, 현재 다수 난민 발생 국가의 언어를 포함한 주요 언어(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불어 등)로 난민신청 절차와 난민의 정의를 상세히 게시할 필요가 있다. 안내문의 부착 장소도 다양화하여, 입국 단계에서부터 난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내 게시판 옆에 자세한 난민신청절차를 안내하는 안내서를 꽂아 두는 것도 방법이다.

51) 이는 과거 실태조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에도 인터뷰 대상자들은 외부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외2, 2016년도 보고서, 43.

우리가 UN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었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지만 직원들이 거절했어요.

송환대기실에 도착한 뒤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직원한테) 유엔난민기구에 연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했어요. (대기실에 있던) OO국가 사람이 번호를 알고 있어 한국 유엔난민기구 번호를 받았어요.

공무원,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유엔난민기구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했어요. 정보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청서 교부 단계에서 외부 조력이 제한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최소한 전화통역 등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역인의 균질한 통역 능력 확보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그 외에도 외부 조력에 대한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각 기관의 연락처, 연락방법, 조력 분야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되어야 한다.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난민신청 의사를 재차 묻고 어차피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거나, 며칠 뒤에야 신청서를 배부한 사례들은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수의 해외 국가들은 명시적으로 ‘난민 지위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난민신청 또는 보호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든 의사 표시를 난민신청으로 간주하고 있다.<sup>52)</sup> 이미 난민신청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그것은 난민 사유가 아니다’, ‘정말로 난민신청할 것인가’라는 식의 답변으로 난민신청 의지를 위축시키는 관행은 부적절하다. 또한 출입국항에서 불안정한 지위로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제6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필요하게 난민신청서 교부를 지연하여 송환대기실 등에서의 체류를 연장하지 않고,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직후에 난민신청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

## II. 심사 절차

### 1. 심사기준(법령상 불회부처분 사유)의 문제

공향에서의 난민인정심사 회부절차(이하 ‘회부절차’ 혹은 ‘회부심사’)는 해당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 등 명백히 난민이 아닌 자를 판별하여 입국을 금지시킴으로써 이후 난민정식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이다. 즉 회부심사는 명백히 난민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가려내고, 이외에 난민사유 및 난민인정요건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의 입국을 허가한 이후 난민인정에 관한 정식심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볼 수 있다. 또한 공향에서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혹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난민법 제6조 제3항).

회부심사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즉, 난민정식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이하 ‘불회부사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정하고 있다.

52) 대표적으로 유럽의 비호신청절차지침(Asylum Procedures Directive) 제2조.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외 2, 23.

**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sup>53)</sup>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불회부사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1) 불회부사유 판단시 난민사유가 명백히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불회부사유에 포섭시켜 만연히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고 있는 점, 2) 불회부사유를 남용하여 포섭시키다 보니 정식으로 난민심사가 개시되어야 할 난민신청자들에게 심사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결과적으로 난민법과 난민협약에서 정한 '송환금지의무'에 반하는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회부사유와 관련하여, 특히 제3호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는 본인의 박해를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근거로 남용되고 있다. 실례로, 난민신청자 D는 본국에서 반정부시위에 참여하고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형사판결 문건들이 있었고 이를 본국에 돌아갈 시 박해를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난민신청자 D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 ‘당신이 가져온 문서는 거짓서류이며, 거짓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불회부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변호사는 송환위기에 놓인 난민신청자 D로부터 연락을 받고, 변호인접견 후 지원을 시작하였고 해당 출입국직원은 그제서야 난민신청자 D가 제출한 판결문의 진위여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하였다. 며칠 후 대사관 측으로부터 ‘난민신청자 D가 제출한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실제 존재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가 왔다. 이를 확인한 출입국 직원은 난민신청자 D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철회하였고, 난민신청자 D는 마침내 입국할 수 있었다.<sup>54)</sup> 난민신청자 D는 본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진본이고, 따라서 본국으로 송환시 이미 선고된 징역형이

53) 난민법 제19조 (난민인정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4) 난민신청자 D는 모니터링단 중 1명인 전수연 변호사가 대리하였고, 위의 내용은 전수연 변호사가 조력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집행될 것을 두려워하여 송환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며 난민지원단체를 찾아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던 좋은 사례였지만, 대부분의 공향난민신청자들은 출입국에서 ‘당신은 난민사유가 없으니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때로는 출입국직원 혹은 송환대기실 직원으로부터 당신은 변호인접견권도 없고, 입국금지 확정되었으니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는 허위 내용의 협박을 듣기도 한다)’는 통보를 들은 후 출입국의 말을 순순히 믿은 채 송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제7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도 불회부사유로 적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알려져 있는 39건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사례 중에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례에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가 그 불회부사유로 적용되었다.<sup>55)</sup> 하지만 회부심사절차를 마쳐야 하는 단 7일의 기간 동안 행정당국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을 의심의 여지없이 객관적 증거를 밝혀내어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회부사유에 대한 해외 입법례 중 캐나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해 부적격판정이 내려지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sup>56)</sup>.

[표 47] 캐나다 난민신청 심사절차에의 회부 부적격 사유<sup>918)</sup>

사유	설명	적용
타국에서 난민인정 받은 자	• 캐나다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협약 난민으로 인정되었고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있거나 송환될 수 있는 경우	난민신청에 적격성이 없으므로 이민난민심판원의 난민보호과로 회부되지 않음
캐나다 내에서 이미 난민보호를 받은 자	• 이민·난민보호법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난민보호가 이미 부여된 경우	
안전한 제3국(미국)에서 입국	•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경유하거나 위 국가에서 직접 입국하여 캐나다로 온 경우	
안보, 인권 범죄 및 중대한 범죄로 인한 입국 불허	• 안보, 인권 및 국제적 권리 침해, 중대한 범죄 <sup>919)</sup> 또는 조직범죄 등의 사유로 입국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 <sup>920)</sup>	
불회부결정 후 재신청	• 과거 난민신청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서 이민난민심판원으로서의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기각 결정 후 재신청	• 과거 난민신청이 이민난민심판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던 경우	
신청의 철회, 포기 후 재신청	• 과거 난민신청 후 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	

▲ 사법정책연구원,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방안 (2017. 10.), 249.

위 부적격 사유들은 모두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요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난민법상의

55)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외2, 2016년도 보고서, 8.

56) <https://laws.justice.gc.ca/eng/acts/i-2.5/page-19.html#h-275613>

불회부사유 판단기준과는 달리 부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관에게 재량이나 해석의 여지가 적음을 알 수 있으며,<sup>57)</sup> 공항에서의 회부심사제도를 마련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출입국 직원의 재량이 적잖게 적용되는 불회부사유 판단 및 이로 인한 송환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진 국제관습법으로서 “어떠한 사람도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를 받을 위협이 있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이는 - 동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대상이나 요건, 효과 등은 각 조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 대한민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자유권규약 등에도 반영되어 있다.<sup>58)</sup>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으로서 비호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은 직·간접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 즉, 직접적인 강제퇴거명령의 발부 및 집행 혹은 사실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 자진하여 퇴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하여 - 추방(expulsion) 혹은 송환(return) 집행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한 ‘난민’에 대한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border) 즉, ‘공정한 난민인정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내려진’ 입국거부도 난민협약 제33조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반이라는 점은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일관된 견해일 뿐 아니라 국제법 학계에서도 지배적인 해석이다.<sup>59)</sup>

우리 법원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회부사유는 난민협약 및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

“가)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7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 점,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호향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법 제5조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에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이니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만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정당한 난민 역시 난민인정심사를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로 출국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위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사유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에게 있다. 나) (...)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실제적 사유로 불회부결정을 할 수 없다”

현행 난민법 시행령상의 불회부사유는 형식적 요소뿐 아니라 실질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어 불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출입국 직원 개인의 역량과 주관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는 향후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해당 내용의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난민법

57) 사법정책연구원,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방안 (2017. 10.), 249.

58) 난민인권네트워크, 2019년도 보고서, 9.

59) 난민인권네트워크, 2019년도 보고서, 10-11.

및 국제협약상의 강행규정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명백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실제적 이유들로 한국정부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들이 불회부결정을 받고 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급한 과제이다.

## 2. 통역시스템

난민법 제14조에는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 중 절반 정도는 통역이 원활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역인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통역 중에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던 사례도 있었다.

---

“통역사는 제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통역해주지 않았습니다. 통역 수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냐고 물어보았을 때 주도적인 것은 많지만 이것이 시위를 조직한 사람이라는 뜻인지, 구호를 외치는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의 질문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통역해주지 않았고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 사람 같았습니다. 더 이야기 하고싶어도 끝까지 협력해주지 않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A

“언어소통 자체는 원활했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통역인이 ‘나도 이집트인이지만, 그런 거 모르는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움다’라는 직업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통역사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제 말을 막고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쉬운 말로 표현했는데, 그 통역인이 조사관에게 무슨 얘기를 전달하는 지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D

---

또한 통역인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난민심사대기실에 들어가서 이슬람 국가에서 온 난민신청자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던 부당한 경우도 있었다.

---

“난민신청하였을 당시 저와 6명의 시리아인들이 같이 방을 쓰고 있었는데, 통역인이 방으로 들어와서 ‘저는 아랍어를 좋아해요, 대학교에서 아랍어를 공부했어요’라고 했는데, 그가 ‘솔직히 한국인들은 아랍인들이 입국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슬람 전파하는 걸 싫어해요’라고 했습니다.”

(문: 통역인이 아랍인 싫다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저와 시리아인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저희는 입국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 통역인은 ‘한국이 이슬람국가가 되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통역인이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C

난민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면접조사시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난민전문통역인이란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난민전문통역인에게 요구되는 교육 과정에 대한 법무부령이 신설되지 않고 있어,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으며, 통역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인 언어적인 의사소통능력마저 들쭉날쭉한 것이 현실이다.

### 3. 면접조사관의 고압적이고 불신하는 듯한 태도, 충분한 발언기회 미보장, 부족한 면접조사 시간 등

인터뷰 대상인 난민신청자들은 조사관들이 전반적으로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심과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불신을 드러내는 듯한 반박 질문을 하는 조사관들도 있었다고 한다. 면접 조사 중간에 조사관이 ‘한국에서 난민불인정이 될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나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니, 이에 조사관이 소리를 지르고, 종이를 책상에 던지며 물컵까지 던지려 하였던 사례까지 있었다. 면접시간 중에 난민면접조사관으로부터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출입국 직원은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말하는 태도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제가 평생 당해본 적이 없는 모욕적인 처우였습니다. (...) 인터뷰 질문에 대해 충분히 대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A

“질문 자체가 압박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입국 직원(조사관)은 ‘우리는 너를 믿을 수 없다, 이 신청서는 사실이 아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지?’라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 난민신청자 B

“면접을 진행하던 사람은 질문을 하고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답변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대답을 했을 때도 정정하고 싶었지만, 짧게 대답하라고만 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저에게 ‘난민신청이 불인정결과로 끝나는 경우, 송환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저는 돌아갈 수 없다’며,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을 치고 종이를 던지고, ‘당신은 한국을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컵을 던지려고 해서 무서웠습니다.

(문: 그래서 결국 서명을 하셨던 거죠?) “네, 물론입니다.”

(문: 컵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다른 걸 던진 않았고. 종이를 들었다가 책상에 던졌습니다.”

(문: 통역인이 신청인의 말을 끊거나 짧게 얘기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통역인이 저에게 말을 짧게 하라고 했지만, 그건 통역인이 본인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조사관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문: 조사관이 시키지 않은 말을 하진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저의 난민사유에 대해 많이 설명하고 싶었지만, 대답을 충분히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관이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일을 찾아봤는지 질문해서, ‘예’라고 대답했는데, 저의 답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러 온 사람처럼 비춰지니까 그런 상황을 설명해야 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관은 저에게 ‘어~ 일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어~ 일하러 오셨구나~’)은, 통역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당신이 대만에서 일을 찾았다는 것은, 한국에도 일하러 오신 건가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 난민신청자 C(인천공항)

“조사관은 처음부터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의 질문과 태도로 볼 때 조사관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공항으로 갈 때에는 무슨 수단을 이용하였고, 차를 탔다면 그 차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고 등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을 질문하였습니다. 조사관이 저게 일하러 왔냐는 등의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난민신청서와 함께 저의 본국에서의 박해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저장된 USB를 제출하였는데, 조사관은 사진자료들을 보면서도 ‘이집트에 아무 일도 없었다, 이집트는 안전하다’고만 얘기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질문과 관련된 대답만 들으려 했고, 질문과 관련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얘기가 아니면, 듣지 않고 싶다고 했습니다. (...) 예를 들어 본국에서 저의 형제가 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체포당했던 일을 말하려고 하였지만, 조사관은 ‘나는 너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면서, ‘네 가족 얘기하는 건 아니다’고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할 말이 있어서 말하려고 했을 때에는, 조사관이 ‘물어보면 대답하세요’라고 하여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대해 (...) 대답을 한 이후에 이에 대해 보충하는 시간은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총 4시간 정도 진행하였는데, 저의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난민 사유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D

이외에도 ‘난민 사유’ 자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왜 출입국에서는 난민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중간에 휴식시간도 없이 조사가 진행되어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답한 난민신청자도 있었다.

“인터뷰에서 딱히 힘든 점은 별로 없었으나, 난민신청 사유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되는 점이 좀 어려웠습니다.

인터뷰는 짧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F

다만 이례적으로 제주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던 인터뷰 대상자는 난민조사관이 ‘충분하게 대답할 기회를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면접조사관은) 좋은 사람이었고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C

#### 4. 영장 없는 사실상의 강제조사

출입국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신청에 대한 난민회부심사와 관련한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난민법 시행령은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탑승 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입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3항)”고 정하고 있다. 즉 조사를 받는 난민신청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조사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sup>60)</sup>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5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출요청사유, 제출서류의 반환 여

60)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부,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을 기재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고(제10조 제2항),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를 2부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한 후 그 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3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되는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는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제20조).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수사의 원칙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런데 난민법 및 시행령에서는 회부심사의 조사방법에 대한 요건·절차나 강제조사의 제한요건 등을 정한 바가 없다. 상황이 이와 같으니, 결국 공항 출입국에서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 - 대부분의 공항 난민신청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공항에서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여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다 - 은 고스란히 난민신청자에게 돌아가고 있어 사실상의 강제성을 띤 조사방법이나 휴대폰 등 제출요구에도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의 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에도 조사대상자의 입회 및 영치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인터뷰 대상자 중 절반 정도는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이후 혹은 회부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휴대폰의 제출과 휴대폰 비밀번호의 공유를 요구받았으며,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휴대폰에서 어떤 내용을 볼 것인지(예를 들어, 사진파일, 이메일, 메신저 앱 등)도 특정하여 알려주지 않아 휴대폰을 돌려받고 나서도 출입국 직원이 어떤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혹은 어떤 파일을 복사하여 이동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한다.

---

“휴대폰은 제가 난민신청 대기실에 들어간 첫 날, 출입국 직원이 가져가서 몇 시간 후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직원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알려주었고, 비밀번호를 풀어 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난민 면접 시간에는 휴대폰을 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난민신청자 B

“제가 난민대기실로 내려갔을 때 가방 검사를 했고, 휴대폰은 하루동안 압수했다가 돌려줬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날짜에 핸드폰을 요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출입국 직원이 비밀번호 알려 달라고 했겠네요?) 네.

(문: 출입국 직원이 핸드폰 가져가서 어떤 것을 확인할 것이라는 얘기도 하였나요?) 무엇을 볼 것인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날 제가 다시 저의 휴대폰을 돌려받았을 때 'USB를 통해 파일이 이동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을 [출입국 직원이] 가져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버'라는 [왓츠앱과 비슷한] 앱이 있는데 바이버에 있던 음성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

---

(문: 사진파일은 그대로 있었어요?) 사진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부러 삭제를 했던 건 아니고, 바이버에 옮기면, 음성메시지를 틀 수 없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 핸드폰 안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봤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문: 휴대폰을 난민신청 대기실에서 하루동안 압수당했으니, 휴대폰을 C 씨가 있는 곳에서 본 건 아니겠네요?) 제 앞에서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기타 소지품 관련하여, 공항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던 사무실에서 제 소지품을 검사했습니다. (...) 처음에 여권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여권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가방을 마구 뒤졌습니다.”

- 난민신청자 C (인천공항)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이후) 저의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제 것과 난민신청자 H의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의 잠금장치를 열게 하여 휴대폰의 내용을 면접관이 확인하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은 것은, 정확하지 않은데 꽤 오래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시간 이상은 아닌데 하여튼 몇 시간은 가져갔습니다.”

- 난민신청자 F

---

반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던 인터뷰 대상자 중 일부는 면접조사관에게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면접조사관이 제출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으며, 처음부터 개인 소지품 제출이나 제시할 것을 전혀 요구받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면접조사관마다 조사방법이나 증거수집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가 난민신청서 제출했던 서류와 USB 영상들은 모두 가져가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USB는 30분이나 15분 정도 가져갔다가 돌려주었습니다. USB는 제가 먼저 제출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A

“인터뷰를 할 때에는 면접관으로부터 핸드폰이나 이메일, 소지품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가져갔던] 증거자료들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면접조사관은 따로 달란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핸드폰은 난민심사대기실에 들어간 순간부터 요구한 적이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D

“인터뷰할 때 면접관이 핸드폰이나, 이메일, 소지품 등을 보여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의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C (제주공항)

---

위와 같이 특정 공항 혹은 조사관에 따라 조사방법이 다르고, 사실상의 강제조사를 받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으나, 구속력 있는 법령으로 조사방법 등의 제한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송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난민신청자들의 취약한 처지와 심리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제조사는 회부심사과정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5. 인터뷰 내용 확인 및 수정

난민심사관은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을 마친 난민면접조서는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묻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난민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3항). 면접조서에 대한 확인 작업을 마친 후에는 면접조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본인의 면담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서명한다”는 취지의 문장을 기재한 후 하단에 서명하게 된다.

	시 간	13 : 30 - 16 : 50	
면접조서 내용확인	본인확인란	본인은 면담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용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	
		<p>لقد قمت المراجع على المعروض المتقابله بالتحا كيد م فلال          المترجم حتى اعتقد اني متظا بقه بماذ كرت</p>	
난민신청자	[Redacted]	(서명)	[Redacted]
통역인	[Redacted]	(서명)	[Redacted]
담당공무원	[Redacted]	(서명)	[Redacted]
난민심사관	[Redacted]	[Redacted]	[Redacted]

▲ 난민면접조서의 마지막 장의 면접조서내용확인란과 서명란

2016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 중 10명은 인터뷰를 마치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그 중 3명만이 면접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바 있다<sup>61)</sup>. 이번 조사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면접조서에 서명은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면접조서가 한국어로 적혀있어 본인은 내용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통역인이 꼼꼼히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응답이 있었다.

61)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외2, 2016년도 보고서, 31.

“인터뷰 마지막에 조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면접조사 내용이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통역인이 읽어주었습니다. 통역인이 조서의 내용을 빠르게 읽어주었는데 (한국어로 기재된 조서의) 내용을 모르니 꼼꼼히 읽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난민신청자 A

## 6. 불회부 결정 통지방법 및 이유고지 여부

난민법 시행 초기에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관한 처분서가 난민신청자에게 교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다수의 판결례<sup>62)</sup>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개정하였고,<sup>63)</sup> 2016년경부터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당 난민신청자에게 처분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서 교부 여부의 문제는 2019년 난민법 시행령에 불회부결정 통지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sup>64)</sup>

그러나 위와 같은 지침개정 이후에도 처분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통·번역과 처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고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화로 불회부결정을 통역 받더라도, 불회부 이유에 대한 설명은 난민신청자가 먼저 물어보는 경우에 간략히 들을 수 있었고,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면 난민신청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회부절차를 포함한 한국의 난민심사절차가 낮은 난민들에게 불회부사유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을 본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한 사실조회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대사관에서 당신이 제출한 서류는 모든 가짜라고 하였다’고 설명 - 혹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거나, 변호인조력권이 없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공항출입국에서 만난 직원(직원 소속이 공항출입국인지 송환대기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은 본인이 ‘유엔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은 이미 최종적으로 불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공항에서의 회부심사절차에서 불회부결정을 받는 경우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당신은 난민사유가 없으니 불회부 결정되었다’는 정도의 간략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을 뿐이며, 이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거나 이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내용은 전혀 고지받지 못한다.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불복방법에

62)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구합32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구합508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54482 판결 등 다수.

63)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난민과-9493, 2016. 7. 27. 시행). 본 지침의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216호 사건에서 그 지침 내용 중 일부가 제출된 바 있다.

64) 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78호로 개정되어 2019. 12. 31. 시행된 것) 제5조 제7항.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6조),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반하는 행정관행이 존재하는 것이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는 난민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크게 미흡한 문제는 난민법 및 관련 법령의 법적 공백과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에서의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에 관한 불명확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이유제시(법 제23조)’, ‘처분방식의 문서주의(법 제24조)’, ‘불복방법, 기간의 고지(법 제26조)’ 등의 절차적 보장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인정과 출입국 행정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 제3조 제2항 제9호), 그 적용배제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정하는 절차에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판결이 주류적이거나,<sup>65)</sup>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의 판결도 있으며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은 내려진 바 없다. 난민법 및 그 하위법령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5조 제2항), 처분서의 교부의무 규정도 2019년이 되어서야 신설되었다. 결국 입국도 못한 상태로 공항에서 언제 송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입국 이후 난민신청을 진행하는 신청자들보다) 상황적으로 취약한 난민신청자들은 출입국 직원과 송환대기실 직원 혹은 항공사 직원들로부터 송환압박과 불복방법이 없다는 허위정보를 들으면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

(문: 불회부결정과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나요?)

“면접 후 4일 뒤에 결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방을 챙기라고 했고 처음 갔던 사무실 같은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불인정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했고, 제가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일반 시위 참가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사관의 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였고,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변호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인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자기가 유엔 사람인데 이미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알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4시간 정도 그 곳에서 기다린 후에 한 사람이 와서 저와 다른 불인정결정자를 데리고 이동했습니다. 면세점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12일간 거기에 있었는데 [출입국 직원] 제 가방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 짐도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왜 불회부되었는지 이해하였나요? )

“당시 통역인이 있었고, 난민면접을 진행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불인정 통보를 해줬는데, 저는 불인정 사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문

---

65)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구합32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구합508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54482 판결 등 다수.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하급심의 주류적인 입장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최계영, 앞의 글, 169.

---

등 모든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면접을 진행한 사람이 이집트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서 확인했는데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문: 송환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어떤 종이에 난민불인정이 되어 송환된다는 내용이 써 있었고 저는 그것을 거부해서 서명하지 않았습니  
다. 그와 비슷한 내용의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서명하면 제 의지로 송환된다는  
것인데 저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적힌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통역인이 가고 직원이 저에게 ‘이거 서명하세요’  
하는데 계속 거부하자 통화로 다른 통역인을 연결해서 이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제야 설명을 해줘서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A

(문: 불회부 결정과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나요?)

“한 직원이 저에게 가방을 챙겨 (난민심사대기실에서) 나가라고 했고, 공항 내에 다른 사무실로 이동했습  
니다. 그 장소는 난민면접실과 같은 층에 있었고, 아마도 입국심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난민실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전화기들이 쪽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화기 하나를 들고, 말을 하고 듣는 식이었습니다.  
이동한 장소에서 그 직원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고, 저에게 전화를 바꿔줬는데, 아랍어를 구사하는  
여성 통역인이 난민 불회부[결정]를 받았다고 전해줬습니다.”

(문: 이유를 설명 들으셨어요?)

“제가 통역인에게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자, 통역인은 ‘당신에게 여권이 없기 때문입니  
다’라고 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C

(문: 불회부 결정과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나요?)

“회부심사면접을 진행한 3-4일 후에 결과를 들었습니다. 같이 입국하였던 친구와 저에게 이곳[난민심사  
대기실]에서 나갈 거니까 짐을 챙기라 해서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수화기  
를 들라’고 해서 들었더니, 아랍어로 어떤 [통역인으로 추정되는] 여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역인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신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왜 불회부되었는지 이해하였나요?)

“저와 제 친구가 같은 결과, 즉 불회부결과를 들었는데, 통역인과 통화한지 1분 만에 결과통보가 끝났습

---



니다. 전화 한 번으로요. 전화 통보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전화하면서, '유엔과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당시 통역인은 '저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했고, '저는 이미 불인정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D

(문: 불회부 결정과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나요?)

"인터뷰하고 시간이 지나고 저녁 정도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짐을 싸라고 했는데 이유에 대해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입국하는건지 출국하는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저희를 첫 날 보냈던 장소[출국장]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통역이 이루어졌는데, '난민신청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로 된 종이를 가져와서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왜 불회부되었는지 이해하였나요?)

"전화 한 사람이 난민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된다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고, 출입국 직원들과 이야기하려 했으나 영어와 한국어로만 대답을 해서 전혀 소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F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던 위 사례들과는 달리, 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 중에는 이례적으로 회부결정을 받은 후 출입국 직원들이 조출하게나마 케익을 들고와서 축하파티를 해주었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출입국은 제주공항이었으며, 출입국 직원들은 해당 난민신청자에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축하합니다. 입국 축하해요! 한국 입국하고 나서 한국법도 잘 지키면서 지내세요'라는 등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한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난민신청자의 입장에서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출입국 직원임을 감안하면, 취약한 위치와 상황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에게 보인 당국의 친절은 잊지 못할 환대의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고(실제로 해당 난민신청자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주공항의 출입국 직원분들은 친절하였고, 감사한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결국 단기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신청자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통합되기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이다.

## 7. 결과 통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공항에서의 난민심사과정에서의 회부율은 2017년도에는 11.1(22/197)%, 2018년도에는 46.7(241/516)%, 2019년도에는 6.9(13/188)%, 올해 상반기까지는 23.91(11/46)%로 일정치 않은 편이다.

(단위: 건)

구분	연도	소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6월
신청		1,632	98	400	187	197	516	188	46
결정	소 계	1,632	97	392	195	195	511	190	52
	회 부	679	41	284	67	22	241	13	11
	불회부	920	56	108	121	168	264	162	41
	철회	33	0	0	7	5	6	15	0

▲ 2013-2020. 6.까지 난민인정심사 회부신청 결과<sup>66)</sup>

다만, 2018년도에 공항 난민신청자 수가 전년에 비해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던 것은 당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집중되었던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2020년도에 신청자 수가 이전 해에 비해 약 1/4로 급감한 것은 연초부터 전세계적으로 발발한 COVID-19의 영향으로 각 국가들의 국경이 사실상 폐쇄되고 항공편 등이 대거 결항되면서 국경을 넘는 이동 자체가 제한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항별 신청건수와 난민인정심사 회부율을 비교해보면,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이 이뤄지는 곳은 주로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이었으며, 인천공항에서의 난민신청은 전체 공항 난민신청 건수의 약 7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연도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13~'18.12) (단위: 건)

연도/ 사무소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			등해		
	신청	회부	불회부	신청	회부	불회부	신청	회부	불회부	신청	회부	불회부	신청	회부	불회부	신청	회부	불회부
13	25	15	10	-	-	-	-	-	-	-	-	-	0	1	-	-	-	-
14	71	26	45	-	-	-	70	26	44	-	-	-	-	-	-	-	-	-
15	393	284	109	-	-	-	6	2	4	1	1	0	-	-	-	-	-	-
16	168	57	-	-	-	-	7	0	-	11	4	-	-	-	-	1	0	-
17	184	20	-	-	-	-	2	0	-	11	1	-	-	-	-	0	0	-
18	394	173	209	2	0	2	2	0	2	118	68	51	-	-	-	-	-	-

▲ 2013-2018 난민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정리표<sup>67)</sup>

또한 금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2019. 1.부터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출입국에서의 난민신청자 (불)회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2018년 공항출입국에서의 전체

6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 6.), 37.

67) 난민인권센터, "출입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와 인권", <https://nancen.org/1979?category=118980> (2019. 10. 16.).



난민신청자가 516명인데 비해, 2019년에는 전체 난민신청자가 188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 약 35%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2018년도에 제주로 들어왔던 예멘 난민신청인들이 무비자사증으로 입국하였다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법무부가 2018. 7. 3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를 확대하여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고, ‘이란, 수단, 시리아, 예멘, 이집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한국에 입국하는 난민신청자의 국적국들을 대거 포함시켜 사실상 난민신청자들의 입국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이후 COVID-19의 전세계적 확대로 인하여 엄격한 국경관리 및 통제조치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무비자사증 폐지와 관련한 더 이상의 문제제기마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연도/ 사무소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신청	회부	불 회부	신청	회부	불 회부	신청	회부	불 회부	신청	회부	불 회부
2019	162	18	129	22	0	22	1	0	1	3	1	2
2020. 10.	46	5	41	0	0	0	0	0	0	0	0	0

▲ 2019 - 2020.10까지 4개의 공항에서 이뤄진 난민신청/회부/불회부건 수

위의 표에서 2020. 1.부터 정보공개청구 결과 회신일(2020. 10. 28.-29.)까지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자 수를 보면, 올해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은 인천공항에서만 있었으며 신청자 수 자체도 전년도에 비해 75%가 줄어든 46명뿐이고, 난민인정심사 회부 결정을 받고 입국한 케이스는 5건에 불과하다.

## 8. 소결

### 가. 입법 취지에 맞는 회부심사 운용 필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불회부결정을 하여야 입법 취지에 맞는 난민인정심사 회부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난민 사유에 대한 출입국 조사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부결정 후 보다 심층적인 난민인정심사로 난민사유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불회부사유에 관한 규정이 조사관의 광범위한 해석상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보다 형식적 객관적 사실에 관한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불회부사유의 개정이 필요하다.

### 나. 통역인의 ‘통역인으로서의 기본 자질’ 및 전반적인 인권 교육 필요

통역인마다 통역의 실력이 일정치 않다는 점,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면접조사 중간에 그대로 난민신청자나 조사관에게 전달하는 등 부적절하게 면접에 대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난민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로 중요한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이 통역에 있어 주로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공항별 난민신청자 수와 사용언어를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 등으로) 한 주에 2-3회라도 통역인을 상시 대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난민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인천공항에서 아랍어나 불어 등의 언어는 자질이 검증된 통역인이 상시 대기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또한 통역인의 '통역인으로서의 본분'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통역인은 대화당사자간의 말을 정확히 옮기는 역할이며, 이에 통역인 본인의 사적 견해를 더하거나 혹은 진술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빼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통역인의 기초적 자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다. 면접조사관 및 출입국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 교육 및 평가 제도 필요

난민신청자들이 공항에서의 난민인정회부 심사 전체 과정에서 가장 불쾌했던 경험으로 꼽는 것 중 하나는 면접조사관의 난민신청자의 난민사유에 대한 불신이다. 즉 대부분의 조사관들은 난민신청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한국에 돈을 벌려고 온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난민면접에 임했고,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이와 같은 선입견을 여러 방식으로 표출하는 조사관의 태도에 낙담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공항 출입국 직원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미 수 년간 난민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문제이다. 이에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심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대책 역시 제시하여 왔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조사관은 난민신청자들의 입국 결정권 - 난민들에게는 생사 여부와도 같은 - 을 쥐고 있기에 난민신청자들이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더욱 시정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움부즈맨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입국 심사를 마친 난민신청자들에게 조사관 및 통역인의 인권침해 행위 등을 조사하여 이를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민사법모니터링과 유사하게 출입국에서 난민면접을 마친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인터뷰 등을 하여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 라. 개인 소지품 등에 대한 영장없는 사실상의 강제조사 금지 및 내부 조사지침 마련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조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출입국 측에서는 난민신청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지품을 조사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들이 본인의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회부여부를 결정하는 출입국 직원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동의 역시 '강요된 동의'에 가깝다. 따라서 난민신청자의 소지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문서의 제시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완전히 자발적인 동의가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며, 인권보호수사규칙과 같은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준칙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조사지침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마. 불회부결정시 처분 내용 및 불복방법 등에 대한 설명 필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받은 난민신청자에게 실질적인 불복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불회부결정

처분서를 문서로 교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분 사유, 불복 절차 및 방법을 통번역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 공항 구금상황 및 송환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I. 공항난민의 구금상황 개관

공항난민의 구금장소는 송환대기실, 환승구역, 난민심사대기실로 구분된다.

먼저, 송환대기실은 송환지시의 대상이 된 공항난민이 머물게 되는 공항 내의 공간이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불허 결정을 받은 공항난민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운수업자 등(즉, 항공사)에게 송환지시를 하면, 그 송환지시의 대상이 된 공항난민은 송환대기실에 머무르게 된다.<sup>68)</sup> 과거에는 송환지시의 대상이 된 공항난민을 일률적으로 송환대기실에 구금하였는데, 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송환대기실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을 법률상 근거 없이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바 있다.<sup>69)</sup> 이후 행정당국은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공항난민에게 송환대기실에 수용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송환대기실에 수용될 의사가 있는 공항난민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송환대기실에 수용되고, 송환대기실에 수용되는 것을 거부한 공항난민은 환승구역에 머무르게 된다. 다만, 현재에도 송환대기실에 한 번 수용된 공항난민은 송환대기실의

68) 출입국관리법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댕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5.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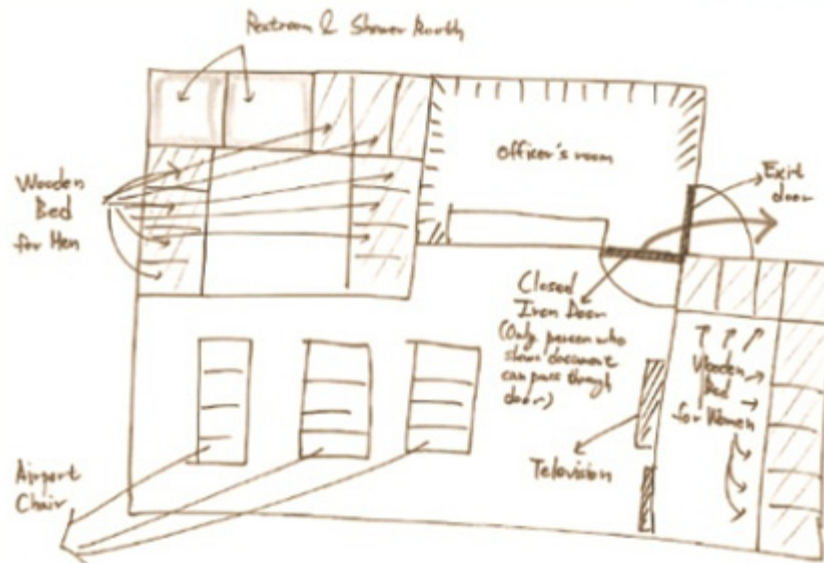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송환의 의무) 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요구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의 교통비·숙식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

69) 대법원 2014. 8. 25.자 2014인마5 결정. 본 결정은 송환대기실이 “항공사운영협의회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공중전화를 통한 방식을 제외하고는 외부인과의 접촉 역시 제한되고 있다”며 입국불허 결정을 받은 공항난민을 송환대기실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출입이 사실상 자유롭지 않은 바, 송환대기실 수용은 여전히 ‘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송환대기실 수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수용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송환대기실은 항공사들로 구성된 항공사운영협회가 관리용역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출입국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과 항공사운영협회가 송환대기실의 운영을 공동결정 하는 등 출입국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과 항공사운영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sup>70)</sup>



[송환대기실의 구조에 관한 모식도]

다음으로, 환승구역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지역부터 항공기 탑승 게이트 입구까지의 구역으로, 면제점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을 말한다. 법원이 송환대기실 강제 수용을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행정당국은 공항난민을 송환대기실에 강제 수용하는 대신 송환대기실에 수용되는 것을 거부한 공항난민을 환승구역에 방치하고 있다. 환승구역에 머무르게 되는 공항난민은 환승구역 내부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이동이 가능하지만, 환승구역 외부로의 이동은 금지되어 있다. 결국, 공항난민을 환승구역으로 제한하여 머무르게 하는 것도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71)</sup> 한편, 항공사운영협회(및 그 관리용역업체)와 출입국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관리하면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공항난민에게 일정한 의식주를 제공하는 송환대기실과 달리, 출입국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은 환승구역에 머무르고 있는 공항난민의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환승구역에 머무르는 공항난민은 의식주를 모두 비롯한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스스로 꾸려가야 한다. ‘공항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는 환승구역의 출입을 허

70) 인천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인라4 결정

71)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련의 판결에서 공항 환승구역에서 장기간 체류한 난민신청자들은 박해의 위험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동의 자유가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구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CASE OF Z.A. AND OTHERS v. RUSSIA, Applications nos. 61411/15, 61420/15, 61427/15 and 3028/16, 21 November 2019 등 참조.

가할 권한이 있는 등 일정한 관리의 책임이 있는데,<sup>72)</sup> 공항운영자 역시 환승구역에 머무르는 공항난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난민심사대기실은 공항에서 난민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머무르게 되는 공간이다. 난민법은 난민심사를 받고 있는 공항난민을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3)</sup> 난민심사대기실은 출입국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

▲ 입국심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 ▲ 입국불허 결정 이후 난민신청을 한 경우, ▲ 환승객으로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입국심사와 난민신청, 난민심사, 난민인정심사 불허불결정에 대한 쟁송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공항난민이 겪게 되는 구금상황을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국심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난민심사대기실에 수용된다. 7일의 범위 내에서 난민심사대기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난민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면 해당 공항난민은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을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지 않으면 해당 공항난민은 공항에서 계속 머물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불허부결정을 받은 공항난민은 송환대기실에 수용될 의사가 있을 경우 송환대기실에 수용되며, 송환대기실에 수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환승구역에 방치된다.

다음으로, 입국불허 결정 이후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본다. 입국불허 결정을 받은 공항난민은 송환대기실 또는 환승구역에 수용된다. 그곳에서 해당 공항난민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심사대기실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수용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관한 결정 이후의 구금상황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을 한 공항난민의 경우와 같다.

마지막은 환승객으로서 공항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공항난민은 난민심사대기실에 수용된다. 이 경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면 해당 공항난민은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72)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항공보안법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3) 난민법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법 시행령 제4조(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출입국항에 대기실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의식주는 개인의 안전과 위생,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공항난민은 환승구역에 방치된다. 행정당국은 환승객의 경우 입국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이에 따라 입국불허 결정이나 송환지시를 받지 않게 되므로, 송환대기실의 수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 바 있다.<sup>74)</sup> 해당 공항난민이 난민신청 접수거부 등을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환승구역에 수용된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난민심사대기실에 수용되며, 이후의 절차는 난민신청이 접수된 환승객 공항난민의 경우와 같다.

## II. 구금장소별 공항난민의 처우 일반

아무리 중범죄자를 구금하는 시설이더라도,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구금시설의 최저기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고, 유엔에서 1955년 결의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고전적인 원칙이다. 공항의 송환대기실, 난민심사대기실, 환승구역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모두 사실상의 구금시설이며, 국가는 이 곳에서 수용자에 대한 최저기준 이상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공항의 현실은 위 최저기준에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한 음식, 의류, 침구, 위생, 의료 등의 최저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 1. 송환대기실

#### 가. 식사

송환대기실에서 가장 많은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제공되는 음식에 관한 것이다.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의 관리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 항공사들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제공되는 음식 역시 전적으로 개별 항공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특히 음식의 경우, 항공사 운영협의회에서 일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대기자를 운송한 항공사에서 각각 제공하므로, 이용한 항공사에 따라 다른 식사를 받게 된다. 특히 식사의 종류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식사의 횟수도 다르며, 무엇보다 아예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항공사들도 존재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74) 이에 대해서 법원은 환승객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출입국항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환승객의 난민신청권을 인정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구합 51536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 1) 식사 선택 및 출입 불가

송환대기실을 구급시설로 운영할 경우 위헌, 위법하다는 법원의 반복된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송환 대기실을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공식 입장과 달리, 실무자들은 실제로 대기자가 송환대기실에서 자유로이 출입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

“사람이 많을 때에는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쪽에 와 있을 때에는 결국 저희가 인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이 많을 때 마음대로 나가게 하면 관리가 불가능해요. 현재는 사람이 적어서 마음대로 출입하고 있지만, 지금이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인 상태입니다. 밥을 사 먹겠다고 하면 직원이 대기자를 데리고 함께 갑니다. 이렇게 한 명씩 대동하고 식사를 사 오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많을 때는 어렵습니다. 평소에 마음대로 출입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직원

---

송환대기실에서 식사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대부분은 이 곳이 용역업체에 의해 폐쇄된 시설로 관리된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항공사에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용역업체가 선택한 식단만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므로 승객간 차별, 인간으로서의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종교, 건강 등의 문제로 식단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로이 식단을 선택하기 어렵다. 관리업체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도 없으며, 운영 방식에 관한 결정권도 없이 대기실 인원 관리만을 위탁받은 상황에서 최대한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 2) 차별적 음식 제공

송환대기실에서의 식사는 항공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승객이 특별히 자비를 들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수용할지 여부도 관리업체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관리업체는 항공사가 결정해 준 제공 기준 및 단가에 맞추어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항공사마다 다르다. 식사 제공에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항공사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아예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항공사들도 있다. 따라서 일부 승객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

“음식을 나눠줄 때, 누군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챙겼다면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가방을 뒤지고. ‘너흰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식사 안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니까 음식 다 주고 나서 숫자가 안 맞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모두에게 나눠주고도 남은 음식이 있었는데 도요.”

- 난민신청자 C

---

“항공사마다 식사 제공 기준이 다릅니다. 하루 1식만 제공하거나 심지어 ‘무식’인 항공사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항공은 아직도 ‘무식’입니다. 즉,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온 승객은 송환대기실에 있는 내내 식사 제공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왜 옆사람은 밥 주는데 나는 안주냐’하고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외항사는 특히 공항에 상근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디 연락할 곳도 없습니다. 며칠씩 있으면 배고픈데 우리 입장에서는 식사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앞에서 총알받이만 하게 됩니다.”

-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직원

### 3)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음식 제공

송환대기실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개월까지도 체류하게 되는 공간이다. 현재 1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 기간을 타의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승객이 많다. 송환대기실 구급의 경우 그 기간의 상한에 관한 기준이 없고, 현재는 10일 이상 장기체류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통 항공사에서 송환대기실 바깥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하여 관리업체에서 이들을 환승구역으로 안내한다고 한다.

적지 않은 난민신청자들이 송환대기실에서 장기 체류 상황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음식이 제공되지 않거나, 극도로 부실한 식사만 제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난민신청자가 이 공간에서 체류하게 되는 경우 ‘행정구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 국가는 이 공간에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송환대기실에는 식사 시간이나 급식 업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사운영협의회에서 정한 기준 단가에 맞추어 송환대기실 관리업체가 식사를 마련하여 재량껏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식사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항공사운영협의회에서 지정한 단가인데, 최소한의 질을 담보할 수준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 김포공항 등의 송환대기실에서는 항공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할 여지가 크다.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식사는 프리존이 위탁을 받아 푸레쥬르 빵이랑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0년 전 식사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겨우 살 정도의 돈입니다.”

“제주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도 프리존이 용역 업체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계약 방식이 다릅니다. 송환대기실에서 사용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항공사가 전부 처리를 하고 프리존은 말 그대로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달리] 한국공항공사는 직접 항공사에게 승객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는 식사도 항공사에서 재량껏 마련해서 직접 다 제공 합니다. 여기처럼 한 끼에 얼마 정해 놓고 너희끼리 알아서 제공해라, 하는게 아니에요.”

-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직원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은 위와 같은 비현실적인 단가의 이유로, 빵과 음료수만 제공되고 있다. 대체로 새우 샌드위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서 머물렀던 경험이 있는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식사가 매우 부실하고, 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한다.

---

“거기 있는 동안 내내 새우버거만 먹었어요”

- 난민신청자 A

“식사 양이 정말 적었습니다. 작은 샌드위치로 하루에 1~2끼를 줍니다.”

- 난민신청자 B

“세 끼 내내 햄버거와 콜라만 먹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러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다른 음식을 좀 달라고 말했지만 먹기 싫으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음식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도 말을 걸면 돌아가라는 말만 했어요.”

- 난민신청자 C

“에티오피아 항공은 밥을 전혀 주지 않아요. 저희가 돈을 주면 직원들이 사다 주는데, 공항 식사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1~2끼도 겨우 먹었고, 저는 한 달만에 체중이 10kg 줄었어요.”

- 난민신청자 F

---

특히 이러한 환경은 아동에게도 아무런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다. 사실상 공항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까지 공항에서 정해주는 대로 ‘1일 샌드위치 1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실한 식사는 아동에게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건강하고 신선한 식사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야채나 과일을 섭취할 수 없고, 그러니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발견됩니다. 신체 발달에도 문제가 큼니다.”

- 의사 김은지

“공항에 있는 아동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므로 위장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 의사 최규진

---

#### 4) 식사를 출국 강요 수단으로 활용

송환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모든 것을 항공사와 용역업체에 맡겨 놓는 한, 모든 환경은 이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장기간 머물 수밖에 없는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이 곳에서의 식사가 생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등이 열악한 식사를 외국인 송환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난민을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sup>75)</sup> 이처럼 식사를 출국 강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위배된다.

---

“그런데 항공사는 송환 대기실 승객들을 빨리 돌려보내고 싶으니까 편의 제공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굴 돌려보내고 싶은데 안 간다고 하면 항공사에서 ‘저 사람 식사 끊어’ 이런 지시도 합니다.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야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직원

“거기 직원들은 뭐든 말을 걸면 ‘고우 흠’으로 대답합니다.”

“‘굿모닝’ 하면 ‘고우 흠’, “‘이 사람이 아파요’ 하면 ‘고우 흠’, “‘배가 고파요’ 하면 ‘고우 흠’”

- 난민신청자 C

---

### 나. 취침공간과 침구

송환대기실은 항공사들이 관리하는 공간이므로, 그곳에서 공항난민이 수면을 취하기 위한 설비는 모두 항공사운영협의회외의 외주를 받은 민간 관리업체가 관리한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침구를 위해 항공사로부터 따로 지급받는 예산이 없으므로 현 상태에서 수면환경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 1) 부족한 공간과 평상

송환대기실에는 숙박을 위한 침대가 없으며, 그 대신 평상만이 비치되어 있다. 그나마도 송환대기실에서 머무는 사람의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따라서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의자에서 자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바닥에서 자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송환대기실이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체류를 전제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실제로도 송환지시를 받은 외국인의 대부분은 24시간 이내에 송환대기실을 떠난다. 그러나 공항난민의 경우, 송환대기실 구금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적합한 수면환경이 문제되고 있다.

한편,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따르면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개별 침대가 제공되어야 한다(제21조). 일반적으로, 침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76)</sup>

---

75) 난민협약 제33조

---

“저는 송환대기실에서 이틀 동안 눕지 못했습니다. 베개나 이불도 받지 못했고, 평상에서 눕지도 못해서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B

“침상은 울퉁불퉁한 나무로 되어 있어서 허리가 아팠고, 바닥은 더러워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서 자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자는 눕는 게 불가능했고, 앉아서 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기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평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새로 온 사람들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C

“송환대기실에 사람이 수백 명씩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침상은커녕 바닥도 부족한데 이불도 없어서 맨바닥에 누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게 됩니다.”

-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직원

---

## 2) 부족한 침구류

송환대기실에서는 침구류도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송환대기실에서는 공용으로 쓰는 모포가 제공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깔고 덮는 데에 모두 이용해야 한다. 모포는 대기자의 숫자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그 위생상태도 좋지 않다고 한다. 베개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편,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따르면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충분한 전용 침구를 제공해야 하고,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여야 하며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제21조).

---

“밤 10시가 되면 박스에 담긴 이불을 쏟아 붓습니다. 빨리 차지하는 사람이 다 덮고 자는 방식입니다. 아침 7~8시에 다시 걷어갑니다.”

“베개는 없었고, 깔고 자는 이불이 있지만 부족했습니다. 한 번은 이불에서 벌레가 나왔고, 이후로 깔고 자는 이불을 안 줬습니다.”

- 난민신청자 B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포는 30여 장 밖에 없습니다. 다 10년째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기자는 수백 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모포나 세면도구 이런 것은 원래 항공사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항공사는 빨리 내보내고 싶으니까 이런 편의제공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직원

---

76) The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2004), 152.

모포는 저녁에 지급하고 아침에 다시 걷어간다. 대체로 아침 7~8시 사이에 모포를 거둬 가는데, 자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빼앗아 갔다고 한다. 다시 밤에 이불을 줄 때까지는 이불을 쓸 수 없으므로, 결국은 송환대기실 관리업체에서 취침시간까지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다. 채광, 조도, 환기, 냉난방

470제곱미터 규모의 송환대기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며,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특정 수용자에 있어서 공모의 위험 및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용자로부터 자연광선과 신선한 공기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듯이,<sup>77)</sup> 이는 국제인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조치이다.

특히, 송환대기실에서는 감시를 이유로 24시간 불을 켜두기 때문에 안에서는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소등 없는 24시간 감시는 항공사에서 고용한 관리 업체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실 내 조도를 취침 시에도 일률적으로 일몰 후 생활 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sup>78)</sup> 법무부 훈령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르면 거실 내 조도를 취침 후 60럭스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있다. 이처럼 송환대기실 내 야간점등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감시 방식이며, 감옥에서 밝은 불을 계속해서 켜두는 일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고문’의 한 방식이다. 이 고문은 일종의 심리적인 괴로움을 주는 것인데, 수형자가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들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송환대기실에서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음을 토로하는 공항난민들이 있었다. 직원들이 밥을 주면 그제야 시간이 지났음을 알아챘다는 것이다. 공항난민들은 시간 감각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창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받는 불안함을 겪어야 했다. 여러 날을 이 곳에서 지내야 했던 공항난민들에게,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송환대기실에서 24시간 감시받으며 지냈던 기간은 상당히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한편, 송환대기실의 공기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이며, 냉난방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건조하다.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설 등은 없다. 구금시설에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반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구역에서는 모든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공기질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문제되고 있다.

송환대기실에는 냉난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달리 언급한 인터뷰 대상자는 없었다.

77)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PT), 「11th General Report on the CPT's activities」, CPT/Inf (2016) 16, para. 30.

7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교도소 수용자도 편안하게 잠잘 권리가 있다-안양교도소장 등에 수용자 취침시 조도 낮추도록 권고”, 인권침해조사2과 (2004. 1. 26.).

## 라. 의복

송환대기실에서는 따로 의류가 지급되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옷을 입어야 한다. 송환대기실 관리업체 관계자 따르면, 현재 의복 지급을 위해 항공사로부터 따로 지급받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

구금이 장기화되는 공항난민들에게는 빨래를 할 수 있는 설비가 필수적인데, 송환대기실에는 세탁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빨래를 할 만한 장소도 변변치 않고, 빨래건조대도 없다. 이 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대체로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빨래를 한 다음, 송환대기실 벽 틈새를 이용하여 빨래를 낸다. 송환대기실 벽은 보통 널어 놓은 빨래로 뒤덮여 있다고 한다.

---

“옷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빌려 입은 적이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 B

“원래 손 씻는 비누가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직원이 우리가 옷을 세탁하는 데에 그 비누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비누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 물로만 씻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C

---

## 마. 위생시설

### 1) 열악한 샤워실, 화장실 환경

송환대기실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하나씩 있다. 송환대기실의 수용인원이 100여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다. 그나마도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샴푸나 비누와 같은 소모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것을 둘러싼 갈등도 많다. 관리업체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유지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항공사에서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

“화장실에 비누가 딱 한 개 있었습니다. 송환대기실 사람들이 전부 이거 하나를 돌려줍니다.”

- 난민신청자 B

“샴푸와 비누를 요구해도 [관리업체] 직원들이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몰래 작은 비누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송환대기실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잠을 잘 수 없는 것, 그리고 샤워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C

---

이뿐만 아니라 샤워실 사용 자체를 제한하기도 한다. 열악한 샤워실이지만 그마저도 쓰지 못하게 하다가 밤 10시 이후가 되어야 샤워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사람에 비해 샤워실이 부족한데,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면 샤워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실제로 이 때문에 송환대기실에서는 샤워를 거의 할 수 없었다는 인터뷰 대상자도 있었다.

## 2) 위험한 사용환경

송환대기실 내부의 화장실과 샤워실은 그 구조나 인구밀집도로 보아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문제된다. 송환대기실은 남녀 방이 나누어져 있으나 샤워실 화장실 등에서는 동선이 겹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 구역은 관리업체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으나, 업체 직원들에게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송환대기실 내 외국인을 직접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른 공권력이 미치기도 힘들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밀하게 몰려있는 공간은 그 자체로 위험한데,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

“남녀 방은 따로 있으나 샤워실, 화장실에서 동선이 겹칩니다. 여기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시도 등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법 집행도 안 되는 곳이고 무법천지입니다.”

-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직원

---

## 2. 난민심사대기실

### 가. 식사

#### 1) 부실한 식사

난민심사대기실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 하루 3끼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난민심사대기실은 난민신청자가 7일 가까이 체류하게 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급식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영양 등을 고려하여 식단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송환대기실과 유사하게 직원이 식사 때마다 환승구역에 있는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서 전달하는 형태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 식사는 사실상 햄버거로 통일되어 있다. 송환대기실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는 크게 다르지 않다.

---

“식사는 하루 세 끼 제공됩니다. 아침에는 우유, 주스 빵 등 여러가지였고, 점심과 저녁은 항상 치킨버거였습니다.”

- 난민신청자 A

---

---

“하루 세 번, 저는 무슬림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서 그런지 점심 저녁은 새우나 생선을 줬습니다.”

- 난민신청자 B

“아침은 7~8시에 우유랑 케이크를 줬고, 점심과 저녁은 샌드위치나 맥도날드 버거랑 콜라를 주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C

“하루 3끼가 나왔습니다. 아침에는 샌드위치와 우유 한 팩 점심은 대부분 햄버거와 콜라, 두 번 정도 한식을 먹었습니다. 저녁은 보통 주스랑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과일 들어간 뭔지 모르겠는 작은 것들 준 적도 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한식을 줬을 때는 처음 먹어보는 것이라 힘들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F

---

햄버거 위주의 부실한 식사이지만, 이 곳에서는 난민신청자들이 항의할 경우 메뉴를 변경해 주거나 신청에 따라 빈도를 조절하는 등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 통역이 더 수월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행정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직원들이 상황에 맞게 대처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햄버거가 너무 지겨워서 차라리 아침 메뉴를 점심에도 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침식사로 나오던 것을 두 번 먹었어요.”

- 난민신청자 A

“라면을 한 번 줬는데 그 안에 돼지고기 성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거기 이집트인이 7명 있었는데 제가 대표로 저희가 그건 못 먹는다고 했더니 다음부터 라면은 주지 않았어요. 고기 못 먹는다고 하면 새우버거를 주로 줬어요.”

- 난민신청자 D

---

식사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메뉴는 주로 빵이나 햄버거, 라면 등으로, 일반적으로 수형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법과 그 하위 법령이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회부 여부의 심사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하고(난민법 제6조 제4항), 이때 “제공되는 의식주는 개인의 안전과 위생,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난민법 시행령 제4조 제2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식사제공은 행정당국이 난민법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2) 식사에 관한 의사소통

난민심사대기실은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곳에서 공향난민들이 마주치는 ‘직원’이라 함은 대체로 출입국 공무원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곳에서는 상주하는 직원들이 영어를 할 수 있고, 난민심사대기실은 난민심사 면접실과 바로 붙어 있어 면접실의 통역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서, 식사에 관한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였다.

---

“대기실에 아랍어 통역인이 상주하는 건 아닌데, 면접실에서 아랍어 면접이 있으면 거기에 통역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통역을 해줬어요. 제가 있을 때에는 아랍어 면접이 매일 있었던 때라, 난민심사대기실에 있을 때에는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 난민신청자 A

“여기서는 음식 가져다 주는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었어요.”

- 난민신청자 D

## 나. 취침공간 및 침구

인천공항 난민심사대기실의 경우, 남녀의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민심사대기실에는 2층 침대와 매트리스가 있고, 베개와 이불이 항시 비치되어 있다. 하지만 난민심사대기실의 경우에도 침구가 충분하지 않다. 침대는 6개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난민심사대기실에 수용되는 공향난민의 수가 많을 때에는 침대의 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침대가 부족해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잔 사례도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이곳의 침구류 역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

---

“제가 갔을 때 베개는 있었는데 이불이 부족했습니다. 사람에 비해 이불이 부족해서 저는 옷을 덮고 잤습니다. 매트리스도 부족했습니다.”

“침대 쪽 이불은 깨끗한데, 다른 쪽 이불은 더러웠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침대는 6개뿐이어서 늦게 온 사람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잤습니다.”

- 난민신청자 A

“여기는 까는 이불, 덮는 이불, 베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걷어가지도 않았습디다.”

- 난민신청자 D

---



#### 다. 채광, 조도, 환기, 냉난방

난민심사대기실도 창문이 없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곳은 송환대기실과 달리 소등과 점등 시간이 있다. 밤 10시에 불을 끄고 아침 6시에 불을 켜다. 불 이외에 따로 기상이나 취침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소등할 때에도 취침 장소의 바로 앞 복도와 화장실 불을 켜 두어서 불빛이 들어왔다고 한다.

이 구역 역시 바깥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환기가 되지 않으며,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설도 없다. 다만 냉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라. 의복

난민심사대기실에도 세탁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난민심사대기실에 구금된 공항난민들은 송환대기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다. 건조대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침대 난간 등에 옷을 걸어 말리고 있다고 한다.

#### 마. 위생시설

난민심사대기실에는 남녀 화장실과 샤워실 한 칸이 있다. 난민심사대기실에 수용되는 공항난민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제때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사용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인 공항난민이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야 했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었다. 난민심사대기실에서는 샴푸, 칫솔, 치약, 비누 등의 세면용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

“변기도 하나, 샤워기도 하나여서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A

“다행히 칫솔, 치약은 제 것이 있었는데, 샴푸도 없고 옷도 없어서 다른 사람 것을 빌려 썼습니다. 직원에게 요청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B

---

### 3. 환송구역

#### 가. 식사

환송구역에서 머무는 난민신청자들의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송환대기실에서의 장기 체류는 항공사, 관리업체, 법무부 모두에 부담스러운 일이므로 공항 체류가 길어질수록 환송구역에서 머물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송환대기실에 1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항공사 또는 법무부에서 관리업

체에 해당 외국인을 ‘환승구역으로 빼라’는 연락을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송환대기실을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운영하고, 난민심사대기실을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관리하는 것과 달리, 환승구역의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공항공사, 항공사 모두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공항난민의 처우 문제를 본인들의 소관업무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환승구역에 머무르게 되는 공항난민들은 그곳에서의 수용이 시작되던 상황을 대체로 ‘버리고 가버렸다’와 같은 말로 기억한다. 이처럼 환승구역에 방치되는 공항난민들이 제일 먼저 마주하는 문제가 식사이다.

### 1)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자비로 음식을 사야 하는 환경과 높은 물가

부실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음식이 제공되는 송환대기실이나 난민심사대기실과 달리, 환승구역에서는 각자가 자비로 생존해야 한다. 영화 ‘터미널’의 주인공은 이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한국의 환승구역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은 수입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승구역에서의 생존은 본국에서 탈출하면서 가져온 재산에 달려 있다.

그런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서 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는 경우 환승구역 구금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데다가, 환승구역의 물가는 대도시에 비해서도 비싼 편이다. 결국, 본국에서 탈출하면서 가져온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끼니를 거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6인 가족이 식사를 해결하려니 두 끼만 먹어도 하루에 10만원 이상은 필요했습니다.”

“공항에서 아이들이 너무 추워하니 따뜻한 우유와 빵이라도 사서 해결했는데, 이것만 해도 보통 4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매일 햄버거라도 먹기는 어렵고, 하루에 한 번만 먹거나 아이들만 먹고 저희는 굶기도 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F

“물까지 포함해서 한 끼에 만 원은 든다고 봐야 됩니다. 매 끼니 식사를 할 수가 없죠. 돈이 떨어진 이후에는 그냥 계속 굶었습니다. 지나가는 승객들이 밥을 사 주기도 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D

---

더구나 입국 혹은 출국 이후의 삶까지 생각해야 하는 난민신청자들이 전 재산을 공항에서 식비로 사용해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많은 공항난민들이 장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제한된 돈을 쓰기보다는 끼니를 거르며 최대한 식비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충분한 영양섭취는 공항난민의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 2) 식사에 관한 정보와 안내 부족

환승구역에 구금되는 공향난민들은 환승구역에 처음 머무르게 되었을 때의 막막함이 힘들었다고 토로하였다. 환승구역에 방치되면서, 어디서 지내야 할지, 밥은 어디서 먹어야 할지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공향난민은 공항에 다른 식당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환승구역에 방치된 초기에는 상당기간 햄버거만 먹고 지냈다고 한다.

---

“환승구역에 나오니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돼지고기가 없어 보이는 것을 눈치껏 아무 거나 사 먹었습니다. 실수로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사서 그냥 그대로 전부 버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A

“어디서 뭘 사먹을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아무 사람에게나 물어 식사를 찾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D

“처음에는 공항에 식당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햄버거만 사 먹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공항에 다른 식당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식당에 처음 갔습니다.”

- 난민신청자 F

---

환승구역 생활에 대한 안내의 부재는 공향난민의 여권을 압수하는 위법한 관행<sup>79)</sup>과 결합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래 V.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입국을 불허 당한 외국인도 송환의 용이함 등을 위해서 여권을 압수당하는데, 환승구역 내의 여러 점포는 물품을 구매할 때 여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면세물품이 아닌 이상 물품 구매 시에 여권의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를 오해한 점포에서는 여권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은 음식 등의 구매 시에도 여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안내받지 못한 공향난민은 부당하게 음식 등의 구매를 거절당하거나, 음식 등의 구매에 반드시 여권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요구하지 않는 점포에서도 음식 등을 구매하는 것을 사전에 포기하게 된다. 환승구역에 머물게 된 공향난민에게 무엇을 여권 없이 구매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식사할 수 있는지만 안내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 나. 취침환경 및 침구

환승구역 공향난민에게는 잘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지 않으며, 환승구역 공향난민은 스스로 잘 곳을 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환승구역 공향난민은 환승구역에 있는 의자나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사실상

---

79) 여권압수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 V.항에서 후술한다.

의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항난민들은 불편함, 통증, 위생문제 등을 겪고 있다.

환승구역에는 ‘환승호텔’이 있지만, 환승구역 공항난민이 환승호텔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승호텔에서는 이용객에게 여권 및 환승 티켓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설령 투숙을 허락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상당해서 본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식사 등을 해결하여야 하는 공항난민으로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한편, 환승구역을 경험한 공항난민은 공통적으로 추위를 호소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환승구역은 계절을 불문하고 실내온도가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승구역 공항난민은 침구마저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짐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환승구역에 방치되어 이불은 물론이고, 옷도 덮고 자지 못하였던 사례도 확인되었다.

---

“한 사람이 와서 저와 다른 불인정결정자를 데리고 이동했습니다. 면세점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12일간 거기에 있었는데 제 가방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 짐도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이불도 없이 12일을 지냈습니다.”

“이 곳에 있을 때 열이 났고, 이불 없이 바깥에서 자서 너무 춥고 힘들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공항이 추웠는데 옷도 다 가방에 있고 누구에게 연락해서 가방을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출입국 직원에게 이야기해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침마다 와서 이제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때마다 그 사람에게 출국하지 않을 것이고 가방 좀 가져다 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가방은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출입국 공무원 같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A

“너무 추웠습니다. 외투들 꺼내서 덮고 잤습니다. 여기서 불편하게 자면서 매일 허리가 아팠는데, 입국한 후에도 허리가 아파서 이후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D

---

## 다.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 1) 추위

환승구역에서 장기간 지냈던 난민신청자들에게 이 곳은 ‘추위’의 이미지로 각인된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을 지냈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공항이 추웠다고 이야기한다. 계절을 불문하고 환승구역은 상당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에어컨 때문에 공항이 추웠습니다. 옷도 다 가방에 있고 누구에게 연락해서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 난민신청자 A

---

---

“너무 추웠습니다. 외투를 꺼내 덮고 잤습니다.”

- 난민신청자 D

“공항에서 아이들이 계속 추워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우유와 빵을 사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F

---

침구도 없이 잠들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추위는 훨씬 더 혹독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이 구역에서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덮었다’는 등 추위와 싸우느라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 2) 조도와 사생활 보호

환승구역에는 24시간 내내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다. 이로 인하여 다수 공항난민은 수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이 자체로 큰 스트레스이지만, 다행히 이 곳에는 창이 있어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송환대기실에서는 관리업체 직원들에 의해 감시가 이루어졌다면, 이 지역에서는 공항 승객들의 시선이 큰 부담이 된다. 따로 구별된 생활공간 없이 24시간 외부인들에게 노출된 상태로 생활해야 한다는 점, 본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하나의 ‘구경거리’처럼 취급된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

“이 곳에서 잠 자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학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항에 와서 저희를 동물원 동물처럼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고, 아이들의 상황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이후에 OO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 난민신청자 F

“이 구역에서는 사생활 보호, 그리고 취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공항은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인데, 아이들이 24시간 불빛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 아동인권옹호활동가 정병수

---

특히 아동을 동반한 경우 사생활 및 안전에 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동을 동반한 난민신청자 가족이 공항 내에 텐트 혹은 가림막 설치를 시도했던 예가 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설치를 제지하였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사람들에게 침구나 식사에 관한 최소한의 도움도 주지 않던 책임자들이,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난민신청자들의 노력에는 발빠르

게 대처한 것이다.

#### 라. 의복

인천공항 환승구역에는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탁시설이 없다. 환승호텔에는 세탁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술하였듯이 환승구역 공항난민이 환승호텔에 투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승구역의 난민신청자들은 다른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장실에서 손빨래를 하고, 이것을 환승구역에서 말린다. 여객시설과 분리된 공간이 없으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빨래를 어떻게든 널어야 하는데, 이것을 수치스럽게 느낀 난민신청자들도 있었다. 빨래를 널어놓는 것 때문에 지나가는 승객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세탁뿐만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공항난민도 있었다. 이는 사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구역에서의 ‘노숙’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보여준다.

---

“엄마로서는 빨래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빨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화장실에서 했는데, 말리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공항 청소부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밖에서 빨래를 해서 가져다준 적도 있습니다. 이 분이 저희를 돕다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았어요.”

- 난민신청자 F

“옷을 갈아입을 곳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 난민신청자 D

#### 마. 위생시설

환승구역에는 승객들을 위한 유료 샤워시설이 있다. 그러나 승객들의 상당수도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환승구역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그곳에 방치되어 버린 공항난민들은 대부분 샤워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환승구역 구금이 상당히 장기화된 이후에야 샤워실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샤워실 사용에 여권 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공항난민 중에는 여권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샤워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참고로, 원래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의 샤워실에서는 원래 1회 사용료로 3천원을 받고 있다.

---

“샤워실은 없고, 공중화장실을 썼습니다. 화장실에는 비누만 있었고, 다른 것들은 전부 제가 사서 사용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A

---

“처음 이 지역에 데려다 준 직원에게 옷을 갈아입거나 씻을 곳이 없냐고 물어보자, 항공사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직원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꾸 출국하라는 얘기를 하는 출입국 직원만 있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D

공항에 샤워실이 있는지 모르고 화장실만 썼습니다. 나중에 3천원 내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 번 정도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더 많이 가지는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화장실에서 밤 12시 정도에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 난민신청자 F

그런데 코로나 19 확산의 여파로 인해 공항 이용객의 숫자가 줄어들자, 올해 초부터는 환승구역의 샤워실이 폐쇄되었다고 한다. 다만,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에도, 샤워실 관리자의 배려로 1주일에 한 번은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지금 샤워실은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콜롬비아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샤워실을 열어서 저도 썼는데, 지금은 다시 닫았습니다. 샤워실을 쓸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 난민신청자 E

한편, 환승구역 공항난민에게는 샴푸, 칫솔, 치약, 비누 등의 세면용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환승구역 공항난민은 직접 세면용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환승구역에 방치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짐에 대한 보안검색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액체로 된 물품이라는 이유로 샴푸 등의 세면용품을 압수당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저를 환승구역으로 데려다 놓은 사람에게 이불과 샤워할 곳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검색대에서 샴푸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면서 제 샴푸를 버렸습니다. 비행기 타러 가는 것이 아닌데도 액체는 못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D

#### 4. 구금 시설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 외의 요건

이상에서는 공항난민이 처해 있는 생활환경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생존과 직결된 영역에 대해서 ‘의식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국제인권규범이 구금된 자에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처우’는 의식주의 보장에 그치지 않는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은 의식주의 보장 외에도, 운동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종교활동을 할 권리 등의 보장을

구금된 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항난민에 대한 처우가 워낙 열악하고 가장 기초적인 처우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동안은 의식주 등 가장 기초적인 처우에 관한 조사 및 문제제기가 주로 이루어졌고, 그 외의 피구금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조사 및 문제제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그간 주되게 논의되지 못하였던 공항난민의 피구금자로서의 권리 중에서 ▲ 실외운동을 할 권리,<sup>80)</sup> ▲ 교육받을 권리,<sup>81)</sup> ▲ 종교활동을 할 권리,<sup>82)</sup> ▲ 작업기회에 관한 권리,<sup>83)</sup> ▲ 외부 물품 수수에 관한 권리,<sup>84)</sup> ▲ 변호인 이외의 자와 접견할 권리,<sup>85)</sup> ▲ 청원에 관한 권리<sup>86)</sup>의 보장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현황에 관한 모니터링은 차후의 과제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권리들도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구금상황에 있는 공항난민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강조해둔다.

항목	송환대기실	난민심사대기실	환송구역
실외운동의 보장 여부	X (실외로의 출입 자체가 금지됨)	X (실외로의 출입 자체가 금지됨)	X (실외로의 출입 자체가 금지됨)
교육받을 기회의 보장 여부	X (교육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X (교육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X (교육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종교활동할 기회의 보장 여부	X (개인적 기도만 가능)	X (개인적 기도만 가능)	△ (기도실 있으나 개인적 기도만 가능, 기타 종교행사 참석 등 종교활동 불가)
작업할 기회의 보장 여부	X (작업기회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X (작업기회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X (작업기회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외부로부터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	X (물품 반입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X (물품 반입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 (물품 반입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단, 공항 이용객 등을 통한 물품 수수는 가능함.)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허용 여부	X (일반 접견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X (일반 접견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 (일반 접견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단, 공항 이용객 등과의 만남은 가능함.)
처우에 관한 청원을 제기할 권리의 보장여부	X (청원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X (청원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X (청원에 관한 제도가 전무함)

80)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3조

8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04조

82)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65조, 제66조

83)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96조 내지 제103조, 제116조, 제121조

84)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67조

85)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8조

86)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6조, 제56조



## 5. 소결

### 가. 송환대기실은 행정당국이 직접 운영하여야 함

송환대기실 체류의 본질이 ‘구금’이라는 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수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실질적으로도 송환대기실의 업무는 대부분 외국인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성격이 매우 강하고, 상황에 따라 물리력 등 강한 행정력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형식적으로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운영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하청업체에서 실무를 모두 담당하게 하는 것은 출입국 행정의 주권적 중요성을 스스로 강조해온 행정당국의 그간 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취침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난민신청자들이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운영 구조에 있다. 행정적 목적을 위해서 특정 외국인의 출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송환대기실에서의 의식주를 포함한 생존 환경 전반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나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송환대기실을 운용하는 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출입국 시설로서 운영하여야 이 시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

### 나. 난민신청자들을 송환대기실 및 환승구역으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해야 함

송환대기실 및 환승구역의 문제점은 다수인의 장기체류를 전제하지 않은 장소에 난민신청자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방치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등이 가능하고, 그 절차가 길게는 수 년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을 송환대기실 및 환승구역으로 보내지 않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난민법 제6조 제2항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난민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7일 이하로 법에서 정해둔 것은, 공항이 장기간 체류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단기간에 끝내도록 강제하기 위함이다. 이 조항을 물리적으로 난민심사 대기실에서 보내는 시간의 상한으로만 보아 공항 다른 지역에서는 무기한 대기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일은 난민협약은 물론 이 법 자체의 취지에도 반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불회부에 관한 이의 등 난민신청자에게 보장된 일련의 절차는 장기간에 걸친 쟁송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 도중에 당사자가 출국하는 것은 행정당국으로서도, 당사자로서도 이 제도 자체의 신뢰도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장기 구금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단 난민심사에 관한 쟁송이 개시된 이후에는 특정 시설을 지정하여 거주하도록 하거나, 거주지 제한을 한다거나, 신원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등 외국인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입국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공항에서 난민심사를 거쳤다면, 그에 대한 이의 등 이후의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을 환승구역 등에 방치하는 일은 그 위험성과 인권침해에 비견할 만한 공익적인 가치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단순 입국거부자로 취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자를 공항에서 수용하여야 한다면 별도의 절차와 시설이 필요하다. 출입국항에서의 '회부' 심사를 난민심사의 실질적인 1심처럼 운용하면서 상당수의 난민신청자들을 심사조차 없이 공항에 방치한다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난민제도의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심사받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외국인의,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다.

#### 다. 공항 외국인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함

난민신청자가 송환대기실 및 환승구역에서 머무는 상황을 단기간에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수용 환경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앞서 지적한 1)식사 2)취침 공간 3)조명 4)의복 5)위생시설의 문제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당장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거시적인 구조를 변경하기 이전이라도 이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

특히 난민심사대기실은 행정당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로서의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수용시설이라면 공항 매장에서 사오는 햄버거가 아니라 식사제공업체 등을 통하여 공식적인 식사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원에 걸맞는 취침공간 및 위생공간을 확보하고, 의류지급이나 세탁시설 제공 등 최소한의 의식주가 가능해야 함은 물론이다.

송환대기실은 행정당국이 운영권을 모두 넘겨받기 이전이라도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환승구역의 경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더 이상 환승구역에서의 체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이러한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환경의 개선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이라도 법무부와 공항공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있다. 예컨대, 식사제공이나 조명의 문제는 절차와 원칙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 라. 난민신청자를 환승구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출국을 거부하는 난민신청자를 환승구역으로 가도록 강제하는 것은 충분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 이처럼 난민신청자를 환승구역에 내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설사 그러한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출국절차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난민신청자를 환승구역으로 보내는 일은 단순 출국절차가 아니라 일종의 수용시설 이송·수용처럼 취급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난민신청자를 불가피하게 환승구역으로 보내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아무런 설명 없이 이들을 일반적인 출국절차를 통해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공항에서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환승구역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그곳의 상황과 환경을 설명해 주어야 필요성은 더욱 크다. 어디서 무엇을 살 수 있으며 가격이 얼마인지, 어디에서 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수용절차에 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와 택할 수 있는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통번역을 통해서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난민신청자를 환승구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세면도구 등 개인물품을 뺏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적인 짐은 자신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III. 의료, 안전

#### 1. 공향난민의 건강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피해 본국을 떠나 도망쳐온 난민은 박해의 과정에서 고문, 폭행, 감금을 당한 경우도 많으며, 도피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트라우마를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고립감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미 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큰 난민들이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에 따라 회부 심사를 거치고 공항에 장기간 거주할 경우 이들의 건강권은 더욱 심하게 침해된다.

---

난민들은 다른 눈에 띄는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정신과적인 트라우마를 이미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 입국 후 2차, 3차로 더 심각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언제 트리거가 발생할지 몰라요.

- 최규진(인권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건강권이란 단순히 아플 때,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sup>87)</sup>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를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sup>88)</sup> 의미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공항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공항에서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위생을 신경쓰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

87)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2조

88)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에어컨 때문에 공향이 너무 추웠어요. 옷도 다 가방에 있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가방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방도 받고 싶고 그 안에 있는 옷을 입고 이불도 덮고 싶었는데 출입국 직원에게 이야기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매일 이불 없이 바깥에서 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열도 났는데 제 손가방에 있는 해열제만 먹었어요. (해열제 외에는) 약도 없었고 달라고 해도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니다.

- 난민신청자 A

송환대기실에 있을 때, 반대같은 작은 벌레가 발견된 적이 있어서 출입국 직원들이 방역을 했어요. 그 날 높은 계급으로 보이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너희가 더러우니까 벌레가 나오는 게 아니냐.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 씨발!” 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려줬어요.

- 난민신청자 C

## 2.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공항은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 공기는 춥고 건조하며, 밤에는 밝은 빛과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유지할 수 없다. 공항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불균형한 영양섭취가 불가피하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다면 건강하던 사람도 건강이 악화되기 쉽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책임주체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응급 상황에서 출입국과 항공사는 책임을 방기해왔다.

(환승구역에 있을 때) 몸이 아파 출입국 직원에게 이야기했더니 항공사에 문의하라고 했어요. 출입국 직원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게 얼른 출국이나 하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D

현재 공항에서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의료진의 출장 진료 가능성이 가능하며, 진단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긴급상륙허가를 받아 공항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또는 외부의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긴급상륙허가란 배 또는 비행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잠시 입국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항난민은 이 제도를 이용해 잠시 입국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긴급상륙허가의 신청은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항공사의 협조 없이는 아무리 아파도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긴급상륙한 사람의 치료비 등 상륙 중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항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5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 본다.

③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사람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와 그 밖에 상륙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설문 응답에서,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난민신청자들은 항공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꺼렸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야 치료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항난민은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심한 복통을 느껴 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절해있는 것을 보고 보안요원이 출입국 직원을 불렀던 것 같아요. 출입국 직원이 (난민이 이용한 항공사) 직원을 불러주었습니다. 모국어는 하지 못하고 영어를 해야 했습니다. 보안요원이 사람을 불러서 저를 공항 지하에 있는 병원에 데려갔고 소식을 들은 변호사도 왔습니다. 진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진료비와 약값은 소식을 듣고 병원까지 찾아온 변호사가 지불해 줍니다.

- 난민신청자 E

2019년도 보고서의 활동후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의 환승구역 공항난민의 긴급상륙허가 절차를 조력한 변호사의 사례후기에 따르면 긴급상륙허가 절차 진행에 있어 항공사의 협조 의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공항난민은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 및 장소 조율을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긴급상륙허가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는 데에는 항공사의 사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 공항난민이 긴급상륙허가를 받아 진료를 받고 공항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항공사의 직원이 동행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법령상으로는 이러한 조건이 없지만, 통상 행정당국은 이러한 ‘동행’을 조건으로만 긴급상륙을 허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항공사는 짧으면 반나절, 길면 하루 종일 걸리는 긴급상륙 절차에 동행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날에만, 가급적 멀지 않은 장소로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해준다. 외근을 나갈 직원이 없으면 공항난민의 외부 진료는 불가능하다. … 장소는 정해졌고, 남은 것은 일정 조정이었다. 그런데 B항공사는 변호사의 동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동행이 행정당국의 허가 조건인지 항공사 측의 독자적인 요청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B항공사의 협조 없이는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해볼 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A의 변호사는 B항공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의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다 보니, 일정을 조율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고, A의 치료도 더 늦어졌다. 병원과 항공사, 변호사 간에 일정을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A의 긴급상륙허가 일정은 어렵사리 정해졌다.<sup>89)</sup>

89) 2019년도 보고서, 107면.

이처럼 긴급상륙허가를 통한 병원 방문으로는 공항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병을 확인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 3. 진료의 어려움

제한적으로 의료진의 출장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절차가 복잡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2019년, 한 가족이 200일 이상 공항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급한 진료가 필요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협력을 받아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공항을 방문해 이들 가족을 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료의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가족이 공항에 머무르는 동안) 총 3회정도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진료부터는 기본적인 약들을 그나마 챙겨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가족의 상황이 어떤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청진기 하나 가져갔어요. 그리고 공항에 들어가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고, 공항에 들어가서도 담당자가 계속 “이건 편법적 상황이다”라며 반드시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어요. 담당자가 계속 “빨리 해야 하고, 누가 (이 가족이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봐서는 안된다”며 압박을 주었습니다.

- 최규진(인권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뿐만 아니라 진료 후 약이 더 필요한 경우에도 공항 내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의사는 상황을 확인한 후 병원으로 돌아가 약을 지은 후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 때에는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공항난민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한 의사는 비용이나 보수를 받은 적은 없었고, 급하게 필요한 약은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문제를 호소할 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항난민의 정서적 또는 정신적 안정에는 도움이 되었다.

(난민들이) 스스로 몸에 이상이 있고 안 좋은 것 같다고 인지했다는 것은 이미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아픈 곳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스스로 인지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왜 아픈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분들은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아픔을 호소할 때 달려갈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큼니다.

- 최규진(인권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4. 정신건강 문제

난민들은 본국에서, 그리고 본국을 떠나오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는 동안 폭행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도망쳐오는 과정, 그리고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국으로 송환될 것에 대한 두려움, 본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언뜻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은 새로운 상황에 금방 적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괜찮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공항에서 지낸다는 것은 24시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긴장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다 늘 강제송환을 걱정해야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1년 가까이 지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내적으로 피해를지는 일반 사람들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은지 (정신과 전문의, 마음토닥의원)

---

실제로 이러한 난민들의 취약성을 인식한 많은 선진국들은 난민신청자들의 정신과 진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심사시 정신적 트라우마 여부를 고려하는 등 난민인정절차 전반에서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 지원하기도 한다. 정신건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지만,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면 언어 문제만 해결된다면 간단한 설문조사로도 해당 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난민의 전반적인 건강을 파악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논의한다면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 5. 응급상황 발생시의 조치

현재까지 공향난민에 대한 책임주체와 관리 주체는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정부 부처들과 항공사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러한 문제는 2020년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 2020. 10. 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현장시찰 시 송환대기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송환대기실을 민간이 관리하면서 대기실 내 문제발생 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다. 관리 인력 및 공항 이용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환자 이송이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송환대기실의 관리 직원들은 “더 이상 송환대기실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송환대기실 운영구조 속에서는 승객이 사망할 수도 있고, 전례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90)</sup>

이는 송환대기실만의 문제가 아닌, 공항에 방치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항에서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

90) 2020. 10. 22.자 오마이뉴스, “국토부 ‘정부가 송환대기실 운영해야’… 법무부는 ‘난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642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6425))



부재했으며, 실제로 대응 매뉴얼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부에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부 담당자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면 저희는 일단 공항 소방대에 전화합니다. 공항 소방대가 응급환자인지 확인해서 병원에 가야할 것 같으면 항공사와 법무부에 연락하고, 항공사 직원이 법무부에 가서 긴급상륙허가 신청을 해야 해요. 법무부가 발급해주면서 어디로 나가라는 지시를 해 줍니다. 이 과정이 보통 1~2시간이 걸려요. 항공사가 거부할 수도 있고, 작은 항공사의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되는 곳도 많아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빨리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외부 진료는 승객 부담이 원칙이지만 항공사에서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항공사는 최대한 거부하려고 합니다.

법무부는 보고를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공항에 응급한 당뇨 환자도 있는데 대처가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사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인천공항 관리직원 (프리즌) 담당자

## 6. 소결

출입국항 난민절차에서 공항난민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건강권을 보장받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영양섭취, 수면, 위생에서 심각하게 미달하였다. 박해를 피해 도피해오는 과정에서 이미 취약한 공항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간신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상륙허가가 아닌, 예방적인 의료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공항난민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의사가 방문해 이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의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과 병세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정신적 안정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보안구역으로 분류되는 환승구역과 송환대기실 등에 의료진이 출입허가를 받아 정기적으로 왕진할 수 있다면 임시적으로 공항난민의 의료권의 보장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공사와 출입국·외국인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항난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공항의 출입국·외국인청이 이를 의료진에게 공유해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공항공사는 외부 의료진의 정기적인 출입을 허가하고, 공항난민들이 적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정기적인 왕진은 현행 법제도가 미비하여 공항난민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안일 뿐이다. 현재 공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조차 없으며, 책임과 관리의 주체마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임시적인 대응이 아닌 법제도 개선을 통한 대비이다.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하여 본 연구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과 공항공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IV. 아동 등 더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

많은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가족단위로 입국해 공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나 본 연구를 통해 설문조사한 난민신청자 중 가족단위로 입국한 사례는 한 건 뿐이었다.

2016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특히 송환대기실의 경우에는 가족을 위한 시설이 부재했고, 공항에서는 에어컨으로 인해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특히 임산부와 아동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으나,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당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임산부나 아이들에게도 성인과 같은 식사가 제공되며, 당시 법무부의 예산 중 아동 및 임산부를 위한 식사 및 분유, 기저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은 부재하였다.<sup>91)</sup>

---

아내에게 ‘당신이 저 남자랑 함께 가지 않으면 당신은 이혼을 하거나 저 남자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기 때문이다’고 협박했고, 임신 6개월 상태였던 아내가 앉아있던 매트리스를 끌어 당겼어요. 당시 7세였던 딸은 눈 앞에서 아버지가 강제로 끌려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송환대기실에 있던 5-6시간 내내 울었어요. 딸이 이렇게 겁에 질려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크게 걱정이 되었어요. 딸은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이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잠시라도 눈 앞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sup>92)</sup>

---

누구도 공항에 장기간 방치되어서는 안 되지만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을 받을만한 기관이 없고, 성장기에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우며 수면의 질 저하 및 스트레스 등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환경인 공항은 아동에게 특히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힌 여성과 아동이 환승구역에 방치된 사례가 있었으며, 2019년에는 10세 이하 아동 4명이 있는 가족이 약 10개월 동안 환승구역에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

당장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어머니는 공항에서 직접 민간단체를 찾아 연락하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여성과 아동의 경우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여성과 가족들에게 아무도 따로 보호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공항난민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

91)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2016), 2016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동광문화사. 59~62페이지.

92) 위 자료, 61페이지

처음에 공항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어요. 아이들의 사생활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그냥 말 그대로 로비에 방치되어서 아이들이 노트북 한 대 놓고 모여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그 장면이 첫 장면이었어요. 올라갔을 때 한 쪽에는 카트에 짐들이 쌓여 있었고, 아이 몇 명은 엄마한테 붙어서 칭얼대고 있었어요. 기사를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니 더 황당했죠.

공항은 불이 절대 꺼지지 않는 곳인데, 아이들이 24시간 불빛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 또래 아이들은 동굴과 같이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커튼이라도 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동단체 활동가

당시 아동단체와 함께 공항에 머무르고 있던 아동들을 방문했던 정신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아동들이 공항에 방치된 상황은 “사실상 재난상황”으로 규정했고, 아동들은 공항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sup>93)</sup>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단체 활동가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아동 등 아동이 입국 후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경우 즉시 해당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중에도 지적됐지만,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준비가 사실 제로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공항에서 난민신청할 경우 즉시 입국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긴 한데, 일단 아동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조력해줄 수 있는 아동인권 옹호가가 세팅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명단을 확보해놓고, 아동이 입국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아동에게 배치해 아동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현재 상황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발견하면 최소한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데려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먼 이국 땅에 혼자 온 아이를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반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너무 없어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아동단체 활동가

공항난민 중 특히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202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출국대기실은 입국 불허된 외국인이 출국 전까지 잠시 대기하는 장소일 뿐이므로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장기간 머무를 경우 위생 및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에 아동이 방치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권 및 건강권 등 발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난민협약이 난민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기본적 처우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체약국의 의무를 규정했음을 강조하며,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이후 소송 등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이 기간에

93) 2020. 6. 16.자 서울신문,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들,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6500197>)

기본적인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sup>94)</sup>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여전히 공향에서 난민신청하는 아동의 권리보장 방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 V. 송환과정

### 1.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공향난민의 송환

#### 가. 개관: 강제송환금지원칙

공향에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동시에 입국불허결정을 받는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2호, 제4항). 이때,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뒀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 즉 항공사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동법 제7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2. 입국목적에 체류자격에 맞을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공향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상 비호를 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난민 인정절차를 통해 난민지위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를 송환하는 것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난민협약 제33조, 난민법 제3조). 따라서 공향난민을 송환하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금지된다.<sup>95)</sup> 특히 불회부결정을 받은 공향난민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송환을 하는 것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도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상급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허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sup>96)</sup>

법원도 공향에서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공향난민이 ‘실질적’으로 난민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난민신청자라며,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난민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통해 사법적 구제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출국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sup>97)</sup>

94) 2020. 2.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19진정0607200), “공향터미널 내 장기체류하게 되는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95)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도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상급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허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유엔난민기구,

96) 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2014, 37-38쪽.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출입국향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난민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난민신청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행 난민법 상 위 강제송환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청구인 역시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주장하며 난민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난민으로 인정해 줄 의사를 표시한 자로 실질상의 난민신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 등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규정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위 취소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단으로의 출국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또한 청구인에게 국적국인 수단으로 귀국할 온전한 자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실질상의 난민신청인의 지위에 반하는 ‘떠날 자유’가 있음을 들어 수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강제송환금지원칙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당국은 공항난민을 송환하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자발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불회부결정 이후의 절차는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자발적 의사로 송환되었거나 송환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공항난민의 증언이 다수 있었다. 또한 출입국 당국은 불회부결정은 물론이고, 송환지시서의 발급도 하고 있다. 오히려 출입국 당국이 권한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공항난민에게 출국을 강제하는 사례와 그 과정에서 공항난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살펴본다.

#### 나. 출국 회유 및 강제

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송환 압박을 받고,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2016년 실태조사에서는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이 불회부 이후의 절차와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언어 및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며 송환 회유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sup>98)</sup> 인터뷰 대상자들은 송환대기실 관계자들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불회부 결정 이후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 그리고 변호사를 찾은 이후에도, 항공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중략) 그들은 우리에게 서류들을 가져와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낸 통지서라며 우리는 가능한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2016년 실태조사에서 난민신청자의 인터뷰 중<sup>99)</sup>

97) 인천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인라4 결정.

98) 2016년도 보고서, 45면.

2016년도 실태조사 이후에도 송환을 회유하는 관행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인터뷰 대상자 중 송환대기실이 아닌 환송구역에 머물렀던 난민신청자들 역시 위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기편이 있을 때마다 관계자가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했고, 일회성 제안이나 단순한 권유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사례는 다반사였고, ‘수갑을 채우겠다’고 하거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심지어는 무릎을 꿇은 경험을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

---

“항공사 직원이 와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열흘에 한 번 정도 와서 영어로 “Go back to your country”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3일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 난민신청자 A

---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위협을 했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수갑을 채우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OO항공 비행기가 뜰 때마다 여러 명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빨리 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울어서 힘이 들었습니다. 어디 말할 곳도 없었고, 변호사에게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을 동반한) 난민신청자 F

---

“하루는 어떤 항공사 직원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위협을 하면서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날은 울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A

---

항공사운영협의회로부터 하청을 받아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용역업체인 프리존의 직원들 역시 출입국 당국의 송환지시서에 따라 송환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매일 법무부에 송환대기실뿐 아니라 환송구역에 있는 인원에 대해 보고를 하고, 송환이 되지 않은 인원은 ‘도과자’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존 직원들은 송환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

“항공사 직원은 수화물을 체크한다. 승객, 여권, 송환지시서를 챙겨서 실제로 보내는 역할은 프리존에서 한다. 항공사는 송환이 끝나고 서류를 작성해서 결과보고서를 내는 역할을 하고, 법무부에서는 송환지시를 한 뒤에 직접 송환을 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매일 14시, 24시에 인원보고를 요청하면, 송환대기실과 환송구역에 있는 인원을 보고한다. 출입국에도 보고하고, TCC에도 보고한다.”

“항공사에서 ‘OO항공편에 OOO 태워 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해 온다. 이후에는 프리존에서 알아서

---

99) 위의 글, 4면.

한다. 환승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러 다닌다. 탑승을 거부하면 억지로 데려 갈 수는 없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항공사에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바꿔준다. 난민의 경우, 입국불허자라고 해서 내보낸다. 보안관리과와 프리존이 가서 데려간다. 승객은 비행기에 탑승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다. 보통 출국검색대를 거치면서 안 간다고 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보통 실랑이를 하는데, 출입국에서는 지켜보기만 한다.”

- 인천공항 관리직원 (프리존) 담당자

프리존 직원들은 별다른 권한이 없이 직접 송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법무부가 송환 지시를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계약은 항공사운영협의회와 맺었지만,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부 관할의 업무인 점에서 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송환 업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송환지시서에 비행기편까지 특정되어 있다. 지시된 날짜에 송환하지 못하면 ‘도과자’라고 해서 따로 보고를 한다. 탑승거부, 티켓 없음, 만석 등 지연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기재는 프리존 직원이 한다. 항공사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사유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는 내용만 가지고 대강 기재한다. 원래는 항공사나 법무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항공사는 항공사운영협의회에서 프리존에 위임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승객 탑승 등 일반적인 내용만 있다. 일반적인 승객 수송 관련 계약만 했는데, 프리존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대부분 법무부 일이다.”

“프리존의 일은 99% 법무부의 일이다. 보안구역에 있어서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보안구역에 이미 난민실도 있고 법무부 산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 인천공항 관리직원 (프리존) 담당자

한편, 송환 과정에서 송환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언, 폭행, 모욕이 동반되거나 물리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2. 송환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부분에서 상세히 다룬다.

#### 다. 인권침해 상태에서의 간접적인 출국 강제

난민심사에 불회부된 공항난민은 기약 없이 송환대기실이나 환승구역에서 체류하게 된다. 관계자가 송환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간접적으로 출국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난민신청자 F는 공항에 9개월 간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이 함께 체류하였고, 또 다른 난민신청자 B는 현재 9개월 이상 공항에 체류 중이다. B는 불회부결정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항에서, 특히 환승구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숙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공항에서의 열악한 처우 자체가 사실상 체류를 포기하게 만들고,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공항에서 난민신청자가 겪게 되는 숙식 미제공 등 인권침해 상황에 관하여는 이 보고서의 “제2절 공항 구금상황 및 송환과정에서의 인권침해 II. 구금장소 별 공항난민의 처우 일반”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2016년 조사 사례 중에는 인권침해 상태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 먹을 것을 수 일 간 제공하지 않은 사례, 약이 부족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인식과 경험의 부족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식의 폭언이나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공항 직원들은 우리에게 양호한 음식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무 때나 그들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거부해도 경비원들에게 돈을 쥐 강제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이 우리에게 수갑을 채우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부했고 그들은 심지어 먹을 것을 4일 동안 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7일간 항공사에서 밥을 제공해주지 않아 옆에 사람이 밥을 조금 나누어주는 걸로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경비요원에게 다시 가 그들에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얘기하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경비요원은 항공사 직원을 불러 나와 얘기해보도록 했고, 항공사 직원은 내게 약이 필요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 2016년 실태조사 난민신청자 인터뷰 중<sup>100)</sup>

---

## 라. 송환 과정에서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난민신청자를 부당하게 송환하여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엔난민기구나 난민 조력 단체, 변호사 등에게 연락이 닿아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송환을 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난민신청자가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

“그들(항공사측)에게 ‘우리가 유엔난민기구에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변호사를 찾아줄테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나라에 난민의 신분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랑 얘기했다고 하면서 ‘당신은 불회부로 영구히 정해졌다’고 얘기해서 변호사에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송환대기실 도착한 뒤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유엔난민기구에 연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고,

---

100) 난민네트워크·대한변호사협회, “2016년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48쪽.

“직원들이 모른다고 하다가 라이베리아 사람이 번호를 알고 있어서 한국 유엔난민기구 번호를 받았어요.”

- 2016년 실태조사에서 난민신청자의 인터뷰 중<sup>101)</sup>

“2018년 11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심사 불허부 결정을 받은 A가 난민인권네트워크를 통해 조력을 요청했다. 통신 문제로 금요일에 겨우 연락이 닿은 A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 도와달라고 했다. 월요일 오전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바로 공항 난민과에 팩스로 접견신청서를 보냈고 토요일 저녁에도 A와 연락하여 접견 시간을 재차 확인했다. 월요일 아침 출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다시 연락하였으나 답이 없었고, 공항 난민과에 문의하니 A는 이미 떠났다고 하였다. 난민과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2018년 5월에 입국한 B는 2018년 6월 난민심사 불허부 결정을 받았다. 그는 변호사와 연락이 되어 2018년 7월 변호사 접견을 이틀 앞두고 돌연 출국한 또 다른 난민신청자였다.”

- 2019년도 보고서 중 변호사의 글 발췌<sup>102)</sup>

그 외 난민신청절차에서의 외부 조력 요청과 관련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제1절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I. 난민신청절차 3. 외부 조력의 요청”에서, 권리구제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과 관련하여서는 “제3절 권리구제절차 II. 권리구제절차의 진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절차적 보장 1. 변호인 접견”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 2. 송환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등 수단의 적정성

### 가. 개관

송환을 강제하기 위하여 폭언, 모욕적인 언행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드물지만 폭행 등 심한 물리력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미 출국을 하고 나면, 인권을 침해 당한 난민신청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남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송환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많이 다투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정도가 과도할 수밖에 없다.

송환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반되는 것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데서 출발한다. 이는 결국 송환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이다. 난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송환지시를 하지만, 실제 송환 업무는 항공사가, 나아가 항공사가 고용한 용역 업체가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용역 업체가 다른 송환대상자와 구별 없이 강제로 송환 절차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 난민신청자는 출입국이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 상황이 의아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101) 난민네트워크·대한변호사협회, “2016년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46쪽.

102) 난민인권네트워크, “2019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난민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사랑샘재단, 유엔난민기구 (2019), 66쪽.



했다.

“출입국 직원들은 온 적이 없다. 출입국은 한 번도 강압적인 적이 없었고, 항공사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출입국이 압박을 했나 하고 생각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어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온 적이 없다.”

- 난민신청자 A

입국 거부 및 송환지시는 정부 권한에 따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관리 책임이 민간에 전가되어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다.<sup>103)</sup> 출입국 당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근거하여 입국이 불허된 자에 대한 송환은 항공사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회부결정 및 송환지시는 출입국 당국에 의한 것이고, 난민은 위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며 체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출입국 당국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하에서는 출입국 당국의 사실상 방치 아래 자행되고 있는 폭언과 폭행 사례를 살펴본다.

#### 나. 폭언, 혐오와 모욕 등

주체를 불문하고 관계자들이 난민신청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사례는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빨리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식사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거짓말쟁이’라고 모욕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송환대기실에 갔을 때, ‘빨리 돌아가라’, ‘출국하라’, ‘출국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주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난민면접을 했던 조사관도 송환대기실에 있던 나를 만나러 와서 ‘왜 안 가냐’, ‘넌 거짓말쟁이야.’, ‘넌 여기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 난민신청자 C

심각하게는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비호를 신청하는 난민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에 알리겠다’는 위협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는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조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다(난민법 제17조, 제47조 제1호).<sup>104)</sup>

103) “국토부 “정부가 송환대기실 운영해야”... 법무부는 “난색”, 오마이뉴스 (2020. 10. 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642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6425) 참조.

104)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사 측에서 [주 대한민국] OO[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대사관 사람들이 온 적도 있었다. 그 분이 와서 본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거절했다.”

- 난민신청자 A

“‘대사관에 연락하겠다’, ‘강제로 데려가겠다’, ‘OO[본국]정부에 당신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 2016년 실태조사 난민신청자 인터뷰 중<sup>105)</sup>

#### 다. 폭행 등 물리력 행사

드물지만 폭행이 수반되는 사례도 있었다. 팔을 붙잡고 끌고 가는 등 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의 직원은 출입국이 항공사에, 항공사가 용역업체에 송환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정 항공사는 용역업체 이외에 송환 전담팀을 두고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끌고 간다는 내용도 있었다.

“제주공항에서 불회부결정을 받은 친구가 송환되었습니다. 면접을 본지 1-2일 후에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땅에 주저앉은 친구의 팔을 세계 붙잡고 항공사 직원들이 끌고 갔습니다.”

- 난민신청자 C

송환지시서는 번복이 안 된다. 항공사는 출입국에서 내보내라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압력을 느낀다. 항공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출국] 압박을 한다. 항공사 직원 중에는 자기가 공권력이 있는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다. 프리존 사람들에게도 하대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사는 입국이 거부된 승객들한테도 하대를 하고, 출국을 거부했다고 하면 더 하대한다. A항공 등 특정 항공사는 아예 송환을 시키는 전담팀이 있다. 본부에서 가드를 고용해 완력으로 끌고 간다. 대체로 난민신청자들이다. 프리존 직원들은 직접 목격하고 보고를 한다.

- 인천공항 관리직원 (프리존) 담당자

2016년 실태조사 사례 중에는 임신한 아내와 어린 딸이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송환대기실 직원에 의해 송환 시도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송환 시도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례 중에는 포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끌어내림 등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③ 난민신청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105) 난민네트워크·대한변호사협회, “2016년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47쪽.

“4, 5명 정도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고, 나와 가족의 모든 짐을 다 밖으로 꺼내고 나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였어요. 아내가 우리가 떠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였으나 남자들은 오히려 아내에게 ‘당신이 저 남자랑 함께 가지 않으면 당신은 이혼을 하거나 저 남자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협박을 하였고, 임신 6개월 상태였던 아내가 앉아있던 매트리스를 끌어 당겼어요.”

“송환대기실 직원이 저에게 한국어로 ‘계속 가자’라고 하면서 떠밀고, 여권을 가져와서 계속 너희 나라로 가자라고 하니깐 ‘OO(국적)이라고 했다가 OO(국적)이라고 했다가’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억지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는데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 2016년 실태조사 난민신청자 인터뷰 중<sup>106)</sup>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강제력의 행사이다.

## 라. 계구 등의 사용

이번 조사에서 수갑, 계구 등 경찰장구(이하 ‘계구’)를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드물게 계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된다. 계구가 사용되는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구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입국이 거부되거나 금지된 자에 대하여 송환하는 절차나 계구 사용의 근거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수갑 등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77조), 이 규정이 송환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 등(「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계구를 사용할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따라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장비는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하고(제10조), 특히 수갑 등의 장구는 ①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제10조의2). 그리고 위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갑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

106) 난민네트워크·대한변호사협회, “2016년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47쪽.

어야 한다(제10조의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그런데 송환대상자인 공항난민은 체포 대상자가 아니다. 공항 안의 한정된 구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도주의 우려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송환대상자가 공무원이나 경비원, 기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려고 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해서 계구를 사용할 수도 없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라고 볼 수도 없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는 피해자들을 수용하거나, 강제송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위해서 계구를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제송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영역이기도 하다. 법령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하는 것에 국한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입국이 거부되었고 난민인정심사에도 회부되지 못한 외국인을 행정청이 강제로 송환할 수 있다’거나 ‘송환 시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62조),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분명하게 대비된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같은 취지에서, 법원도 입국불허 후 송환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유 제한을 위한 유형력 행사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인천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인라4 결정).<sup>107)</sup>

107) 인천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인라4 결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송환지시를 받은 운수업자는 송환을 요구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상위규범인 출입국관리법상으로는 사인인 운수업자 또는 운수업자 협의회에 또 다른 사인인 외국인에 대한 일정한 자유 제한을 위한 유형력 행사를 위임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 점(출입국관리법 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일방적 송환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 역시 ‘보호’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공권력 행사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보호’가 위 법상 규정에 따라 송환의무를 부담하는 운수업자가 송환을 완료하기까지 당해 외국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준의 배려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신체적 자유의 제한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 또는 이에 준하는 물리력의 행사를 용인케 하는 ‘보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결국 위 시행령 규정은 외국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송환대기실의 설치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의 근거 규정이 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계구 사용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77조는 피해자들에 대한 계구 사용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피해자들에게 계구를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인권침해’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소속 경찰이 계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공항난민에 대한 계구 사용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공항난민에 대한 계구 사용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 7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출입국사범 단속 시의 계구 사용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도 장비 등은 보충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용하여야 하고, 상황이 종료되거나 안전이 확보되면 사용을 종료하여야 한다. 특히 수갑은 팔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사용시기 및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장비 또는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다른 억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상황이 종료되거나 안전이 확보된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방법)**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수갑 : 개인별로 양손을 몸 앞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가급적 동성끼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팔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팔목보다 크게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갑을 양손 몸 앞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용목적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수갑을 양손 몸 뒤로 사용할 수 있다

보호명령을 받은 ‘피보호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인보호규칙」도 ‘청장 등의 명령’을 사전에 받은 후 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 사유나 요건이 종료되면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법 제56조의4제4항에 규정된 **보호장비는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장비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승(捕繩)과 수갑은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고,** 머리보호장비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한다.
- ④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그 요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즉시 해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폭력적인 송환절차에서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법무부는 계구 및 강제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을 정비하여야 한다.

### 3. 여권 압수

#### 가. 개관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심사 불회부가 된 공항난민은 예외 없이 여권을 압수당한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이지만, 법무부는 꾸준히 국제협약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이 없는 경우, 환승구역에서 생활하는 동안 생필품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증언이 있지만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 OO가족에 언론 보도 중<sup>108)</sup>

##### **“식당에서는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문제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물건이 있다는 점이다. 치약과 칫솔이 떨어져 사러 갔더니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가족은 현재 여권이 없다. 입국 불허 결정이 떨어지자마자 한국 정부는 가족 모두의 여권을 가져갔다.

---

#### 나. 국제협약 및 여권 압수의 위법 부당

법무부는 국내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관되게 공항난민의 여권 압수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의 부속서9를 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4년 52개국의 참여로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이 작성·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52년 동 협약에 가입하여 1957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았다.<sup>109)</sup>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헌법 제6조 제1항),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된 조약인 동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는 협약 본문에 포함시킬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일부로서 협약 본문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sup>110)</sup> 부속서 표준에 대해서 동 협약은 표준의 통일성을 위해 협약 당사국들이 최대한 협력하고(협약 제37조), 자국 법과 표준 간의 차이가 있으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108) 이명선, “인천공항 ‘46번 게이트 사람’을 아십니까”, 설록 (2019. 1. 28.),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5198> 참조.

위 기사에 대해 법무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여권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 등에서 치약 및 칫솔 구입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 놓으며, 다시 한 번 ICAO 부속서에 따라 항공사가 적법하게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 “인천공항 게이트 ‘방치’는 사실과 다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204> 참조).

109)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마780 결정.

110)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마780 결정.



Aviation Organization) 측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협약 제38조), 통보하지 않았다면 당국은 자국 법과 표준을 일치시킬 사실상 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sup>111)</sup>

부속서 중 출입국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입국금지자, 강제송환대상자에 관한 내용은 부속서 9(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on Facilitation)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제5장에서 입국금지자(Inadmissible persons)와 강제송환대상자(Deportees)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sup>112)</sup>

부속서9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권 심사 후 즉시 여권을 소지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3.52조), 예외적으로 회원국 정부는 위조 여권 및 부정행사한 타인의 여권을 압수하여 발행한 국가에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3.34.1조). 위와 같이 위조·위명여권으로 판명되어 압수된 여권<sup>113)</sup>은 그 사본, 출국명령서와 함께 운수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제5.7조).

부속서9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불회부 처분을 받아 입국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위조된 여권이나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당국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없다.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부속서9에서 위 규정 외에 여권을 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법무부는 일관되게 여권 압수의 근거로 부속서9 3.61조를 제시하고 있는데,<sup>114)</sup> 이는 항공사 승무원 및 승무원의 수하물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로, 여권의 압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sup>115)116)</sup>

한편, 강제송환대상자(Deportees)의 여권은, 환승국 또는 목적지 국가에 필요한 여권 등 모든 공식 서류를 운수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5.21조). 부속서9 제1장 정의에 의하면, 강제송환대상자는 ‘당국에 의해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하였던 자로서 이후 당국 정부의 공식적인 명령으로 해당 국가를 출국할 것을 명령 받은 자’를 의미한다.<sup>117)</sup> 이는 일단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송환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입국심사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입국금지자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공항에서 난민을 신청한 후 불회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입국을 했던 적이 없으므로 여기서의 ‘강제송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 역시 난민신청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근거로는 활용될 수 없다.<sup>118)</sup>

111) 대법원도, 협약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록은 부속서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서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국제표준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도373 판결), 부속서 상의 표준이 회원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해석으로 보인다.

112) 난민네트워크·대한변호사협회, “2016년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61쪽.

113) 원어는 travel documents로 여권을 포함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권으로 표현하였다.

114) 예를 들어 2018년도 보고서 162면.

115) 3.61 Contracting States shall establish measures, with the cooperation of aircraft operators and airport operators, to expedite the inspection of crew members and their baggage, as required at departure and upon arrival.

116)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여권 압수의 근거로 3.61조를 제시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발표한 초기에 누군가 잘못된 규정을 근거로 들었거나 오기를 한 뒤, 그 관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7) *Deportee*. A person who had legally been admitted to a State by its authorities or who had entered a State illegally, and who at some later time is formally ord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leave that State.

결론적으로 난민신청자의 여권을 일률적으로 압수하여 항공사가 보관하도록 하는 관행은 국내법은 물론이고, 국제협약을 살펴보아도 근거가 없는 조치이다. 여권이 위조되었다든가 위명이라는 예외적인 경우, 또는 난민신청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여권 압수 및 보관 관행은 위법하다.

“입국금지자에 대해서 여권을 압수하는 항공사의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신분서류를 탈취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략) 당국에서 입국금지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입국금지자의 여권 심사 후, 또는 송환 절차 중 그의 여권을 원칙적으로 압수해야 한다거나 압수한 여권을 운송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은 표준 및 권고관행을 불문하고 전혀 없습니다.”

- 항공사 전 법무담당 직원

## 4. 소결

### 가. 국제규범기준의 인식과 준수

공항난민의 강제송환 국면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준수이다. 공항난민이 실질적인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송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 하에 공항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상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는 7일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심사를 할 수 없다면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조건부 입국허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나. 공항난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 명문화

공항난민은 정부가 입국을 불허하여 공항에 수용되는 사람들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강제송환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난민을 송환시키고자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공항에서 체류하는 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다.

### 다. 권한 없는 자의 계구사용 근절 및 계구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

경찰, 교도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제외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구를 사용할 수 없다. 법률상 계구의 사용권한이 없는 경비원, 용역직원 등에 의한 계구사용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법무부는 법률상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한 계구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항에서의 입국불허자 등에

118) 난민네트워크·대한변호사협회, “2016년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62쪽.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계구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입국불허자 등에 대해 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사용 절차와 방법, 관리책임자 등을 엄밀하게 정하여야 한다.

#### 라. 인권교육의 실시

송환 절차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난민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모든 폭력 사태를 근절하고, 송환 회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마. 여권 압수의 중단

난민신청자를 환승구역으로 보내면서 여권을 압수하는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강제조치일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방법으로 환승구역에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환승구역의 모든 시설에서 여권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환승구역의 샤워실 등 여러 시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시 여권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은 면세물품의 구매를 위해 필요한 것일 뿐, 그 외 물건 구매나 시설이용 등에서는 요구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공항공사에서 적절히 알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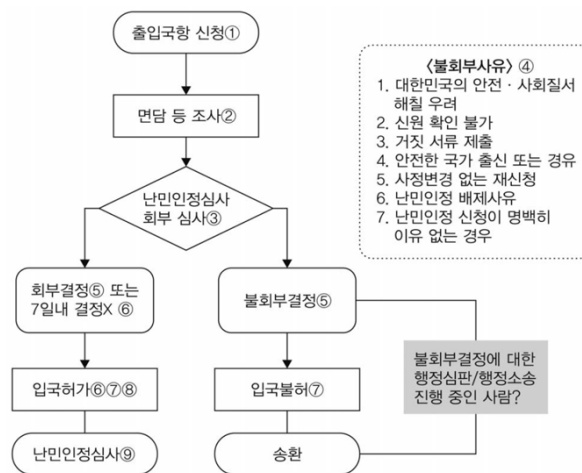
## 제3절

### 권리구제절차

#### I. 절차 및 쟁점 개관

##### 1. 절차 개관

난민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심사의 경계선인 공항에 도착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I am refugee. I’m seeking asylum”이라고 누군가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이 사실은 이곳을 규범적, 실질적으로 관할하며, 강제송환금지의무를 진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전달된 내용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되어야 하며, 그 심사기간 동안 적절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해야 하고, 부당한 심사가 있으면 이를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항에서 난민인정심사를 곧장 실시하는 국가도 있고, 사전 심사를 거치는 국가도 있는데, 한국은 후자에 속한다. 난민법 제6조는 공항 난민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표 : 공항 난민신청 절차 개요표<sup>119)</sup>

간단히 요약하면, 입국의 의도로 난민신청의 의사를 표시하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공무원이 난민신청 서식을 교부하고 난민신청자대기실에서 7일 동안 간이한 사전심사를 한다. 사전심사 기간 동안에는 숙식이 제공되고, 심사의 목적은 난민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이 아닌지’에 한정되고, 난민이 전혀 아님이 명백해 보일 경우에만 사전심사에서 신청을 기각<sup>120)</sup>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을 인용<sup>121)</sup>하고, 신청을 인용하면 입국을 허가한다. 왜냐하면 정식 난민심사는

119) 최계영, “출입국향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공익과인권 총서 제30권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2019), 6.

120)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회부결정이라고 한다.

121)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한다는 의미에서 회부결정이라고 한다.

입국 후 행정당국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공향에 대기, 구금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회부결정을 받고 입국을 하게 되면 난민법 제5조가 정한 통상적인 난민신청절차에서 난민신청이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향후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간명히 요약한 난민신청절차와 달리 실제로는 쉽사리 이러한 절차가 운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당국은 ‘난민을 자칫 송환하게 될 위험’에 유의하며 입법취지에 따라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난민이 아닌데 이 제도를 통해 입국을 허용할 위험’에 오히려 주목하며 가급적 절차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이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검토된 것처럼, ① 난민이 공향에서 신청 의사를 밝히더라도 서식이 교부되지 않고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② 심사가 개시되더라도 부당하게 불회부결정을 받거나, ③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동안 또는 불회부결정을 받은 동안 부당하게 물리적 송환위험을 받거나, ④ 부당하게 환송구역 또는 송환대기실에 구금되거나, ⑤ 사법절차로의 접근이 차단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당국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할 경우 공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난민 개인이 받는 고통과 사익의 침해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 그 경우 난민이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2. 쟁점 개관

### 가. 문제점의 위치

그동안 공향 난민들이 맞닥뜨린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다툼 속 일정한 권리구제의 기초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첫째, 과거엔 행정청이 “난민법 제6조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처분’은 ‘처분’이 아니라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처분임이 확인되고,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의 대상으로 확립되었다.

둘째, 과거엔 행정청이 “난민법 제6조의 난민신청은 입국심사대에서만 할 수 있고, 입국이 거부된 송환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신청하면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난민신청의사를 밝혔다가 입국이 거절될까 두려워 입국거부 이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난민신청도 수리하여 심사를 개시하고 있다.

셋째, 과거엔 행정청이 “난민법 제6조의 난민신청은 환송객들은 할 수 없다 주장”한 적도 있었으나 한국 정부가 비자를 내주지 않아 한국으로 피신하여 난민신청을 할 수 없었던 난민들이 환송과정에서 입국심사대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여도 그 신청을 수리하여 심사를 개시해왔다. 그런데, 2019년말 혹은 2020년 초부터 환송객은 난민법 제6조가 정한 난민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갑자기 당국이 심사를 개시하지 않기 시작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넷째, 과거엔 행정청이 “난민법 제6조의 난민신청을 하다가 송환대기실에 대기된 것은 구금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신보호법 구제청구의 대상으로서 구금임이 확인되고, 이후 구금 해제가

법원에 의해서 명해졌다. 그러자 아예 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들을 송환대기실이 아닌 환승구역에 그냥 스스로의 비용과 방법으로 장기 대기 방치하는 것으로 실무 관행이 악화되었다.

다섯째, 과거엔 행정청이 “난민법 제6조의 난민신청을 위해 공항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호인접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사를 만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변호인접견권의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sup>122)</sup> 이후 변호인접견절차가 수립되었다.

여섯째, 과거에는 불회부결정이 구두로만 고지되어 문서주의 및 이유제시의무에 반하였으나, 행정 절차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름에 따라 형식적이거나 처분서가 교부되도록 실무가 바뀌었다.

이와 같이 일정한 부분은 개선되었으나, 이미 이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검토된 것처럼 당국의 실무운영 기준의 후퇴로 환승객에게 난민심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위법, 부당하게 불회부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그 경우 송환대기실 장기구금 또는 환승구역 장기구금의 문제가 발생하고, 신속한 구제수단이 아닌 불회부결정취소소송의 현재 위상으로 인해 권리구제가 될 때까지 수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까지 공항에 구금되는 문제, 특히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여전하다.

#### 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쟁점들

현재, 공항에 도착한 난민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불회부결정을 위법,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가능한 핵심적 권리구제수단은 불회부결정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관련해서,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실효적인 수단인지, 그 재판절차는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방식으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소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기 위해 불복방법이 기재된 처분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연락처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변호인의 접견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과정 동안 생성된 심사자료 즉, 난민신청서(난민의 진술서) 및 난민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난민면접조서)의 열람, 등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청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에 대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있다면, 해당 보고서도 처분상대방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한편, 현행 법제도에서 위 소송이 소 접수시부터 신속하게 심리되는 방법이 없으므로, 집행금지신청, 인신보호법 구제청구, 기타 가구제 수단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122) 이후 본안 결정에서도 공항 난민의 변호인 접견을 막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 II. 권리구제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절차적 보장

### 1. 변호인 접견

#### 가. 개관: 공향난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변호인 접견의 중요성 및 관련 논의 경과

변호인과 접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향난민의 인권을 옹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향난민은 외부와 쉽게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본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방어하기 어렵고,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해서 비로소 그에게 발생한 인권침해가 외부에 알려지고 나아가 재송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향난민에게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는 것은 공향난민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23)</sup>

과거에는 공향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일률적으로 거부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접견신청 거부가 공향난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공향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어 있는 것은 ‘구속’에 해당하며, 이 경우 헌법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sup>124)</sup>

이후 법무부장관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였다. 해당 지침은 대체로 보호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접견절차를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과 유사하다.<sup>125)</sup> 위 지침은 이후 추가적인 수정이 있었으나 현재에도 큰 틀에서는 해당 지침과 유사한 내용으로 공향난민의 변호인 접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항목에서는 최근 발생한 변호인 접견권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공향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나. 관련 법률의 부재

변호인 접견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는 법률에 의해 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도 관련 법률규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은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에서 그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당국은 현재 위 지침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sup>126) 127)</sup>

#### 다. 환송구역 공향난민의 변호인 접견권

위 헌법소송 사건에서 접견이 불허되었을 당시에는 공향에서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비호신청자는

123) 이상현, “변호인 접견권 침해사례”, 공향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 2019년도 한국의 공향,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난민인권네트워크 (2020), 45.

124)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

125) 이일,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 운영현황 및 변호인 접견권의 헌법적 보장”, 출입국향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1. 10. 발표), 7-8.

126)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 비공개처분의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632호).

127) 이상현, 앞의 글, 48.

일률적으로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송환대기실 강제구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sup>128)</sup> 이후 송환대기실에 수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비호신청자는 공항 환승구역에 머무르게 되었다. 환승구역에 머무르고 있는 공항난민은 송환대기실의 공항난민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다.<sup>129)</sup> 본 모니터링에서도 실무상 환승구역의 공항난민이 동일하게 변호인과 접견을 할 수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공항난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sup>130)</sup>

그런데 현재의 실무관행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변호인 선임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져서 변호인 선임서가 작성된 이후에나 비로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변호인 선임서를 미리 제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무상으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이 거부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접견신청을 할 때 변호인 선임서를 형식적으로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sup>131)</sup>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권을 보장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마. 변호인 접견 직전 송환 사례

공항난민이 변호인 접견 직전에 몇 차례 송환된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132)</sup> 복수의 변호사의 보고에 따르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 있는 공항난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접견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접견 직전에 해당 공항난민이 해외로 송환되었다고 한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변호인이 금요일에 연락을 받아 월요일에 접견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직전 주말에 공항난민이 송환되어 결국 접견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위 사례들에 대해 행정당국은, 해당 공항난민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포기하고 자의로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sup>133)</sup> 구체적인 사례는 앞서

128) 대법원 2014. 8. 25.자 2014인마5 결정.

129) 이상현, 앞의 글, 48-49.

130)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131) 이상현, 앞의 글, 49.

132) 유사한 보고로, 이일, 앞의 글, 10 및 김연주, "토론편 1 -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에 대한 변호사접견권 침해사례", 출입국향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 서울지방법변호사회 (2019. 1. 10. 발표), 31-34 각 참조.

“제2절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V. 송환과정 1.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공항난민의 송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바. 접견 장소

현재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경우, 환승구역 2층에 송환대기실이 마련되어 있다. 송환대기실 바로 옆 공간에 마련된 접견실의 면적은 2평 정도이고, 접견실에는 4인이 앉아서 접견을 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이 구비되어 있다. 접견실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별도의 방으로 되어 있어서, 접견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가청거리 및 가시거리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34)</sup>

#### 사. 접견 시간

공항의 특성상 24시간 교대업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난민팀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 접견을 위해 변호인의 공항 보안구역 출입 및 인솔을 돕고, 난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접견이 종료되면 변호인을 보안구역 외로 인솔하게 되므로, 접견시간은 통상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업무시간으로 한정된다.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헌법상 인정되는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접견시간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항난민의 경우 송환을 앞두고 있는 등 긴급하게 접견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의 접견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심사자료의 공개

### 가. 심사자료 미공개 문제

난민법 제6조에 의한 심사는 통역인을 대동한 난민면담(난민법 제6조,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사실조사(난민법 제10조)를 통해서 이뤄진다. 실무상 난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난민신청서의 내용 및 난민면담 과정에서 현출된 진술, 난민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하여 진술이 일관되는지, 과거의 활동 및 행적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진술이 알려진 일반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하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신하여, 회부결정 또는 불회부결정을 내린다.

절차 진행과 무관하게, 일반 형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본인의 진술서, 본인이 제출한 자료,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및 영상을 열람, 등사하는 것은 정보 주체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심사자료일 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통역 및 심사공무원의 요약 기재과정을 거친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불회부결정의 위법, 부당성을 다투고자 구체적인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133) 이상현, 앞의 글 50-51.

134) 이상현, 앞의 글, 50.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열람, 등사를 하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난민신청서, 난민면접조서의 등사는 불회부결정을 받기 전은커녕, 그 이후 이를 사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도 난민의 권리로서 정착되지 않았다.

#### 나. 심사자료 공개 청구의 방법

난민법 제16조는 자료 등의 열람·복사라고 하여,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관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인 난민의 경우 난민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또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로 심사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항난민의 경우 불회부결정을 소로서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를 얻기가 어렵다. 당국은 난민법 제16조가 정한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절차가 개시’된 사람만을 의미하기에, 아직 회부결정을 받지 않아 난민인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람은, 난민신청의 의사는 밝혔지만 난민신청자가 아니기에 위 조항에 따른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야 하나 당국은 위법한 처분사유를 들어 비공개처분을 한다.

따라서 위 심사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 불회부결정을 다투고 있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며 이에 관한 증거로 피고가 을호증으로 난민신청서 및 난민면접조서를 제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데 당국이 최근에는 아예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부가 이를 제출토록 석명을 하는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는 이례적인 사건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피고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난민면접조서의 현출을 통한 법원의 심리를 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같은 관행은 수긍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결국, 위법한 비공개결정을 하면 비공개결정을 소로서 다투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난민이 승소하더라도 당국은 항소하는 방식으로 다투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불회부결정취소의 소에서도 피고가 임의 제출을 하지 않으면 난민이 공항절차에서 이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 3. 소결

공항절차의 신속성, 밀행성 그리고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심사자료의 공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도 타당한 제한사유가 될 수 있는, 내부 의결과정에 있는 서류 등의 공개가 아니라, 난민이 제출한 자료, 난민의 진술서인 난민신청서, 난민의 진술이 기재된 난민면접조서의 열람 및 등사는 차후 사법적 구제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심리를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적법,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심사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당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비공개처분은 단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어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에 해당하여 국가가 정민적 손해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 공향 난민절차의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피고가 주장, 언급하려면 심사자료의 밀행적 비공개와 같은 부당한 행정관행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Ⅲ.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절차

#### 1. 소송구조

출입국향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회부심사에서 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이라도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등의 절차를 모두 소진하기까지는 송환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난민법 제2조 제4호 가목이 난민신청자의 개념을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부/불회부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sup>135)</sup> 따라서 당국이 불회부결정을 철회하거나 행정소송의 결과를 통해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공향난민은 강제송환의 위험을 앞두게 되는 것이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sup>136)</sup>고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절차 없이 소송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따라서 공향난민의 권리구제 절차 보장에서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소송구조이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이다. 민사소송법은 제128조 내지 제133조에서 소송구조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내지 제27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행정사건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소송구조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소송구조 결정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sup>137)</sup> 소송구조의 신청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소송구조결정을 한다.

135)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법무부 의견”,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 자료집 (2019. 2. 21.), 162쪽.

136)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3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가. 소송구조의 요건

### 1) 무자력 요건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한다.<sup>138)</sup> 소송구조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은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예상되는 소송비용액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자력자나 극빈자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사람을 의미한다.<sup>139)</sup> 지출이 예상되는 소송비용과 신청인의 자금능력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통해 판단하게 되며 난민소송에서는 통상 신청인이 국내에 경제적 기반은 물론이고 사회적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난민소송 고유의 특성도 감안하고 있다.<sup>140)</sup>

### 2)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이 요건은 구조제도를 이용하여 남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라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sup>141)</sup> 반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서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하다거나 주장사실이 분명히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남소임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42)</sup>

한편,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본안소송에서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도 함께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sup>143)</sup>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그 특성상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고,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의 하자 등이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sup>144)</sup>

13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139)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1), 36쪽.

140)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1), 37-38쪽.

141) 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142)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1), 38쪽.

143) 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144) 대법원 2001. 3. 8.자 2001카기38 결정.

### 3) 구조요건의 소명

구조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sup>145)</sup> 무자력 요건의 소명방법으로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sup>146)</sup> 실무상 법원 청구에 비치된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승소가능성의 요건은 적극적으로 소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신청인에게 그 소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명자료는 소장·답변서 및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의 사본 등이다.<sup>147)</sup>

## 나. 소송구조의 범위

### 1) 객관적 범위

소송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데,<sup>148)</sup> 난민소송에서 주로 문제되는 구조 항목은 재판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이다. 소송비용은 당사자 비용과 재판비용으로 구분되는데 당사자가 법원에 내지 않고 스스로 지출하는 소송서류 작성비용, 소송서류 제출비용, 변론기일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 당사자 비용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니다.<sup>149)</sup>

‘재판비용’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입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수수료(인지액)와 수수료 이외의 비용(예납비용)이 있다. 수수료 외의 비용은 당사자가 법원에 미리 내야 하는 송달료, 증인·감정인·통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여비 및 숙박료, 일당, 감정료·통역료 등이다. 내규 제9조에서는 통역·번역료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sup>150)</sup>

**내규 제9조(통역·번역인에 대한 통역·번역료의 소송구조결정 범위)** ① 외국인인 통역·번역료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통역·번역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9조,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역·번역료를 소송구조 예규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국고 대납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소송구조 상담 시 통역·번역인이 참석한 경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가 통역·번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를 정할 때 통역·번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상담 시 통역·번역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시간당 40,000원으로 하되, 회수와 관계 없이 외국인 1인에 대한 상한을 150,000원으로 한다.

### 2) 시간적 범위

구조의 효력은 일반 원칙에 따라 구조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sup>151)</sup> 그러나 구조결정에서 특별

14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

146)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147)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1), 39쪽.

148)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단서

149)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1), 41-42쪽.

150)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1), 43쪽.

히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명기하지 않은 이상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은 신청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의 제기와 동시에 인지액에 대하여 구조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이 구조받아야 할 주요 부분이고 최초의 비용이 된다는 점에서 소의 제기 시에 소급하여 구조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효력이 소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납입이 유예되는 재판비용 등은 결정고지일 이후에 납입 또는 예납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며, 그 이전에 생긴 비용은 유예되지 아니한다.<sup>152)</sup>

### 3) 심급과 효력범위

소송구조의 결정은 당해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구조결정의 효력은 제1심에만 한정되고 제2심에는 미치지 않으며, 상소심에서 한 소송구조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된 경우에 하급심에 미치지 않는다.<sup>153)</sup>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말하고, 변호사의 ‘체당금’이란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한 소송수행을 위해 변호사가 먼저 지출하여 소요된 여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의 지급이 유예되므로, 변호사는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소송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료되면 국고에서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sup>154)</sup>

난민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는 본인이 지급을 하고,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기일 통역료에 대해서 소송구조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소송구조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지원단체에 소속된 공익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무료 공익소송을 하기도 하며, 각종 난민지원 기관들로부터 통역료를 후원 받기도 한다. 또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구성되어 난민소송 지원 전문가가 더 확대되기도 하였다.

## 2.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이에 따른 장기 구금

어떤 소송이든 당사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송의 특성상 소송이 시작되면 기일이 지정되고, 다음 기일이 잡히는 데만도 1-2달이 소요되어 한 심급마다 수 개월이 걸린다. 특히 공항난민은 공항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방비상태로 공항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서 재판 기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본래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공무원이 신청서를 교부하고 대기실에서

151)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152)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1), 47쪽.

153)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1), 47쪽.

154)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1), 44쪽.

7일 동안 간단한 사전심사를 마치면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난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신청을 기각하고 그 외에는 인용하여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즉, 난민인정 심사절차에 대한 회부는 형식적인 사항만을 검토하여 7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제도이고 정식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입국하여 난민법 제5조의 난민신청을 접수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행정당국이 난민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심사가 공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테면 앙골라 국적의 공향난민가족의 사례에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자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서 난민이 아니란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증거는 살피지 않은 채 출입국장에서 실질적인 난민심사를 진행한 뒤 난민신청을 기각했다. 그리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은 2019. 1. 15. 소장을 접수한지 약 두 달 만인 2019. 3. 7.로 잡혔다.

1심에서 변론기일은 총 세 번 열렸는데 첫 기일에는 원고들이 출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서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소송지휘를 하여 두 번째 기일부터 원고들이 출석할 수 있게 되었으나 통역인이 출석하지 않아 원고들이 진술을 하지 못했다. 절차적인 문제로 기일이 세 차례나 열린 것이다.<sup>155)</sup> 이렇듯 수 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공향에 구금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재판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재판 자체의 복잡성이나 좀 더 치열하게 다투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하여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 3. 당사자의 재판 출석의 어려움과 방어권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공향난민의 소송 진행에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당사자의 재판출석이다. 일반 소송과 달리 공향난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지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향에 머무르도록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공향에서는 외부와 쉽게 소통할 수 없고, 재판에 출석한다 해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변호인이나 통역 전문가가 함께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본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방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권리는 그 무엇보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리인이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원고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소송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향난민의 경우 여러 변수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우선 피고가 정한 복잡한 단계를 거쳐 출석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가 어렵게 참석하였으나 통역인들이 다양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재판에 늦어 원고가 어렵게 출석한

155) 최초록,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 2019년도 한국의 공향,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향난민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2020), 92쪽.

재판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공항난민의 재판 출석은 매우 제한적이고 힘겹게 이루어진다. 재판 출석은 당사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만큼 이를 보장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 4. 공항난민의 특수성에 기한 증거 조사의 한계

##### 가. 구금된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 공항난민

난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그만큼 박해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한데, 증거를 갖춰 출국하는 난민은 드문 편이다. 공항난민은 공항에 체류할 수밖에 없고, 구금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법무부 난민과에 조건부로 입국허가를 요청하는데,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원고는 실무상 공항에 구금된 상태에서 소송에 임해야 한다.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 공항난민은 국내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조사,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민의 특성에 더하여 구금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난민소송 진행 시 대리인이 원고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고를 만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 주로 출신국가 정보(COI: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의 분석과 정리는 기본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 맡겨진 임무인데, 특히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오늘 날에는 각국의 정부와 인권단체 등이 제공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와 그 번역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56)</sup>

그 외에도 UNHCR 한국대표부에 사실조회 형식으로 출신국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재판에 활용하거나 난민을 조력하는 단체 소속 변호사나 활동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항난민은 공항의 제한구역 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공항에서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요청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어렵게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국에서 박해사실 관련 자료를 수집하다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공항난민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난민들에 비해서 증거를 조사하거나 수집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절박한 한계에 마주한다.

---

사실관계 파악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증거 수집이었다. (중략) 원고들은 6명의 가족이 단 4개의 가방밖에 챙기지 못했을 정도로 옷가지와 생필품 이외에는 가져온 물건이 거의 없었다. 그나마 몸에 남아있던 고문의 흔적, 폭행의 후유증이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이미 입국한지 수일이 지나 흉터마저 흐려진 상태였고, 변호사와 접견을 한 후에야 겨우 사진과 진단서를 남길 수 있었다. 그 외에 본국 현지의 지인들과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A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은 박해 과정에서 분실되었고, 그나마

---

156)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1), 70쪽.

가지고 들어온 휴대폰으로는 통화가 아닌 왓츠앱 연락만 가능했다. 본국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이 닿은 것은 1심에서 패소한 뒤였다.

- 앙골라 출신 난민가족을 대리한 변호사의 글 중<sup>157)</sup>

#### 나. 피고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공향난민의 정보 접근 제한

공향난민의 상황과 대비되게도,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정보 접근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 원고가 직접 작성한 난민신청서나 직접 진술하여 작성된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 거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부 보고서나 지침의 공개도 수차례 거부되어 왔다. 당사자는 위험을 무릅쓰기 어려워서, 혹은 지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현지에서의 조사에도 거리낌이 없다.

피고는 대사관을 통해 광범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원고들이 가지고 온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고, 자녀들의 출결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고, 원고들이 살던 집과 그 주변을 방문해 마치 탐문수사를 하듯 꼼꼼하게 사람들을 만났다. 다만 실제로 대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사관의 몇 줄짜리 짧은 회신본이었다.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는 '위조'이고, 원고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중략)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지침이나 보고서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원피고는 결코 대등한 입장이 아니었고,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정보는 기울어져 있었다.

- 앙골라 출신 난민가족을 대리한 변호사의 글 중<sup>158)</sup>

실제로 출입국에서 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다수 발견되고 있고, 이번에 인터뷰를 했던 난민 중에는 대사관을 통한 현지 조사의 부당함에 대해서 수차례 토로한 당사자도 있었다. 이는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고,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난민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관행이다(난민법 제17조, 제47조).

한국 출입국과 OO[본국] 당국간의 협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박해를 받아 출국을 했는데 출국한 그 곳에서 본국과 연락을 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자신들이 스스로 서류가 사실인지 확인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험이 된 그 존재 자체에게 가서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157) 최초록,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 2019년도 한국의 공향,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향난민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2020), 91쪽.

158) 최초록,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 2019년도 한국의 공향,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향난민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2020), 91-92쪽.



것은 문제입니다. 그 전 두 달간 정부에서 가족을 찾은 적이 없었는데 사실조회 이후로 정부에서 가족과 형제들의 근무지를 찾아갔습니다. 남동생의 경우 고등학교 시험 첫째 날 친구들과 있다가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판결도 그 후에 나온 것입니다.

- 난민신청자 A의 인터뷰 중

#### 다. 증거조사를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의 제약

난민소송은 난민신청자의 생애와 박해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생애에 관한 내용들을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항난민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변호인접견권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고, 접견 절차나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 또한 접견시간은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 내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평일 9:00~18:00(사실상 17:00까지, 12:00~13:00는 제외) 내에 이뤄져야 하고, 통역을 통해 진행하다 보면 2~3배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미리 역할 분담을 하거나 질문지를 작성하여 접견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여도 주어진 시간 내에 논의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항에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과 당사자가 접견 외의 연락을 하기도 쉽지 않다. 일단 수신이 제한된 보호실 내 공중전화기로는 대화를 이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출입국항에 있는 공항난민이 가능한 것은 온라인 연락이다. 통화가 가능한 경우가 거의 드물고, 통화가 가능하다고 해도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수집하여야 할 내용을 공유하고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메신저 앱 또는 이메일이 사용되고 있다.<sup>159)</sup> 통역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 구글 번역을 활용하여 모국어-영어-한국어, 한국어-영어-모국어 등의 순으로 번역을 하거나 바로 모국어-한국어 등의 방식으로 번역기를 통해 소통을 한다. 또한 민감한 부분이나 뉘앙스를 살려 질문해야 할 경우에는 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밖에 없으나 이마저도 각 지역 특유의 뉘앙스나 문화 차이를 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제한된 접견, 메신저 앱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5. 지나치게 낮은 승소율과 변호사 조력 가능성

재판 결과는 각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근 7년간 법원의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건수는 7배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원고 승소율은 오히려 5분의 1로 줄어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의 ‘최근 7년간 난민인정 행정소송 처리현황(제1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2,040건으로 2014년 307건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원고 승소율(일부 승소율 포함)은 1.0%에서 0.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지난 7년간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0.4%로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29.8%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9) 김연주,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외국인보호시설 감금 사례,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 - 2019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난민인권네트워크 (2020), 84쪽.



24.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sup>160)</sup>

앙골라 출신 난민 가족의 경우,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100여 개,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결과 우여곡절 끝에 원고들은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원고들은 2심 판결 선고 후 2주가 지난 후 정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한지 자그마치 10개월만의 일이었다.<sup>161)</sup>

그나마 앙골라 출신 난민 가족의 경우는 비교적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고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충분히 다룰 수 있게 된 경우다. 일반적으로는 불회부 결정을 받아 행정청을 상대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변호인의 접견이나 조력을 받기 어려워 재판을 통해서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출입국항의 권리 침해는 그 자체로 중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제도나 기타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들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6. 소결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절차는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불회부 사유를 심사하여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불회부결정을 한다. 그러나 불회부 사유에 관한 규정내용이 명확한지, 그리고 과연 그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이 적법한지가 의문이다. 출입국항에 난민신청 절차가 명확히 안내되어 있지 않으며, 판단이 짧은 시간의 면담과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결정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난민신청자 중 많은 경우 두려운 마음에 우선 한국에 안전하게 입국한 후 유엔난민기구나 단체의 조력을 받아 신청할 생각을 하여 공항에서의 신청절차에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어 간단히 신청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행정청의 판단을 통제할 절차적 장치가 없다.

공항난민은 변호인 접견권의 존재라거나 접견 신청, 외부 기관과의 연결, 조력을 받을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받기 어렵다. 실제로 조력 단체나 변호사를 만나도 실제로 접견이 이뤄지는 것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항난민이 소송 등을 통해 행정청의 판단을 다투는 것은 당연한 절차적 권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운에 가까워 보일 정도다.

원래 난민인정심사절차에 대한 회부는 ‘형식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7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고, “명백함”이란 누가 봐도 이유 없는 것일만큼 분명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앙골라 출신 난민의 경우, 피고는 이들에 대해 7일간 실질적인 난민심사를 한 후 이들이 경제적 목적의 난민으로 명백하게 이유 없는 신청이라고 판단,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원고와 피고,

160) “난민신청 행정소송 급증... 승소율은 0.2%대”, 통합뉴스 (2020. 10. 26.), <http://www.tongha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44> 참조.

161) 최초록,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 2019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난민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2020), 92-94쪽.

그리고 재판부가 약 10개월 간의 시간 동안 양쪽에서 증거를 150여 개나 제출하는 등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 피고의 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명백하게 이유 없다는 사유로 난민 심사조차 회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현재 출입국항 난민신청과 권리구제 절차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일례라 할 것이다.

#### IV. 가구제수단

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통해 사법적 권리구제를 피하더라도 그 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피고의 항소 여부 등에 따라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난민법은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난민의 권리 혹은 처우, 이에 관한 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위법, 부당한 불회부결정을 다투는 방법이 확립되어 왔으나, 실무는 간단치 않다. 행정당국은 불회부결정을 내리고 항공사에게 송환지시를 하게 되나, 송환지시는 직접적인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지시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회부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난민신청자가 놓인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회부결정은 공항에 난민신청자를 구금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에서 구속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하게 되기까지 구금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더욱이 그와 같은 구금은 공항이란 장소의 특수성 및 국내법의 규범 공백상태로 인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지게 되고, 이에 최소한의 피구금자 처우와 같은 것이 전혀 지켜질 수 없다.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항고소송 기간동안 공항에서 최소한의 처우도 없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4-5개월, 심지어 행정당국이 1심 판결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하면 1년까지도 지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법률상 소 제기를 통해 불복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소가 제기되면 이와 같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sup>162)</sup> 이를 반기지 않는다. 행정당국 입장에서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자를 입국시키지 않겠다는 판단까지 내포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미 부정적 판단을 내린 난민을 법원의 명시적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입국시키기를 주저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불복기간 동안의 난민의 처우는 자신의 책임으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민들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4개월에서 1년 이상을 공항에서 스스로 먹고, 자고, 건강하게 버티며 살아남아야 하는 초법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의 부당한 구속기소와 같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제수단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 1. 인신구제청구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되는 송환대기실에서의 대기는 출입국 당국이 수용자인 구금이다. 한편 행정청이 관행을 바꾸어 송환대기실에 구금하지 않고 환승구역에 대기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금이

162) 가급적 소재지를 하지 못하게 불회부결정이 나오는 날 곧장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을 운수업자와 조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출입국 당국은 송환대기실에 구금하든, 환송구역에 구금하든 그 기간동안 의식주에 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운수업자인 항공사에 이를 넘기고 있고,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수많은 인권침해가 양산되는데, 결국, 이와 같은 인권침해들은 난민들이 불법적인 구금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불회부결정취소의 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혹은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난민이 위법, 부당한 구금에 처해 있다면, 구금으로부터 해제되어야 한다. 송환대기실에서의 난민의 구금은 아예 구금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구금이였다. 환송구역에서의 난민의 구금 역시 구금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한 구금이다. 당국은 송환대기실에 난민을 구금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논거에서, 더 넓은 환송구역은 구금시설이 아닐뿐더러, 우리는 물리적인 입국만을 막고 있을 뿐이지, 난민을 구금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힌 사람은 규범적으로 제3국으로 떠날 자유가 없고, 구금 장소가 통상적인 구금장소보다 넓다 하여 환송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난민이 구금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당연하게도 그 주체는 행정당국이다.<sup>163)</sup>

현재, 송환대기실 구금과 달리 환송구역 구금에 관하여 법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해외의 판결, 결정례들과 달리 국내 법원에서는 아직 선례는 없다. 그러나 위법한 구금이 분명한 이상 환송구역에 장기간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구제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은 즉시 구금의 해제를 명하고, 행정청은 가용한 방법을 통해 구금이 아닌 상태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164)</sup>

## 2. 조건부 입국허가(제13조)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제20조)의 활용

출입국관리법 제13조<sup>165)</sup>가 정한 조건부 입국허가도 사용될 수 있다. 제1항 각호는 조건부 입국허가

163) 이 사건은 현재 인신보호법 구제청구의 형태로 다뤄지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20인62 사건).

16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송구역에 난민신청자의 장기대기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정한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 위반여부에 관하여 1996. Amurr v. France 판결에서 위반이라고 선언한 이래 유사한 판결이 계속 나왔다. 특히 최근 2019년에도 Z.A and others v Russia 판결에서 '이라크,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환송구역에 4-7개월 억류한 것'이 제5조 제1항 위반이라고 마찬가지로 선언했다. 한편,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소위 자유권규약 제9조의 해석에 관한 일반논평 제35호에서도 환송구역에 난민신청자를 억류하는 것이 제9조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다.

165)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추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른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가능한 3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① 입국허가의 요건이 미비하나 향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② 입국금지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나 특별한 심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③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른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 설정하여 그 조건하에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다.

난민신청자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불회부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취소될 경우 입국을 허가해야 하므로 향후 입국허가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기에 1호에 포섭할 수 있고, 이미 부정적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행정당국이 하기 어려우면 ‘조건부 입국허가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3호에도 포섭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 입국허가 여부는 결국 행정당국의 판단에 달린 것이고 입국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역시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룰 수밖에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입법적 흠결 및 행정당국의 무책임이 결합된 상황에 대해 행정당국이 이 문제를 공감하고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의 판결선고 전까지’, 거소를 지정하는 조건 또는 이와 무관하게 판결선고시에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면 된다. 더욱이, 난민신청자가 조건을 어기고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경우 아예 영종도에 난민신청자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거소를 지정하여 재판기간동안 지낼 수 있게 하면 당국의 염려도 해소하고, 난민신청자에게도 송환대기실이나 환송구역에 구금되는 엄혹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제20조가 정한 ‘활동범위의 제한’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입국허가 이후라는 것이 전제된 조항인데, 사실 요건은 없는 반면에 외국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이를 종료하는 절차 역시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공항에서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입국한 난민들에게도 ‘체류지역을 정한 조건을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지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난민신청자가 공항 환송 구역을 벗어나 입국이 허가된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에 더하여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기타 가구제 수단의 가능성 - 집행정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논의되는 가구제수단으로 민사집행법상의 ‘임시의 지위를정하는 가처분’,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등을 생각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불회부결정’의 항고소송에서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붙일 것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행정소송법 제23조)”에 공항에 있는 난민신청

자가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불회부결정의 ‘효력정지’를 명하게 될 경우 입국을 허가하게 되는데, 실무상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형태로 결정하면 사실상 본안 소송의 결과를 선취하는 단행적 결과가 되고, 이것이 본안 심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입국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지면 재판부도 부담이 많아 집행정지를 명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가치분의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설상 민사 집행법상 가치분은 행정소송에서는 활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과거의 판례들이 있으나,<sup>166)</sup> 위 판례는 처분금지 가치분 또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을 민사 가치분으로 제한해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내려진 것이고, 행정청의 처분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치분에 대한 판결은 검색되지 않는다. 학설상으로도 행정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인 집행정지제도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가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장 및 권리구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다수 있다.<sup>167)</sup>

실제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치분의 특수한 적용을 현행 행정소송법이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 현상유지적인 임시구제제도여서 적극적 현상변경적 임시구제를 위해서는 가치분으로, 피보전권리를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 또는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로, 보전의 필요성을 신체 등에 발생할 급박한 위협으로 구성하여 ‘불회부결정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물게 할 것’을 채무자인 행정당국에게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재판부로서도 ‘불회부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입국을 허가’시키는 등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것보다 부담을 더는 길일 수 있다.

#### 4. 소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권리는 현재와 같이 규범적 공백상태에서 난민신청자가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상태에서는 전혀 실질화 될 수 없다. 구속기소와 같은 상황, 그러나 피구금자에 관한 처우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시기와 종기도 알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해소되기 위해 행정당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하고, 가구제수단에 대해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수용이 초래한 상황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166) 대법원 1980. 12. 22. 자 80두5 결정 :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현행법 제8조 제2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중 가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상의 가치분으로서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 “민사집행법상의 가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67)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제14판”, 법문사 (2010), 777 등.

# 결론

본 사업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하여 난민신청절차, 난민심사절차, 공항 구금상황, 송환과정, 권리구제절차에서 공항난민에게 적절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공항난민의 처우가 극히 열악하다는 점 등 공항난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공항난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항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난민인정심사 회부율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난민법 제정시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가 도입된 취지나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비호신청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심사 회부 결정이 내려져서 국내에 입국을 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난민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비호신청자가 주장하는 사유 자체로 난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누적 회부율이 42.5%에 불과한 현행의 심사관행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다분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항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체계적,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인권현황이 적시에, 그리고 심도 있게 모니터링 되어야만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부당한 관행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사업을 통한 모니터링이 일회적인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본 사업에서 실시된 모니터링이 그 방법과 범위의 측면에서 더욱 보완되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공항난민의 인권실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체계적, 정기적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이자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으로서, 송환대기실, 환승구역, 난민심사대기실 등의 공항 내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례와 관련한 사실확인,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사전적, 예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공항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한편, 공항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업이 중요하다. 법무부, 출입국항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공항공사, 항공사 및 항공사운영협의회, 송환대기실 관리용역업체, 인권단체 및 변호사단체의 긴밀한 협업이 있어야만 공항난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업이 계기가 되어, 조만간 위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항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제도의 개선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본 사업도 공항난민의 인권현실에 대한 진단이, 향후 공항난민의 인권이 증진되는 데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모니터링 결과이지만, 본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가 공항난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데에 작은 기여라도 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 부록1

## 공향난민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 설문지(국문)

##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신청자에 대한 설문지

설문일 및 시간: 2020년 월 일 ( )시 ( )분 - ( )시 ( )분

설문지역 (시/도):

설문담당단체:

설문담당자:

통역:

본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입국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어 입국한 분들을 대상으로 출입국항에서의 절차 및 처우에 대한 경험을 들어보고 그 내용을 향후 정책 및 입법활동의 참고 자료로 삼고자, 난민인권단체들의 모임인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출입국항 실무그룹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조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취합되어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며, 공유해 주신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유되거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곡이나 과장, 혹은 축소 없이 본인의 경험을 말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예 ( ) 아니오 ( )

a.	국적				
b.	나이	세			
c.	성별				
d.	언어				
e.	입국시 동반 가족 및 동반자 수: ( )명 • 동반 가족/동반자 인원수에 맞게 오른쪽 사항 기입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국적:	국적:	국적:	국적: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성별:	성별:	성별:	성별:
f.	입국시 본인의 합법적 여권 보유 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인 경우, 이유::
g.	입국시 합법적 비자 보유 여부 (본인 및 동반가족/동반자)	예. 아니오.  ‘아니오’인 경우, 이유:  ‘예’인 경우, 취득경로:
h.	입국시 특이사항 (예: 임신, 장애, 등)	
i.	대한민국 도착일	년 월 일
j.	입국 출입국항 (공항)	
k.	항공사	
l.	출발지 (도시 및 국가)	
m.	경유지 (있다면, 도시 및 국가)	

## 절차보장

### 난민신청 접수단계

#### [난민신청절차 정보]

1.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나요.

언제:

어떻게:

1-1. 공항에서 난민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표지판을 보았나요? (예 / 아니오)

#### [난민신청의사 표시 방법 및 시점]

2. 난민신청 의사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 하였나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뭐라고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난민신청절차 안내 여부]**

3.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이후에 어떻게 안내를 받았나요?

3-1.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나요? (예 / 아니오)

3-2. (3-1에서 '예'인 경우) 당시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은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나요? (예 / 아니오)

3-3. 난민신청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나요? 난민신청절차에 대해 몰라서 난민신청을 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난민신청서] (난민신청서를 보여주며)**

4. 언제, 어디에서 이 서류를 받았나요?

4-1.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후 어느 정도 후에 받았나요?

4-2. 작성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나요? (예 / 아니오)

4-3.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체류 장소 및 외부 단체 연락처 게시 여부]**

**(송환대기실과 난민신청자 대기실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며)**

5. 이 장소에 머무른 적이 있나요?

송환대기실 (예 / 아니오)

난민신청자 대기실 (예 / 아니오)

5-1. 각각의 장소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나요?

송환대기실 (        일) (또는 기간)

난민신청자 대기실 (        일) (또는 기간)

5-2. 머물렀던 장소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또는 난민 관련 단체의 연락처 정보가 있었나요?

송환대기실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단체 이름:

난민신청자 대기실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단체 이름:

5-3. 이 장소에서 유엔난민기구나 외부 단체에 연락한 적이 있나요?

송환대기실 (예 / 아니오) --> '예' 경우 단체 이름:

난민신청자 대기실 (예 / 아니오) --> '예' 경우 단체 이름:

6. 변호사 또는 UNHCR 또는 외부 단체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 접수 후 심사단계

7. 인터뷰는 어디에서, 몇시간정도 하였나요?

#### [통역]

8. 인터뷰는 어떠한 언어로 진행되었나요?

8-1. 인터뷰를 할 때 통역인이 있었나요? (예 / 아니오)

8-2. (8-1에서 '예'인 경우) 통역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통역인을 통해 의사소통하기가 쉬웠나요?  
(예 / 아니오)

#### [인터뷰 과정]

9. 인터뷰를 할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9-1. 인터뷰 질문에 대해 충분히 대답할 기회가 주어졌나요? (예 / 아니오)

#### [면접관의 개인 소지품 통한 증거수집]

10. 인터뷰를 할 때 면접관이 핸드폰이나 이메일, 소지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핸드폰 (예 / 아니오)

이메일 (예 / 아니오)

기타 소지품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종류:

10-1. (요구받은 경우) 핸드폰, 이메일, 소지품 내용을 면접관이 확인하였나요? (예 / 아니오)

10-2. (요구받은 경우)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나요?

#### [인터뷰 내용 확인]

11-1. 본인의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할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11-2. 인터뷰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에 서명하였나요? (예 / 아니오)

**[불회부 결정 및 이유의 고지] (불회부되셨다가 회부되어 입국하신 분들께만 질문)**

12. 인터뷰 이후에 회부/불회부 결정이 내려진 것을 어떻게 고지받았나요?

불회부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나요?

12-1. 설명을 듣고, 본인이 왜 불회부되었는지 이해하였나요?

## 처우보장

### 처우 일반 - 의료

#### [의료 기본 질문]

13. 출입국항에 있는 동안 아팠던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13-1. (아팠던 경험이 있는 경우) 언제 발병하였나요?

13-2. (아팠던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떤 증세였나요?

13-3. (아팠던 경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 한국 도착 이전부터 느끼던 증세였나요? (예 / 아니오)

13-4. (지병이 있었던 경우) 본인이 원래 복용하던 약이 있었나요? 그 약이 없었다면, 제공받을 수 있었나요?

13-5. (아팠던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였나요?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였나요?

13-6. (도움을 요청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입국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제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요?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 [의료시설 관련] 출입국항 내부

14. (아팠던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있었나요? (예 / 아니오)

14-1. 출입국항 내에 (상근)의료진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상근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사무원)  
(예 / 아니오)

14-2. 출입국항 내에 의료품 비치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14-3. 비치된 의료품을 제공받은 적이 있었나요? (예 / 아니오)

14-4. 제공받은 의료품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의료품의 종류, 목록) (예 / 아니오)

14-5. 출입국항 내에 의료기기, 설비가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14-6. 출입국항 내의 의료기기, 설비를 사용해본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14-7. 비치된 의료기기, 설비 등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의료기기, 설비 등의 종류, 목록)

**[의료시설 관련] 출입국항 외부 병원 이용-긴급상륙허가 등**

15. (아팠던 경험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15-1.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병원에 갈 것을 본인이 요청했나요? 왜 가지 못했나요?

15-2. 외부 병원 이용 신청 시 허가/불허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전문가에 질문)

15-3. (외부 병원 이용을 한 경우) 병원에는 누구와 함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방문하였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했나요? 희망병원을 지정할 수 있었나요?

15-4. (외부 병원 이용을 한 경우) 함께 동행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출입국항 직원:

변호사:

15-5.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누가, 어떻게 냈나요?(비용부담)  
(자비, 출입국항 보조 가능한지?, 자비부담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5-6. 외부진료를 받은 경우 국비보조 가능한지,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전문가에 질문)

**[기타 진료]**

16-1.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16-2.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정신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누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사, 정신과 전문의 등)

16-3. 정신과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내부 진료가 가능한지, 또는 외부진료에 의뢰하여야 하는지?

16-4. 응급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16-5. 응급진료를 받는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전문가에 질문)

**[기타]**

17. 출입국항에서 정기 건강진단이 이뤄지고 있나요? (예 / 아니오)

17-1. 다른 이들의 발병 혹은 증세로 인해 위협 도는 불안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예 / 아니오)

17-2.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했나요?

**난민신청자대기실 처우(신청자대기실 사진 보여주며)**

**[전반적 환경]**

18. 난민신청자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나요?

18-1. (가족이나 동반자가 있었던 경우) 함께 한 방에서 머물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18-2. (아이들을 동반한 경우) 아이들이 특별히 지내기 힘들어 하거나 어려워했던 점은 없었나요?

19. 난민신청자대기실 내부의 화장실 및 샤워시설, 텔레비전, 침구류 등 물품 및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19-1. 화장실에 세면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나요?

- ① 샴푸 ② 비누 ③ 칫솔 ④ 치약 ⑤ 수건

**[수면 관련]**

20. 잠은 어디에서 잤나요?

20-1 이불, 베개 등 침구류가 충분히 제공되었나요? (예 / 아니오)

20-2. (침구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20-3. 침구류의 청결 상태는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깨끗 / 보통 / 매우 더러움)

20-4. 기상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상시간이 있었다면 몇 시였고, 기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었나요?)

**[식사 관련]**

21.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었나요? 얼마나 자주, 어떤 메뉴가 제공되었나요?

21-1. 식사에 불만은 없었나요? (예 / 아니오)

21-2. 식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나요? (예 / 아니오)

21-3. (식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 개선이 되었나요? 어떠한 답변을 들었나요?

21-4. 종교나 그 밖의 이유로 음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만한 메뉴가 있었나요? (예 / 아니오)

21-5. 식사 메뉴를 고를 때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였나요?)

**[여성] (여성에게만 질문)**

22. 여성이어서 지내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예 / 아니오)

22-1.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혹은 불편했나요?)

22-2.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22-3. 여성위생용품은 제공받을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외부와의 연락]**

23. 난민신청자대기실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나요?

23-1. 공중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23-2.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23-3. 난민신청자대기실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23-4. (23-3에서 '예'인 경우) 어떠한 통신수단을 사용해서 연락했나요?

**[입출입 가능 여부]**

24. 난민신청자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외부로 나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24-1. (24에서 '예'인 경우) 나갈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24-2. (24-1에서 '아니오'인 경우) 나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가자유답변]**

25. 그밖에 지내기에 다른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25-1. 난민인정심사대기실에 머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불회부결정 이후 처우 (불회부결정을 받고 공항터미널 등에 있었던 분들만 해당)**

**[기간 등]**

26. 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누구와 어떻게 이동하였나요?

26-1. 출입국공무원으로부터 어떻게 안내를 받았나요? 긴급상황(예를 들어 화재시)에 대한 안내도 받았나요?

26-2. 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공항 터미널에 얼마나 머물렀나요?

**[위생]**

27. 공항 내부의 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있다면, 구체적으로)

27-1. 화장실에 세면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나요?

① 샴푸 ② 비누 ③ 칫솔 ④ 치약 ⑤ 수건 ⑥ 기타 ( )

27-2. 필요한 세면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였나요?

27-3. 여성의 경우, 위생용품이 없는 경우에 직원에게 요청한 적이 있나요?

**[수면 관련]**

28. 잠은 어디에서 잤나요?

28-1 이불, 베개 등 침구류가 제공되었나요? (예 / 아니오)

28-2. (침구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28-3. 공항 내부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식사 관련]**

29.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29-1. 식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나요?

29-2. 매 끼니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29-3. 본인 비용으로 식사를 사먹은 경우, 돈이 떨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하였나요?

29-4. 종교나 그 밖의 이유로 음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만한 메뉴가 있었나요? (예 / 아니오)

29-5. 식사 메뉴를 고를 때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였나요?)

**[여성] (여성에게만 질문)**

30. 여성이어서 지내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예 / 아니오)

30-1.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혹은 불편했나요?)

30-2.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30-3. (이야기했다면) 이야기한 이후 문제점이 해결되었나요? (예 / 아니오)

30-4.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아동 - 아이들을 동반한 경우]**

31. 아이들이 특별히 지내기 힘들어 하거나 어려워했던 점은 없었나요? (예 / 아니오)

31-1. 아이들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였나요?

31-2.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외부와의 연락]**

32. 공항 터미널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나요?

32-1. 공항 터미널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32-2. (32-1에서 '예'인 경우) 어떠한 통신수단을 사용해서 연락했나요?

32-3.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송환대기실 처우 (송환대기실에 있었던 분들만 해당)(송환대기실 사진 보여주며)**

**[이동 및 입출입 등]**

33. 송환대기실에 갈 때에 누가 데리고 갔나요?

33-1. 수갑, 포승등이 사용되거나, 팔을 붙잡고 움직일 수 없도록 한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33-2. 송환대기실에 들어갈 때 이용신청서를 작성했나요? (예 / 아니오)

33-3.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들었나요? 어떤 설명을 들었나요?

33-4.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본인은 뭐라고 작성했는지요?

33-5. 송환대기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33-6. 송환대기실에 얼마정도 머물렀나요?

도착 후 난민신청서:

불회부 결정 이후:

33-7. 송환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외부로 나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33-8. (시도한 적이 있다면) 나갈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33-9. (나가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3-10. (나갔다면) 송환대기실 바깥,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나요?

**[전반적 환경]**

34. 송환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나요?

34-1. (가족이나 동반자가 있었던 경우) 함께 한 방에서 머물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34-2. (가족이나 동반자가 있었던 경우) 가족/동반자와 함께여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34-3. (아이들을 동반한 경우) 아이들이 특별히 지내기 힘들어 하거나 어려워했던 점은 없었나요?

34-4. 내부의 화장실 및 샤워시설, 텔레비전, 침구류 등 물품 및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34-5. 화장실에 세면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나요?

① 삼푸 ② 비누 ③ 칫솔 ④ 치약 ⑤ 수건

**[수면 관련]**

35. 잠은 어디에서 잤나요?

35-1 이불, 베개 등 침구류가 충분히 제공되었나요? (예 / 아니오)

35-2. (침구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35-3. 침구류의 청결 상태는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깨끗 / 보통 / 매우 더러움)

35-4. 기상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상시간이 있었다면 몇 시였고, 기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었나요?)

**[식사 관련]**

36.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었나요? 얼마나 자주, 어떤 메뉴가 제공되었나요?

36-1. 식사에 불만은 없었나요? (예 / 아니오)

36-2. (불만이 있었던 경우) 어떤 점이 불만스러웠나요?

36-3. (불만이 있었던 경우) 식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나요? (예 / 아니오)

36-4. (식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 개선이 되었나요? 어떠한 답변을 들었나요?

36-5. 종교나 그 밖의 이유로 음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만한 메뉴가 있었나요? (예 / 아니오)

36-6. 식사 메뉴를 고를 때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였나요?)

**[여성] (여성에게만 질문)**

37. 여성이어서 지내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예 / 아니오)

37-1.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혹은 불편했나요?)

37-2.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37-3. (이야기했다면) 이야기한 이후 문제점이 해결되었나요? (예 / 아니오)

37-4.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37-5. 여성위생용품은 제공받을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외부와의 연락]**

38. 송환대기실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나요?

38-1. 송환대기실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38-2. (38-1에서 '예'인 경우) 어떠한 통신수단을 사용해서 연락했나요?

38-3. 공중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38-4.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나요? (예 / 아니오)

**[송환대기실 내 안전]**

39. 송환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내부에서 다툼이나 도난 등의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39-1. (39에서 '예'인 경우) 어떤 상황이었나요?

39-2. (39에서 '예'인 경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누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인권침해 경험]**

40.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하기까지 출국을 강요받거나 폭행, 협박, 폭언, 모욕감을 주는 발언 및 행동을 당하거나 느낀 적, 또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40-1. (40에서 '예'인 경우) 언제 그런 경험을 하였나요?

40-2. (40에서 '예'인 경우) 누구로부터 그런 경험을 하였나요?

40-3. (40에서 '예'인 경우) 당시 상황 및 들은 말, 행동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41. 송환대기실에서의 생활 전반에 대해 건의 혹은 문의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전달하였나요. (위의 건의사항 혹은 문의사항을 들어준 적이 있었나요?)

42. 송환대기실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부록2

### 공향난민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 설문지(프랑스어)

#### Questionnaire pour ceux qui ont déposé leur demande d'asile au point d'entrée (à l'aéroport).

Date de l'enquête : (JJ/MM/2020) h min ~ h min

Lieu de l'enquête (ville, province) :

Organisation chargée de l'enquête :

Responsable de l'enquête :

L'interprète :

Cette enquête s'adresse à ceux qui sont entrés en Corée après avoir demandé d'asile à la frontière aéroportuaire et été admis à l'examen de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Elle a été conçue par le Groupe de travail sur le réseau des droits des réfugiés au point d'entrée, une réunion des organisations de défense des droits des réfugiés, pour but de servir de référence aux futures politiques et aux activités législatives après avoir écouté l'expérience des procédures et du traitement au bureau de l'immigration à l'aéroport. Le contenu de l'enquête sera rassemblé et inclus dans le rapport, cependant les informations personnelles ne seront pas partagées en dehors ni incluses dans le rapport. Veuillez raconter votre expérience sans déformation, exagération ou raccourcissement et, si vous avez besoin de faire une explication détaillée, veuillez y répondre suffisamment.

J'accepte de répondre à l'enquête et j'accepte la collecte et l'utilisation des renseignements personnels : Oui ( ) Non ( )

a.	Nationalité				
b.	Âge	ans			
c.	Sexe				
d.	Langues				
e.	Nombre de membres de la famille ou d'accompagnants au moment de l'entrée. ( )	Relation : Nationalité:	Relation : Nationalité:	Relation : Nationalité:	Relation : Nationalité:

	Remplissez les informations à droite en fonction du nombre de membres de la famille /de accompagnants.	Âge :	Âge :	Âge :	Âge :
		Sexe :	Sexe :	Sexe :	Sexe :
f.	Aviez-vous un passeport légal au moment de l'entrée ?	Oui. Non. Si la réponse est « Non », pourquoi ?			
g.	Aviez-vous un visa légal au moment de l'entrée ? (Soi-même, membres de famille, accompagnants)	Oui. Non. Si la réponse est « Non », pourquoi ?  Si la réponse est « Oui », quel est le processus d'acquisition ?			
h.	Remarques particulières au moment de l'entrée (ex : grossesse, handicap, etc.)				
i.	Date d'arrivée en Corée	(JJ/MM/AAAA)			
j.	Aéroport d'arrivée				
k.	Compagnie aérienne				
l.	Lieu de départ (pays et ville)				
m.	Lieu d'escale (s'il existe, pays et ville)				

## **Garantie de procédure.**

### **Étape de dépôt de la demande d'asile.**

#### **[Informations à propos de la procédure de la demande d'asile.]**

1. Quand et comment avez-vous su que vous pouviez demander l'asile au bureau de l'immigration à l'aéroport ?

Quand :

Comment :

- 1.1 Avez-vous vu des panneaux et des instructions sur la procédure de la demande d'asile à l'aéroport?  
(Oui / Non)

#### **[Quand et comment exprimer l'intention de demander l'asile.]**

2. Quand, à qui, comment et qu'avez-vous dit pour exprimer votre intention de demander l'asile?

Quand :

À qui :

Comment (Verbalement ou par écrit) :

Le contenu (Ce que vous avez dit) :

#### **[Guide de la procédure de la demande d'asile]**

3. Comment avez-vous été guidé après avoir déclaré votre intention de demander l'asile ?

- 3-1. Avez-vous été informé sur les formalités pour la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  
(Oui / Non)

- 3-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1 est « Oui ») L'explication sur la procédure de la demande d'asile a été faite par l'intermédiaire d'un interprète ? (Oui / Non)

- 3-3. Avez-vous pu comprendre la procédure de la demande d'asile ? Avez-vous eu des difficultés à demander l'asile parce que vous ne connaissiez pas la procédure ?

**[Formulaire de Fondement de la demande d'asile] (en montrant le formulaire)**

4. Quand et où avez-vous reçu ce formulaire ?

4-1. Vous avez reçu ce formulaire combien de temps après avoir exprimé votre intention de demander l'asile ?

4-2. Avez-vous eu l'aide de quelqu'un pour le remplir ? (Oui / Non)

4-3. Avez-vous eu des difficultés à remplir le formulaire?

**[Lieu de séjour et l'affichage des coordonnées des organisations extérieures] (en montrant simultanément les photos de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et de la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5. Avez-vous séjourné dans cet endroit ?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Oui / Non)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Oui / Non)

5-1. Pendant combien de temps avez-vous séjourné dans chaque endroit ?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 jours) (ou la durée)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 jours) (ou la durée)

5-2. Y avait-il des informations sur les coordonnées du UNHCR ou des organisations liées aux réfugiés à l'endroit où vous avez séjourné ?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Oui/ Non)

--> Si la réponse est « Oui », indiquez le nom de l'organisation :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Oui / Non)

--> Si la réponse est « Oui », indiquez le nom de l'organisation :

5-3. Avez-vous contacté l'UNHCR ou une organisation externe aux endroits ci-dessous ?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Oui / Non)



--> Si la réponse est « Oui », indiquez le nom de l'organisation :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Oui / Non)

--> Si la réponse est « Oui », indiquez le nom de l'organisation :

6. Avez-vous déjà demandé pour avoir l'aide d'un avocat, du UNHCR ou d'une organisation externe ? (Oui / Non)

### **Étape de l'examen après le dépôt**

7. Où et pendant combien d'heures avez-vous passé l'entretien ?

#### **[Interprétation]**

8. Dans quelle langue l'entretien s'est-il déroulé ?

8-1. Y avait-il un interprète lors de votre entretien ? (Oui / Non)

8-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8-1 est « Oui ») L'interprétation s'est-elle bien déroulée dans l'ensemble ? Est-ce que c'était facile à communiquer par l'intermédiaire d'un interprète ? (Oui / Non)

#### **[Déroulement de l'entretien]**

9. Avez-vous rencontré des difficultés lors de l'entretien ?

9-1. Avez-vous pu répondre suffisamment à vos questions d'entrevue ? (Oui / Non)

#### **[Collecte de preuves à partir des affaires personnelles par l'enquêteur]**

10. L'enquêteur vous a-t-il demandé de montrer votre téléphone portable, vos e-mails ou vos affaires personnelles pendant l'entretien ?

Téléphone portable (Oui / Non)

E-mail (Oui / Non)

Autres affaires personnelles (Oui / Non)

--> Si la réponse est « Oui », quel type d'affaires ?

10-1.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10 est « Oui ») L'enquêteur a-t-il vérifié le contenu de votre téléphone portable, de vos e-mails et de vos affaires ?

10-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10 est « Oui ») Quand l'avez-vous récupéré ?

#### **[Vérification du contenu de l'entretien]**

11-1. Avez-vous pu vérifier comment votre entretien a été rédigé ? (Oui / Non)

11-2. Avez-vous signé le contenu enregistré à la fin de l'entretien ? (Oui / Non)

#### **[Décision de rejet de demande d'asile et l'annonce des motifs] (Questions uniquement pour ceux qui sont entrés après avoir été rejetés puis admis)**

12. Comment avez-vous été informé qu'une décision de rejet ou d'admission a été prise après l'entretien ?

12-1. Après avoir entendu l'explication, avez-vous compris pourquoi la décision de rejet a été prise ?

### **Garantie du traitement**

#### **Traitement général – Traitement médical**

##### **[Questions de base sur le traitement médical]**

13. Avez-vous déjà été malade pendant que vous étiez à l'aéroport ? (Oui / Non)

13-1. (Si vous avez été malade) Quand avez-vous été malade ?

13-2. (Si vous avez été malade) Quels étaient les symptômes ?

13-3. (Si vous avez été malade) Était-ce un symptôme que vous avez ressenti avant d'arriver en Corée ? (Oui/ Non)

13-4. (Si vous aviez une maladie chronique) Y avait-il des médicaments que vous preniez ? Si vous n'avez pas ces médicaments, pouviez-vous en recevoir ?

13-5. (Si vous avez été malade) Avez-vous demandé de l'aide ? À qui et comment l'avez-vous demandé ?

13-6. (Si vous avez l'expérience de demander de l'aide) Lorsque vous avez demandé de l'aide aux agents d'immigration, avez-vous pu obtenir de l'aide à temps ? Quel genre d'aide avez-vous

reçu ?

**[Installations médicales] À l'intérieur de l'aéroport.**

14. (Si vous avez été malade) Y avait-il des installations médicales disponibles ? (Oui / Non)
- 14-1. Avez-vous été informé qu'il y avait du personnel médical (à plein temps) dans l'aéroport ? (Médecin, infirmière ou commis à plein temps) (Oui / Non)
- 14-2. Avez-vous été informé qu'il y avait des produits médicaux qui sont mis à disposition dans l'aéroport ? (Oui / Non)
- 14-3. Avez-vous déjà reçu ces produits médicaux ? (Oui / Non)
- 14-4. Quels types de produits médicaux ont été fournis ? (Indiquez la liste des produits en détail) (Oui / Non)
- 14-5. Avez-vous été informé qu'il y avait des dispositifs et des installations médicaux à l'aéroport ? (Oui / Non)
- 14-6. Avez-vous déjà utilisé des dispositifs et des installations médicaux à l'aéroport ? (Oui / Non)
- 14-7. Quel type de dispositifs et d'installations médicaux ont été mis en disposition ? (Indiquez la liste des types de dispositifs, des installations, etc. en détail)

**[Installations médicales] Utilisation des hôpitaux en dehors de l'aéroport, permission de débarquement d'urgence, etc.**

15. (Si vous avez été malade) Avez-vous pu avoir un traitement à l'hôpital ? (Oui / Non)
- 15-1.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15 est « Non ») Avez-vous demandé à aller à l'hôpital ? Pourquoi n'avez-vous pas pu y aller ?
- 15-2. *Quel est le nombre de refus/ d'autorisation lors de la demande d'utilisation d'un hôpital externe ?*
- 15-3.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15-1 est « Oui ») Avec qui et par quel moyen de transport avez-vous visité l'hôpital ? Quelles procédures avez-vous dû suivre ? Avez-vous pu désigner l'hôpital que vous souhaitez ?

15-4.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15-1 est « Oui ») Combien de personnes vous ont accompagné ?

Personnel aéroportuaire :

Avocat :

15-5. (Si vous avez reçu des soins hospitaliers) Combien avez-vous payé pour l'hôpital ? Qui avez payé ? Comment l'avez-vous payé ? (Charge des frais)

(Par ses propres frais ? Est-il possible d'être subventionné par l'aéroport ? Que pouvez-vous faire s'il est difficile de payer à vos frais ?)

*15-6. Est-il possible d'être subventionné par le gouvernement en cas de traitement médical externe ?  
Combien de cas y a-t-il ?*

**[Autres traitements médicaux]**

16-1. Comment se passe-t-il si vous avez besoin d'être hospitalisé ?

16-2. Pouvez-vous demander pour subir un examen de santé mentale si vous avez des troubles mentaux ? Par qui pouviez-vous être consulté ?

16-3. Pouvez-vous avoir des soins psychiatriques ? Est-il possible d'avoir ses soins à l'intérieur ou vous devez demander à un médecin externe ?

16-4. Avez-vous déjà reçu des soins d'urgence ? (Oui / Non)

*16-5. Quel est le nombre de personnes qui reçoivent des soins d'urgence ?*

**[Autres]**

17. Des examens médicaux réguliers sont-ils effectués à l'aéroport ? (Oui / Non)

17-1. Vous êtes-vous déjà senti menacé ou inquiet à cause des symptômes ou de l'apparition d'une maladie d'autres personnes ? (Oui / Non)

17-2. (Si oui) Comment avez-vous agi ?

**Condition de la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e réfugiés (en montrant des photos de la salle)**

**[Environnement général]**

18. Combien de personnes y avait-il dans la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
- 18-1. (Si vous aviez des accompagnants ou des membres de famille avec vous) Pouviez-vous rester ensemble dans la même salle ? (Oui/ Non)
- 18-2. (Si vous êtes accompagné d'enfants) Vos enfants ont-ils eu des difficultés particulières durant votre séjour ?
19. Avez-vous eu des difficultés à utiliser les installations et les équipements à l'intérieur tels que les toilettes, les douches, la télévision, la literie, etc. ? (Si oui, expliquez en détail)
- 19-1. Les toilettes étaient-elles équipées des articles de toilettes ?
- ① Shampoing ② Savon ③ Brosse à dents ④ Dentifrice ⑤ Serviette

**[Sommeil]**

20. Où avez-vous dormi ?
- 20-1. Est-ce que la literie telle que les couvertures, les oreillers, etc. a été suffisamment fournie ? (Oui / Non)
- 20-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20-1 est « Non ») Quels problèmes avez-vous eu ?
- 20-3. Comment était l'état de literie ? (Propre dans l'ensemble/ moyen / sale)
- 20-4. Y avait-il une heure de réveil fixe ? (Si oui, quelle heure était-il ? Si vous ne vous levez pas à l'heure du réveil quelles mesures ont été prise ?)

**[Repas]**

21. Comment le repas a été servi ? À quelle fréquence le repas a été fourni ? Quels menus ont été fournis ?
- 21-1. Avez-vous eu de l'insatisfaction concernant le repas ? (Oui / Non)
- 21-2. Avez-vous eu l'expérience d'avoir déposé une plainte concernant le repas ? (Oui / Non)

21-3.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16-2 est « Oui ») Est-ce que le repas s'est été amélioré ? Qu'est-ce qu'ils vous ont répondu ?

21-4. Si vous avez des restrictions alimentaires pour des raisons religieuses ou d'autres, y avait-il un menu de remplacement ? (Oui / Non)

21-5. Avez-vous eu des difficultés lors du choix d'un menu du repas à cause de la langue ? (Si oui, comment avez-vous agi ?)

**[Femme] (Question uniquement pour les femmes)**

22. Avez-vous eu des difficultés en tant que femme pendant votre séjour ? (Oui / Non)

22-1.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22 est « Oui ») Quels étaient les difficultés ? (Ou y avait-il des inconforts ?)

22-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22 est « Oui ») Avez-vous parlé de ces difficultés à quelqu'un ? (Oui / Non)

22-3. Avez-vous pu recevoir des produits sanitaires pour les femmes ? (Oui / Non)

**[Contact avec l'extérieur]**

23. Qu'avez-vous fait habituellement pendant votre séjour dans la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

23-1. Pouviez-vous utiliser un téléphone public ? (Oui / Non)

23-2. Pouviez-vous utiliser l'Internet ? (Oui / Non)

23-3. Avez-vous contacté quelqu'un d'extérieur en étant dans la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 (Oui / Non)

23-4.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20-3 est « Oui ») Quel moyen de communication avez-vous utilisé ?

**[Disponibilité d'entrée et de sortie]**

24. Avez-vous essayé de sortir en étant dans la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 (Oui / Non)

24-1.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24 est « Oui ») Avez-vous pu sortir ? (Oui / Non)

24-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24-1 est « Non ») Pour quelle raison vous n'avez pas pu sortir ?

**[Réponses libres supplémentaires]**

25. Y-avait-il d'autres difficultés pendant votre séjour ?

25-1. Quelle était la partie la plus difficile et la plus dure durant votre séjour dans la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

**Traitement après la décision de rejet de demande d'asile (Seulement pour ceux qui étaient au terminal de l'aéroport après avoir reçus la décision de rejet de demande d'asile)**

**[Durée]**

26. Comment et avec qui avez-vous déplacé après avoir reçu la décision de rejet de demande d'asile ?

26-1. Comment avez-vous été guidé par les agents d'immigration ?

- Avez-vous été informé en cas d'urgences (par exemple en cas d'incendie) ?

26-2. Combien de temps êtes-vous resté au terminal de l'aéroport après avoir reçu la décision de rejet de demande d'asile ?

**[Hygiène]**

27. Les toilettes et les douches à l'intérieur de l'aéroport étaient-elles disponibles ? (Oui / Non) (Si oui, expliquez en détail)

27-1. Les toilettes étaient-elles équipées des articles de toilettes ?

① Shampoing ② Savon ③ Brosse à dents ④ Dentifrice  
⑤ Serviette ⑥ Autres ( )

27-2. Comment avez-vous fait s'il n'y avait pas des articles de toilettes nécessaires ?

27-3. Dans les cas des femmes, si les produits sanitaires n'étaient pas disponibles, avez-vous demandé à un agent ?

**[Sommeil]**

28. Où avez-vous dormi ?

28-1. Est-ce que la literie telle que les couvertures, les oreillers, etc. a été fournie ? (Oui / Non)

28-2. (Dans la question 25-1, si la literie n'était pas suffisamment fournie) Quels problèmes avez-vous eu ?

28-3. Pouviez-vous utiliser les hébergements à l'intérieur de l'aéroport ? (Oui / Non)

**[Repas]**

29. Comment avez-vous fait pour les repas ?

29-1. Combien avez-vous dépensé pour le repas ?

29-2. Pouviez-vous manger suffisamment à chaque repas ? (Oui / Non)

29-3. Si vous avez payé vos repas à votre frais, qu'avez-vous fait après que l'argent soit épuisé ?

29-4. Si vous aviez des restrictions alimentaires pour des raisons religieuses ou d'autres, y avait-il un menu de remplacement ? (Oui / Non)

29-5. Avez-vous eu des difficultés lors du choix d'un menu du repas à cause de la langue ? (Si oui, comment avez-vous agi ?)

**[Femme] (Question uniquement pour les femmes)**

30. Avez-vous eu des difficultés en tant que femme pendant votre séjour ? (Oui / Non)

30-1.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0 est « Oui ») Quels étaient les difficultés ? (Ou y avait-il des inconforts ?)

30-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0 est « Oui ») Avez-vous parlé de ces difficultés à quelqu'un ? (Oui / Non)

30-3.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0-2 est « Oui ») Après en avoir parlé, le problème a-t-il été résolu ? (Oui / Non)

30-4.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0-2 est « Non ») Pourquoi ?



**[Enfants – Si vous êtes accompagné d'enfants]**

31. Vos enfants ont-ils eu des difficultés particulières durant votre séjour ? (Oui / Non)

31-1. Quel était l'état de santé de vos enfants ?

31-2. Qu'avez-vous fait de l'éducation de vos enfants ?

**[Contact avec l'extérieur]**

32. Qu'avez-vous fait habituellement au terminal de l'aéroport ?

32-1. Avez-vous contacté quelqu'un d'extérieur en étant au terminal de l'aéroport ? (Oui / Non)

32-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2-1 est « Oui ») Quelle moyen de communication avez-vous utilisé ?

32-3. Pouviez-vous utiliser l'Internet ? (Oui / Non)

**Traitement à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Seulement pour ceux qui ont été dans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En montrant les photos de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Déplacement, l'entrée et la sortie]**

33. Qui vous a accompagné à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

33-1. Avez-vous l'expérience d'être retenue par le bras pour vous empêcher de bouger ? Est-ce que les menottes, les cordes a ligotes ont été utilisé ? (Oui / Non)

33-2. Avez-vous rempli le formulaire de demande d'utilisation en entrant dans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 (Oui / Non)

33-3.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3-2 est « Oui ») Avez-vous été informé de cet formulaire ?  
Quelle explication avez-vous reçu ?

33-4.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3-2 est « Oui ») Qu'avez-vous écrit ?

33-5. Avez-vous pu refuser d'entrer dans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 (Oui / Non)

33-6. Pendant combien de temps êtes-vous resté dans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

Après l'arrivée, lors de la demande l'asile :

Après la décision de rejet de demande d'asile :

33-7. Avez-vous essayé de sortir en étant dans de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 (Oui / Non)

33-8.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3-7 est « Oui ») Avez-vous pu sortir ? (Oui / Non)

33-9.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3-7 est « Non ») Pour quelle raison vous n'avez pas pu sortir ?

33-10. (Si vous avez pu sortir) Où et comment étiez-vous en dehors de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

### **[Environnement général]**

34. Combien de personnes étaient présentes lors de votre séjour dans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

34-1. (Si vous aviez des accompagnants ou des membres de famille avec vous) Pouviez-vous rester ensemble dans la même salle ? (Oui/ Non)

34-2. (Si vous aviez des accompagnants ou des membres de famille avec vous) Avez-vous eu des difficultés parce que vous étiez ensemble ? (Oui / Non)

34-3. (Si vous êtes accompagné d'enfants) Vos enfants ont-ils eu des difficultés particulières durant votre séjour ?

34-4. Avez-vous eu des difficultés à utiliser les installations et les équipements à l'intérieur tels que les toilettes, les douches, la télévision, la literie, etc. ? (Si oui, expliquez en détail)

34-5. Les toilettes étaient-elles équipées des articles de toilettes ?

① Shampoing ② Savon ③ Brosse à dents ④ Dentifrice ⑤ Serviette

### **[Sommeil]**

35. Où avez-vous dormi ?

35-1. Est-ce que la literie telle que les couvertures, les oreillers, etc. a été suffisamment fournie ? (Oui / Non)

35-2. (Si la literie n'était pas suffisamment fournie) Quels problèmes avez-vous eu ?

35-3. Comment était l'état de literie ? (Propre dans l'ensemble / moyen / sale)

35-4. Y avait-il une heure de réveil fixe ? (Si oui, quelle heure était-il ? Si vous ne vous levez pas à l'heure du réveil quelles mesures ont été prise ?

### **[Repas]**

36. Comment le repas a été servi ? À quelle fréquence le repas a été fourni ? Quels menus ont été fournis ?

36-1. Avez-vous eu de l'insatisfaction concernant le repas ? (Oui / Non)

36-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4-1 est « Oui ») Qu'est-ce qui vous a rendu insatisfait ?

36-3.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4-1 est « Oui ») Avez-vous l'expérience d'avoir déposé une plainte concernant le repas ? (Oui / Non)

36-4.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4-3 est « Oui ») Est-ce que le repas s'est été amélioré ? Qu'est-ce qu'ils vous ont répondu ?

36-5. Si vous avez des restrictions alimentaires pour des raisons religieuses ou d'autres, y avait-il un menu de remplacement ? (Oui / Non)

36-6. Avez-vous eu des difficultés lors du choix d'un menu du repas à cause de la langue ? (Si oui, comment avez-vous agi ?)

### **[Femme] (Question uniquement pour les femmes)**

37. Avez-vous eu des difficultés en tant que femme pendant votre séjour ? (Oui / Non)

37-1.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7 est « Oui ») Quels étaient les difficultés ? (Ou y avait-il des inconforts ?)

37-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7 est « Oui ») Avez-vous parlé de ces difficultés à quelqu'un ? (Oui / Non)

37-3.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7-2 est « Oui ») Après en avoir parlé, le problème a-t-il été résolu ?

37-4.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7-2 est « Non ») Pourquoi ?

37-5. Avez-vous pu recevoir des produits sanitaires pour les femmes ? (Oui / Non)

**[Contacte avec l'extérieur]**

38. Qu'avez-vous fait habituellement pendant votre séjour dans la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

38-1. Avez-vous contacté quelqu'un d'extérieur en étant dans la salle d'attente des demandeurs d'asile ? (Oui / Non)

38-2. (Si la réponse est à la question 38-1 est « Oui ») Quelle moyen de communication avez-vous utilisé ?

38-3. Pouviez-vous utiliser un téléphone public ? (Oui / Non)

38-4. Pouviez-vous utiliser l'Internet ? (Oui / Non)

**[La sécurité dans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39. Lors de votre séjour dans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avez-vous vécu des situations tels que des disputes ou des vols ? (Oui / Non)

39-1.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9 est « Oui ») Dans quel contexte cette situation a eu lieu ?

39-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39 est « Oui ») Avez-vous demandé de l'aide à quelqu'un ? À qui avez-vous demandé de l'aide ? Comment a-t-il agi ?

**[Expérience de violation des droits humains]**

40. De l'arrivée à l'aéroport à l'entrée du pays, avez-vous l'expérience d'être forcé à quitter le pays, d'être frappé, d'être menacé, d'être insulté, ou de subir des actes ou des paroles humiliantes ? Avez-vous l'expérience d'assister une telle situation ? (Oui / Non)

40-1.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40 est « Oui ») Quand avez-vous fait cette expérience ?

40-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40 est « Oui ») De la part de qui avez-vous fait cette expérience ?

40-2. (Si la réponse à la question 40 est « Oui ») Expliquez en détail la situation, les paroles que vous avez entendu, les actes que vous avez subi, etc.

41. Pendant votre séjour dans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lorsque vous aviez des demandes ou des propositions sur la vie dans l'ensemble, comment et à qui les avez-vous transmis ? (Ont-ils agréé les demandes ou les propositions ci-dessus ?)
  
42. Quelle était la chose la plus inconfortable durant votre séjour dans la salle d'attente de rapatriement ?

---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공향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

---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처** 사단법인 두루

**주 소**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13, 5층(미근동)

**전 화** 02-6200-1853

**인 쇄 처** 경성문화사(02-786-2999)

**I S B N** 979-11-969001-5-1 (03360)

---

